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536-10

정책보고서 2012-68

##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고경환 · 장영식 · 김현아 · 김진욱 · 이정우 · 강지원 · 정영애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자를 위하여

- 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승인번호 제 11777호)입니다.
- 본 통계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로 구성됩니다.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고용주의 법정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됩니다.
    -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기업과 제3섹터, 공동체, 민간모금기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을 뜻합니다.
    - － 총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적 현금급여와 서비스 제공의 합으로 이루어진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혜택과 부담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 사회적 급여에 대한 직접세, 이전소득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입니다.
- 통계표의 수치는 소수점이 있는 가중 승수를 사용한 것이므로 내용의 합과 총 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계표의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음을 의미하며, 「0.0」은 단위 미만을 의미합니다.
-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전화 02-2023-716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전화 02-380-8154

## 머리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년간 매우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나 고령화 수준에 비교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보장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2008년도에 발생함에 따라 향후 연금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세대간 회계의 문제와도 연계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의료이용의 효과적 관리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탈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 중심에서 노동시장의 지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될 사회복지서비스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제공될 사회복지서비스는 획일적이지 않고 정책의 목표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가족구조와 노동시장 참여여부,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본 연구는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OECD에 통계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원내의 장영식 선임연구위원, 강지원 전문연구원, 정영애 전문원,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김진욱 교수, 인제대학교 이정우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고려대학교 최영준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김정근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복지부 양윤선 과장, 이정희 사무관, 김나미 주무관과 연구의 결과와 보고서의 발간에 힘써주신 신승일 과장, 이화연 사무관, 손민영 주무관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의 체감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행복한 사회가 건설되길 기대한다.

2013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요약 .....	1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7
제2절 연구내용 .....	22
제3절 연구방법 .....	23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 .....	29
제1절 OECD SOCX 작성지침 .....	29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 .....	42
제3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83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 .....	83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91
제3절 사회복지지출 .....	94
제4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96
제5절 총사회복지지출 .....	99
제6절 순사회복지지출 .....	101
제4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	107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	107
제2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감에 대한 제도 분석 .....	119
제5장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	135
제1절 사회복지지출 비교 .....	135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심층 분석 .....	142

제6장 향후 과제 .....	173
1.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의 추계 준비 .....	173
2. Loan에 대한 이자 지원 추계 준비 .....	175
3. 고용 관련 추계의 정확성 제고 .....	175
참고문헌 .....	177
부록 .....	183
부록 1.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	185
부록 2.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1) .....	187
부록 3.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	223
부록 4. OECD SOCX 가이드라인 전문/번역문 .....	229

## 표 목차

〈표 1- 1〉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지출 통계 범위 .....	20
〈표 2- 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 .....	33
〈표 2- 2〉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개요 .....	35
〈표 2- 3〉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 .....	41
〈표 2- 4〉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	43
〈표 2-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	44
〈표 2- 6〉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	45
〈표 2- 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	48
〈표 2- 8〉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	51
〈표 2- 9〉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	52
〈표 2-10〉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현황 .....	55
〈표 2-11〉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	58
〈표 2-12〉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	58
〈표 2-13〉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	59
〈표 2-14〉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	60
〈표 2-15〉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1년말 기준) .....	60
〈표 2-16〉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	62
〈표 2-17〉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배분 구성 비중 .....	64
〈표 2-18〉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재원 구성비중 .....	64
〈표 2-19〉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	64
〈표 2-20〉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	65
〈표 2-21〉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	66
〈표 2-22〉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	69
〈표 2-2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1) .....	70
〈표 2-2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	71
〈표 2-2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	76

〈표 2-26〉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	79
〈표 3- 1〉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2011년) .....	84
〈표 3- 2〉 공적연금 지출규모(2011) .....	85
〈표 3- 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	86
〈표 3- 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	86
〈표 3- 5〉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	87
〈표 3- 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87
〈표 3- 7〉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	88
〈표 3- 8〉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89
〈표 3- 9〉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90
〈표 3-10〉 제도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90
〈표 3-11〉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	91
〈표 3-12〉 퇴직연금 지출규모 .....	91
〈표 3-13〉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	92
〈표 3-14〉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	92
〈표 3-15〉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	93
〈표 3-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0-2011년) .....	94
〈표 3-17〉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95
〈표 3-18〉 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 .....	95
〈표 3-19〉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	97
〈표 3-20〉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	98
〈표 3-21〉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추계결과 .....	99
〈표 3-22〉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100
〈표 3-23〉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	101
〈표 3-24〉 직접세율 추계결과 .....	102
〈표 3-25〉 간접세율 추계결과 .....	102

〈표 3-26〉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 103

〈표 3-27〉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103

〈표 4- 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 108

〈표 4-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 109

〈표 4- 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 110

〈표 4- 4〉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 111

〈표 4- 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 112

〈표 4- 6〉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 113

〈표 4- 7〉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 114

〈표 4- 8〉 기능별 사회복지 지출액 ..... 115

〈표 4-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 116

〈표 4-1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 ..... 117

〈표 4-1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 118

〈표 5- 1〉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 136

〈표 5- 2〉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 137

〈표 5- 3〉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 138

〈표 5- 4〉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 139

〈표 5- 5〉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 140

〈표 5- 6〉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2007) 비율 ..... 141

그림 목차

[그림 2- 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 36

[그림 2- 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67

[그림 4- 1] 공공부조제도의 제도별 지출 추이 ..... 122

[그림 4- 2] 사회보상제도의 제도별 지출 추이 ..... 125

[그림 4-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지출 추이 ..... 128

[그림 5- 1]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 142

[그림 5- 2]	공공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	143
[그림 5- 3]	공공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	144
[그림 5- 4]	공공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	145
[그림 5- 5]	공공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	145
[그림 5- 6]	공공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	146
[그림 5- 7]	공공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	147
[그림 5- 8]	공공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	148
[그림 5- 9]	공공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	148
[그림 5-10]	공공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	149
[그림 5-11]	주요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	150
[그림 5-1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노령 추이 비교 .....	151
[그림 5-1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	151
[그림 5-14]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	152
[그림 5-15]	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	153
[그림 5-16]	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	154
[그림 5-17]	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	154
[그림 5-18]	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	155
[그림 5-19]	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비교 .....	155
[그림 5-20]	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비교 .....	156
[그림 5-21]	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	157
[그림 5-22]	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	157
[그림 5-23]	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	158
[그림 5-24]	주요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	159
[그림 5-25]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	160
[그림 5-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	160
[그림 5-27]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	161
[그림 5-2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	162

[그림 5-29] 주요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 163

[그림 5-30] 총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 164

[그림 5-31] 총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 164

[그림 5-32] 총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 165

[그림 5-33] 총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 166

[그림 5-34] 총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 166

[그림 5-35] 총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 167

[그림 5-36] 총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 168

[그림 5-37] 총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 168

[그림 5-38] 총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 169

부표 목차

〈부표 1〉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 185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 187

〈부표 3〉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 188

〈부표 4〉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 189

〈부표 5〉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 190

〈부표 6〉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 191

〈부표 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 192

〈부표 8〉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 193

〈부표 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 195

〈부표 10〉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 198

〈부표 11〉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200

〈부표 1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 202

〈부표 13〉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 204

〈부표 1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206

〈부표 1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 208

---

〈부표 16〉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	212
〈부표 17〉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	214
〈부표 1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	216
〈부표 19〉 OECD SOCX 분류에 따른 세제혜택 내역(국세부분) .....	217
〈부표 20〉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	221

---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가간 사회보장수준을 비교하는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나아가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우리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빈번히 인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에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 통계제출은 OECD 회원국의 의무사항(OECD협정문 제3조에 따른 ‘권고 의무’에 해당)임.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수집하고, 5대 사회보험기금 및 재정, 공기업 및 민간기업, NGO 등 제3섹터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함.
  - 중앙정부(15부, 1처, 12청, 2위원회; 2011년 복지재정지출 및 자료원 기준)

와 지방정부(2011년 기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5대 사회보험 기금 및 재정, 공기업 및 민간기업, NGO, 민간모금기관, 공제회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 사회복지성격의 지출을 집계하여 추계함.

○ 자발적민간부문 조사 대상 변경

- 전년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금기관 및 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통계청 승인변경)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모금 및 배분실태는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로 같음

□ 추계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이전소득자의 조세부담 추계 방법 다양화

-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과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방식의 추계 결과 비교

## II. 주요 연구결과

### 1. OECD SOCX Manual (2011) 전문 번역

□ 2011년 매뉴얼은 기존(2007년)의 매뉴얼에 비해 두 가지 항목을 새로 제시하고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부문 지출(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에 대한 내용을 제시(OECD, 2012: para 76)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 혹은 자체사업비(OECD, 2012: para 77)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
- OECD SOCX는 원래 UN SNA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호 일치성을 위해 자본 투자를 포함하나(OECD, 2012: para 92), 상환을 조건으로 받는 대출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에 포함하지 않았음. 그러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저금리 및 금리차이로 인한 이차지원 금액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OECD, 2012: para 93).

□ 이와 함께 과거 매뉴얼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예시들을 추가로 기술

- 노령, 보건, 주거의 내용 추가 및 가족, 기타의 세부항목 예시 추가(OECD, 2012: para 88)

## 2. 추계결과

□ 2011년 기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41.5조 원이며, 중앙정부 28.4조원(68.5%), 지방정부 13.0조원(31.5%)으로 구성됨.

〈표 1〉 일반정부의 지출규모(2011년)

(단위: 십억원, %)

구분	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액	41,503	28,419	13,084 <sup>1)</sup>
비중	100.0	68.5	31.5

주: 제도별, 부처별 세부 통계는 3장 p. 84 참조

1)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11.1조원)와 자체사업비(1.98조원)의 합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각 부처별 예산서

- 2011년 기준 사회보험의 지출규모는 70.7조원이며, 건강보험 36.9조원 (52.3%), 공적연금 22.8조원(32.3%), 고용보험 5.2조원(7.4%), 산재보험 3.6조원(5.2%), 장기요양보험 2.0조원(2.8%)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사회보험의 지출규모(2011년)

(단위: 십억원, %)

구분	계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	70,762	22,855	36,993	2,002	5,262	3,650
비중	100.0	32.3	52.3	2.8	7.4	5.2

주: 사회보험별 세부 통계는 3장 pp. 85~86 참조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11;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11;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11;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2011;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4 •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 일반지출과 사회보험 지출, 공기업의 지출로 구성됨. 2011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2.9조원임.
- 구성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62.7%), 일반정부지출(36.8%), 공기업(0.6%) 순으로 나타남.

〈표 3〉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구분	계	정부일반지출		사회보험	공기업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액	112,894	41,503	28,419	70,762	629
비중	100.0	36.8	25.2	62.7	0.6

주: 공기업의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에 대한 세부 통계는 3장 p. 87 참조

- 2011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14%로 전년과 동일
  -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전년(107.2조원) 대비 5.3% 증가하였으나, GDP 역시 전년(1,173.2조원) 대비 5.3% 증가했기 때문임.
- 2011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는 보건(44.7%), 노령(23.0%), 가족(10.2%) 순으로 나타남.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전년 대비 증감율로 살펴보면, 가족부문의 지출 증가가 가장 높게(25.5%) 나타나고, 그 다음 유족(9.6%)으로 나타남. 반면에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8.3%, 5.9%씩 감소함.

〈표 4〉 공공사회복지지출<sup>1)</sup>의 기능별 추계결과(2010-2011)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24,381	22.7	25,965	23.0	6.5
2. 유족	3,035	2.8	3,326	2.9	9.6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5,692	5.3	6,014	5.3	5.7
4. 보건 <sup>2)</sup>	48,294	45.0	50,448	44.7	4.5
5. 가족	9,217	8.6	11,569	10.2	25.5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032	4.7	4,615	4.1	-8.3
7. 실업	3,687	3.4	3,561	3.2	-3.4
8. 주거	-	-	-	-	-
9. 기타	7,864	7.3	7,397	6.6	-5.9
계	107,202	100.0	112,894	100.0	5.3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비율	9.14		9.14		0.03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에 근거한 의무지출로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조달하고 있음.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자동차책임보험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민간부문의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됨.

○ 2011년 기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4.9조원이며, 지출비중은 퇴직연금(41.9%)이 가장 높고, 이어서 법정퇴직금(35.7%), 자동차책임보험금(8.2%), 유급질병휴가급여(6.2%) 순으로 나타남.

- 노령부문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되며,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77.7%를 차지함.
-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유급질병휴가급여와 교통통신감면으로 구성되며, 8.8%를 차지함.
- 보건부문은 자동차책임보험금으로 구성되며, 8.2%를 차지함.
- 가족부문은 산전후휴가급여와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되며, 4.0%를 차지함.
- 기타부문은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만 구성되며, 1.2%에 불과함.

〈표 5〉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계	법정퇴직금 <sup>1)</sup>	퇴직연금	자동차 책임보험금	산전후 휴가급여	유급질병 휴가급여 <sup>2)</sup>	교통통신 감면 <sup>3)</sup>
1. 노령	11,617 (77.7%)	5,344	6,263	-	-	-	10
3. 근로무능력	1,322 (8.8%)	-	-	-	-	927	395
4. 보건	1,223 (8.2%)	-	-	1,223	-	-	-
5. 가족	604 (4.0%)	-	-	-	603	-	0
9. 기타	185 (1.2%)	-	-	-	-	-	185
계	14,952	5,344	6,263	1,223	603	927	591
구성비	100.0	35.7	41.9	8.2	4.0	6.2	4.0

주: 1) 법정퇴직금 전체 금액(26,720십억원) 중 법정퇴직연령 비율(약 20%)을 적용한 수치임.  
 2) 자세한 산식은 3장 p. 94를 참조  
 3) 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항공요금, 지하철, 공항철도, 유선전화·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2012 국제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건부문).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됨.
  - 201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112.9조원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4.9조원의 합으로 127.8조원임.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8.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1.7%
  - 2011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35%, 이는 공공사회복지지출 9.14%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21%의 합으로 구성됨.

〈표 6〉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금 액	127,845	112,894	14,952
경상GDP %	10.35	9.14	1.21
구성비	100.0	88.3	11.7

- 201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보건(40.4%)이 가장 높고 노령(29.4%), 가족(9.5%)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24.5%)과 노령(14.4%), 유족(9.6%) 순으로 나타남.

〈표 7〉 사회복지지출<sup>1)</sup>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2,863	27.7	37,582	29.4	14.4
2. 유족	3,035	2.6	3,326	2.6	9.6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6,810	5.7	7,336	5.7	7.7
4. 보건	49,529	41.7	51,672	40.4	4.3
5. 가족	9,781	8.2	12,172	9.5	24.5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032	4.2	4,615	3.6	-8.3
7. 실업	3,687	3.1	3,561	2.8	-3.4
8. 주거	-	-	-	-	-
9. 기타	8,040	6.8	7,582	5.9	-5.7
계	118,775	100.0	127,845	100.0	7.6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	10.12		10.35		2.2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의 비법정복지와 사회공헌활동, 제3섹터부문의 사회복지시설과 민간모금기관의 후원금 및 모금, 사회적기업, 공동체로 구성됨.

○ 2011년 기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19.0조원이며, 이는 제3섹터 3.0조원(15.9%)과 기업부문 15.9조원(84.1%)의 합에서 이중계산으로 인한 중복금액 224십억원(1.2%)을 감한 것임.

- 2011년 기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는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 78.4%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민간모금기관 11.5%,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5.0%, 비영리단체 2.8%, 사회복지시설 1.8%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증감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동체가 481.0%, 민간모금기관 2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급증 이유는 공동체와 민간모금기

관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것임. 특히 민간모금기관은 조사대상기관에 대해 처음 모집단 정리로 2011년도 92개소에서 2012년 572개소로 6.2배 확대됨.

〈표 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부 문	구 분	2010		2011		'10-'11 증감율
			비율		비율	
계		16,064	100	19,011	100	18.3
제3 섹터	소 계	1,330	8.3	3,027	15.9	127.5
	민간모금기관	589	3.7	2,194	11.5	272.7
	사회복지시설	422	2.6	335	1.8	-20.5
	사회적 기업	22	0.1	14	0.1	-36.9
	비영리단체	494	3.1	532	2.8	7.8
	공동체	30	0.2	176	0.9	481.0
	이중계산 <sup>1)</sup>	-225	-1.4	-224	-1.2	-0.8
기업	소 계	14,734	91.7	15,984	84.1	8.5
	기업의 법정의 복리비	13,802	85.9	14,912	78.4	8.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837	5.2	953	5.0	13.9
	기업의 법정의 보건비	95	0.6	119	0.6	25.2

주: 1) 민간모금기관 배분금액 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의 후원금으로 지원된 부분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인 기타부부분의 비중이 92.1%로 가장 높고, 노령부문 4.2%, 보건부문 3.4% 순으로 나타남.

〈표 9〉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sup>주)</sup>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구분	지출액	구성비
1. 노령	800	4.2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46	0.2
4. 보건	651	3.4
9. 기타	17,515	92.1
계	19,011	100.0
경상GDP 대비 %	1.54	

주: 우리의 자발적민간지출은 전체 9개 정책영역 중 6개 영역(SOCX Category No 1, 2, 3, 4, 5, 9)으로 작성(표 3-21 참조)되지만, OECD는 주요 4개 영역으로만 공표하고 있음. 따라서 2개 영역(2, 5)은 9번으로 통합 공표되고 있음.

□ 총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성됨.

○ 2011년 기준 총사회복지지출은 146.9조원이며, 공공사회복지지출(76.9%)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12.9%),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10.2%) 순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1.89%로 공공사회복지지출(9.14%)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1.21%),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1.54%)의 합과 같음.

〈표 10〉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금 액	146,857	112,894	14,952	19,011
경상GDP 대비	11.89	9.14	1.21	1.54
구성비	100.0	76.9	10.2	12.9

○ 총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보건(35.6%)부문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 노령(26.1%), 기타(16.3%)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정책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22.1%), 노령(16.5%), 유족(9.7%), 근로무능력관련급여(7.8%), 기타(7.5%) 순으로 나타남.

〈표 11〉 총사회복지지출<sup>1)</sup>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2,945	24.4	38,382	26.1	16.5
2. 유족	3,035	2.3	3,330	2.3	9.7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6,845	5.1	7,382	5.0	7.8
4. 보건	50,118	37.2	52,323	35.6	4.4
5. 가족	10,901	8.1	13,314	9.1	22.1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032	3.7	4,615	3.1	-8.3
7. 실업	3,687	2.7	3,561	2.4	-3.4
8. 주거	-	-	-	-	-
9. 기타	22,277	16.5	23,950	16.3	7.5
계	134,839	100.0	146,857	100.0	8.9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	11.49		11.89		3.5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을 감하고 조세혜택을 더한 것임.

이 때 조세부담을 추계하기 위해 직접세율과 간접세율의 추계가 필요함.

○ 직접세율과 간접세율의 추계는 매크로 데이터 이용과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실효세율)은 4.6%,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은 2.2%로 나타남.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을 활용하여 추계에 반영함.

—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간접세율은 2011년 기준 최소 10.55%, 최대 15.34%,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간접세율은 2010년 기준 5.1%로 차이가 있음. 본 연구는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부담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매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최소세율을 활용하여 추계에 반영함.

— 2011년 기준 조세부담은 7.7조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접세 및 보험료로 인한 조세부담(1조원)과 간접세로 인한 조세부담(6.7조원)의 합임.

○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146.9조원)에서 조세부담(7.7조원)을 감하고 조세혜택(8.9조원)을 가한 결과 148.1조원으로 나타났고 요소GDP 대비 비율은 13.46%로 나타남. 이는 전년대비 0.4%p 증가한 수치임.

〈표 12〉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총사회복지지출	134,839	100.0	146,857	100.0	8.91
2. 조세부담 <sup>1)</sup>	7,451	5.5	7,689	5.2	3.1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810	0.6	1,008	0.7	24.54
간접세	6,641	4.9	6,680	4.5	0.59
3. 조세혜택 <sup>2)</sup>	8,616	6.4	8,886	6.1	3.13
계	136,004	100.9	148,053	100.8	8.86
요소GDP 대비 비율	13.06		13.46		3.05

주: 1) 직접세는 기업복지의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임(사회보험급여는 소득세가 면세임). 간접세 추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기업복지 중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TBSPs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증감사유에 대한 제도 분석을 실시함.

○ 1999년 공공부조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 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하였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었음.

－ IMF 이후 대량실업 사태로 인해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 사회복지지출 급증하였음.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구학적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 요소 강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됨.

－ 전년 대비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증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감소(2010년 155만명 → 2011년 147만명)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비롯한 현금급여 액수가 인상(2010년 월 111만4천원 → 2011년 월 122만4천원)되어 나타난 결과임.

○ 사회보상제도의 지출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출 증가에 따른 것임.

- 국가보훈대상자 수가 증가(1990년 17만2천여명→2000년 50만3천여명→2011년 85만7천여명)하고 보상금 수준도 증가(1990년 월 17만원→2000년 월 50만원→2011년 월 85만원)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기출·질병·휴폐업 및 실직, 방임이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여건에 의한 영향이 큼.
  - 2006년 820억원 → 2007년 460억원 → 2009년 1,140억원 → 2011년 780억원
- 2007년 지역사회복지서비스혁신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장애인·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량 확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제도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이 증가함.
  - 1990년대 후반에는 시설 및 재가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 1997년 IMF 사태 이후 대량실업에 따라 고용서비스는 2000년대 후반에 확대
    - 1990년 0.6조원 → 2000년 5조원 → 2005년 10조원 → 2006년 15.2조원 → 2011년 20.7조원

#### 4. OECD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 복지레짐별 대표국가(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비교함.
  - 스웨덴은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독일과 영국, 미국이 뒤따르고 있음.

- 지난 30년간 복지국가의 팽창과 위기를 경험한 후 조정국면에 들어갔던 모든 국가들이 2008년을 기점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 지난 30년간 스웨덴은 가장 높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독일과 영국, 미국이 뒤따르고 있음.
  - 최근에는 스웨덴과 독일, 영국이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임.
    - 2009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스웨덴 29.8%, 독일 27.8%, 영국 24.1%, 미국 19.2%, 한국 9.6%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절대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그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1990~2009년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6.70%, 영국 1.95%, 미국 1.83%, 독일 1.31%, 스웨덴  $\Delta$ 0.0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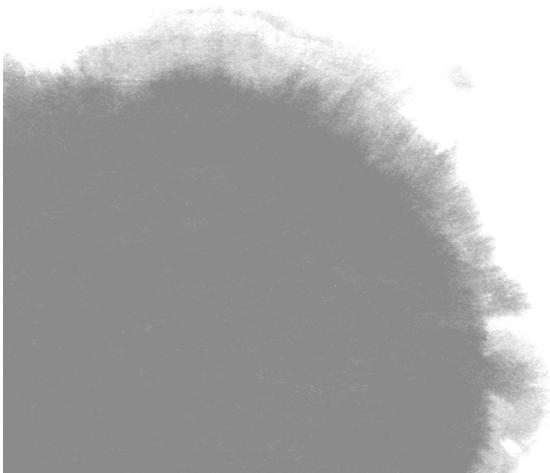
### III. 향후 과제

- OECD SOCX의 2011년 매뉴얼은 기존(2007년)의 매뉴얼에 비해 두 가지 항목을 새로 제시하고 있어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부터 추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 유아교육 및 보육부문 지출(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의 추계에 있어 각국의 의무취학연령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 혹은 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OECD SOCX는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정책금융사업을 통해 서민들에게 저금리나 금리차이를 통해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 생산 기준의 엄격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관련 통계는 OECD ALMP database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제도 확충과 더불어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 고용과 복지의 연계 현상이 두드러지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복지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음.
  - 향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통계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지출 증감에 따른 제도 분석,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봄.

# 1장

## 서론

K  
I  
H  
S  
A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사회복지지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국제기구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빈민구호의 개념에서 시작된 사회복지는 이제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의 성숙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로 복지국가의 외형적인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보편적인 복지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한 국가의 복지위상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선진국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사회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경제성장에 걸맞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제 비교와 추이 분석 및 전망을 통해 복지국가에의 열망을 제시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지지출 통계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기준에 따라 복지지출통계를 생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도적 특수성을 국제통계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지출 규모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의 통계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통계 생산 기준

과 방법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통계가 생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는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표준화된 작성지침에 따라 생산된 각종 통계들을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UN(United Nations)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유럽연합 통계국(EUSTAT)의 ESSPROS(European System of Integrated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OECD의 사회복지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Database) 등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었다.

Eurostat는 유럽 회원국들의 사회보장부문에 특화된 통계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1970년대 후반에 ESSPROS를 개발하였다. ESSPROS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각국의 행정적인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틀로, 가구에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와 재정에 대한 국제비교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와 수급자 수, 지출, 연금 수급자와 순 사회적 급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ESSPROS는 핵심 시스템(Core system)과 모듈시스템(Modules)으로 구성된다. 핵심시스템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고, 모듈시스템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데 연금 수급자 수, 순 사회적 급여 등이다(ESSPROS,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ocial\\_protection/introduction](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ocial_protection/introduction)).

이에 반해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이하 SOCX)의 큰 틀은 UN의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에 근거하고 있다(OECD, 2007: 5, para. 5). UN의 국민계정은 원칙적으로 정부지출과 재정에 관한 회계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 된 2008 SNA는 공공부문 지출의 거시적인 기준과 자본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틀에서는 사회적 이전과 공공사회정책프로그램의 경향을 분석하기에 부적절하여, 정부회계의 기능별 지출항목 중 보건과 사회보장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Varley, 1986; Oxley et al., 1990). 이에 따라 OECD는 보건과 사회보장부문의 각 하위 항목별 지출액을 기록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출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복지지출의 흐름과 규모, 추이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UN 국민계정이 공공부문의 예산만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규모에서 누락되는 민간부문의 지출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복지지출의 추계 범위는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즉 Eurostat의 ESSPROS와 OECD SOCX가 모두 UN 국민계정(SNA)을 따르고 있으며, 국민계정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UN SNA는 정부의 모든 지출 행위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비용과 운영경비, R&D 지출을 포함한다. 즉 UN SNA에 나타난 보건 및 사회보장 지출에서도 정부의 행정비용과 운영경비, R&D 지출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Eurostat의 ESSPROS는 위험 혹은 욕구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금 혹은 현물의 형태로 가구로 이전된 사회적 급여와 기관 지출,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다른 지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비용과 운영경비가 포함되나 조세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OECD SOCX는 정책범위에 있어서는 Eurostat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정부예산(UN, SNA) 중 보건(Health)과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의 항목을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OCX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 행정비용과 운영경비, R&D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표 1-1 참조).

요약하면, UN SNA와 IMF GFS와 같이 정부의 재정통계 전반을 생산·구축하는 국제기구 통계와 OECD SOCX, Eurostat ESSPROS와 같이 사회복지에 특화하여 재정통계를 생산·구축하는 국제기구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회원국이 아닌 반면 OECD 회원국인 관계로 Eurostat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OECD SOCX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각국의 통계를 별도로 생산하지 않고 Eurostat에서 ESSPROS 통계와 OECD SOCX 통계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둘 사이의 통계는 상당한 연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국제기구의 사회복지지출 통계 범위

	OECD SOCX(2011)	EUROSTAT ESSPROS(2008)	UN SNA(2008)
발간시기	1996	1981	1986
정책영역 (보건 & 사회보장)	9개 영역	8개 영역	10개 영역
	노령	노령	노령
	유족	유족	유족
	근로무능력관련 급여	장애	상병과 장애
	보건	상병/보건서비스	보건
	가족	가족/아동	가족과 아동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
	실업	실업	실업
	주거	주거	주거
	기타 사회정책 영역	사회적 배제와 기타	그 외 사회적 배제 R&D 사회보장 그 외 사회보장
재정범위	공공부문 + 민간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
주요쟁점	- 행정 및 기관 운영비 불포함 - 조세급여 포함	- 행정 및 기관 운영비 포함 - 조세급여 배제	- 일반적인 행정비용과 규제 비용, 연구비용 포함
통계 예시 (공공)	- 스웨덴(29.8%, 2009) - 덴마크(30.2%, 2009) - 프랑스(32.1%, 2009)	- 스웨덴(32.1%, 2009) - 덴마크(33.4%, 2009) - 프랑스(33.1%, 2009)	- 덴마크(42.2%, 2006)

주: OECD SOCX Manual의 정책영역 순서에 따라 UN SNA와 ESSPROS를 구성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UN 2008 SNA; EUSTAT ESSPROS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재구성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추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로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추계결과를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격년으로 1990년부터 2010년도까지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OECD SOCX의 거시적인 분석틀은 UN 국민계정(SNA)을 따르고 있으나 미시적인 분석틀은 SOCX에서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새

1) OECD는 2년 단위로 각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OECD 요청에 따라 2012년 상반기에 2009년 기준(1990~2009)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제출하였고, 2012년 11월 15일에 OECD SOCX 데이터가 공표됨.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1990~2011) 통계는 2014년 제출 및 공개될 예정임.

로운 제도의 도입과 각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OECD SOCX의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 통계를 생산하고 기 공표된 통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3년에는 기존의 13가지 가능별 지출 항목을 9가지로 축소하였다. 이 경우 분류 항목은 축소되었으나 규모는 변함이 없다. 2004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노령·장애·기타급여에 포함하였다. 2006년부터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의 구성항목을 재구조화하였다<sup>2)</sup>. 2009년부터는 법정퇴직금이 법정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의 퇴직금만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Adema and Ladaique, 2009). 이는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하고, 자발적 퇴직자와 해고자의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노동시장요인에 의한 해고로 공공재원에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에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한국의 퇴직금 상당 부분을 노령연금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sup>3)</sup>. 마지막으로 2011년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에 대한 엄격한 통계 생산을 요구하고 있으며(OECD, 2012: para 76, 77), 저금리 대출과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지원 은 포함(OECD, 2012: para 93)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작성기준에 따라 앞으로 OECD에 제출할 201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생산하

2) ALMP의 세부 항목이 2006년까지 소극적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노동시장의 훈련, 청소년 관련 사업, 고용보조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고용서비스와 행정으로 구분)에서 이후 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경됨. 즉 ALMP의 세부항목은 PES와 행정, 직업훈련, 일자리순환 및 일자리 나누기, 고용인센티브, 지원고용 및 재할,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의 7개 영역임.

3) 한국에서 퇴직금은 노후소득보장측면과 노동시장자유로 인한 해고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유럽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고, 공공재원으로 조성된 해고수당의 성격과도 상이함.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명명해온 ‘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이에 따른 것임. 즉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노동시장에 이직이 반복되거나 증가하는데, 이 때 해고자에게 제공되는 퇴직금은 법정노령연금에 도달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엄격한 의미의 ‘법정 퇴직금’이 아님.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관례를 통해 결정되고, OECD는 추계 원칙과 배치되는 사례들에 대해 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다<sup>4)</sup>.

이러한 통계들은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통계들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수준 추이와 복지동향을 파악하는 기초통계로써 또는 복지정책 수립 및 설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 제2절 연구내용

지금까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는 지난 시간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 수준에 합당한 복지제도의 양적 구축과 발달에 몰두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제 복지제도의 성숙과 확충에 따라 복지제도의 질적 성숙을 도모할 때가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지출 통계 역시 다양한 복지담론과 정책 설계 및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단계 발전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추계방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복지레짐별 주요 5개국과 비교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위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근 복지지출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제도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OECD SOCX Manual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에 포함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는 기본적으로 OECD작성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최근 개정판을 통해 작성지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작성지

4)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회복지지출’은 OECD SOCX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public social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으로, OECD SOCX manual(2011)에서는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글자대로 의역하면 ‘공적 법정 사회복지지출’이 된다. 이에 대해 학자들과 논의를 거쳐 부르기 용이하고 의미전달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로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총사회복지지출(total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를 더한 통계로 OECD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침에 적용하고, 최근 변경된 자발적민간부문에 대한 조사설계를 보여준다. 이 때 조세 지출에 한해 기존의 추계방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두 가지 추계방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추계방법에 따른 추계결과를 보여준다. OECD는 SOCX(사회복지지출통계데이터베이스)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4개 지출통계를 공개하고, Working Paper를 통해 순사회복지지출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을 ‘사회복지지출’로 표기하고, 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인 ‘총사회복지지출’을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추이와 동향을 제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변화와 이를 야기한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복지 레짐별 대표국가인 선진 4개국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함에 있어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문헌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위탁연구용역, 관계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방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 1.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자료와 국외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자료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변화와 지출의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복지지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와 변화,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

출에 대한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조사에서 탈피하여 민간 모금기관과 후원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변화에 따른 제도 분석과 복지레짐별 대표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UN의 국민계정(2008 SNA, 1993 SNA)과 OECD의 SOCX 작성기준(OECD, 2011; OECD, 2007; Adema et al., 2009)과 추계자료, 간접세의 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2011)를 살펴본다.

##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Bottom-up방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특성파악과 자료수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통계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건부와 사회복지부의 세입세출예 결산서(중앙정부는 dBrain System, 지방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수집자료)와 각 사회보험 공단의 통계연보(결산서), 여러 관련 기관의 전산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조세감면 자료가 수록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사용한다. 이 중 세입세출예 결산서와 통계연보는 공표자료를 이용하여 하위단위의 지출항목을 재분석한다. 즉 공표자료를 세부 분해하여 전체구성을 파악하는 Bottom-up방법을 사용한다.

## 3. 2차 자료 가공분석

원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일부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기 발간된 자료를 수집(2차 자료)하여 가공분석하거나 담당기관에 재분석을 의뢰한다. 먼저 2차 자료를 가공 분석한 것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중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이다.

다음 급여내용이 수록된 원자료(raw data)의 경우 개인의 정보보호로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의뢰한 후 분석결과를 수집한다. 여기에는 관세청의 장애인물품의 관세감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휴가급여 등이 해당된다. 이

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OECD 추계방법에 따라 기능별, 주체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능별 분류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의 급여나 정부의 세출항목, 그리고 전산분석자료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분류한다.

#### 4. 조사연구(Survey)

조사연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등 요금 감면액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다음으로 민간모금단체, 후원금품 모집등록기관에 대한 모금 및 후원금 배분현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부문의 급여인 공제회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 5.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 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각 국가간 상이한 제도에 대해 공통의 목표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징으로, 국가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출하는 급여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계 하고자 공통의 기준설정에 따른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지출이나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사회보장 체계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각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포함여부를 고심한 내용에 대하여는 OECD관계자들<sup>5)</sup>, OECD회원국의 통계생산 연구자들<sup>6)</sup>과 Case Study를

5)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등임.

6) 독일 연방보건복지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정보조사분석부(情報調査分析部)의 Yukiko M. Katsumata 부장(部長),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복지계정 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ka 등임.

병행한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추계가 달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6. 위탁연구용역 의뢰

사회복지지출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부재정의 흐름과 사회복지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위탁용역을 의뢰한다. 이는 OECD 작성지침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의에 대한 해석과 우리나라의 제도 적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과 정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부문의 조세부담과 조세지출의 작성기준과 추계비율을 검토하고 이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결과를 선택하여 추계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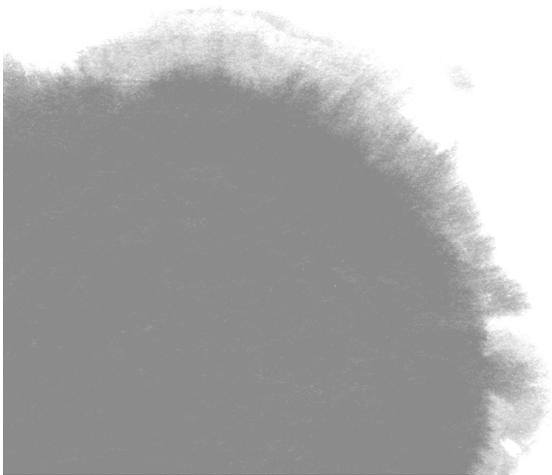
## 7.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본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본 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중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등과 개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생산 가능한 기관과의 통계산출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과 추계결과에 대한 실무 간담회를 실시한다.

# 2장

K I H A S A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





## 제2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기준과 추계방법

### 제1절 OECD SOCX 작성지침<sup>7)</sup>

#### 1. 개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이하 OECD SOCX)는 사회정책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OECD, 1996).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 분석들은 국민계정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급여)’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 속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짐으로써(Varley, 1986; Oxley et al., 1990)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OECD SOCX는 34개 회원국이 자국 통화로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상세 수준에서 지출 항목을 기록함으로써 정책영역별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른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OECD SOCX는 추상적이지만 확고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지출을 추계하고 있다. 첫째, OECD SOCX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

---

7)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중 Part II. Manual 을 요약 정리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정의에 따라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구간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사회복지지출은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급여를 포함한다. 먼저, 연금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부조급여와 같은 현금급여(cash benefit)이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사회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in kind benefit)이다. 마지막으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민간의료보험 각출금에 대한 조세감면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수단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급여형태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세지출이 현금 급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OECD 홈페이지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셋째, 사회복지지출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급여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개인간 재분배 혹은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한다. 즉 수급권은 개인별 직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가구간 재분배와 항상 관련이 있고, 일반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을 재분배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민간 복지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위험의 분산을 통한 개인간 재분배가 일어나는 경우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민간보험회사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에 대해 동일한 기여금을 각출하도록 강제하고 아픈 사람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가구간 재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예,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와 우호적인 조세를 제공하는 민간 플랜(예, 연금저축) 역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넷째, SOCX는 일반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급여를 제공할 때 전달체계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비용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과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같은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의 원자료는 독립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the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에서 추출된다. 이들 영역에서 의료진, 고용센터의 직원,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금은 행정비용에 포함되지만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의 직원은 구직자에게 응대 및 카운슬링을 직접 제공하고,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와 분리할 수 없다.

다섯째, 자본투자(예, 건설비용)는 자연증가에 기초하여(accruals basis) 포함된다. 즉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을 건설하는데 4년간 100만달러(이자를 포함하여)가 지출되었다고 할 때 25만달러를 4년간 자본 투자 지출로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지원을 받았다면 차감된 이자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개정판에 처음 등장한 기준으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정의에서 개입은 동시적인 상호간 배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수급자가 교환적으로 등가의 가치에 대한 어떤 것을 동시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가지는 개입은 사회보장의 범위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에 제공되는 이자가 붙는 대출은 사회보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입자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일시불 지급을 갚는 것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출이 무이자거나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현재의 시장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면, 지원된 이자 혹은 차감된 이자는 사회적 급여에 포함될 수 있다(Eurostat, 2008).”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는 통계와 세부항목은 다음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 2. 사회복지지출 추계 내용

### 가. 지출 통계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의 구분은 관련 재정 흐름을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중 누가 통제하는가에 달려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해 일반 정부(각기 다른 정부수준과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통제되는 재정 흐름을 가지는 사회복지지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무가입에 따른 기여금의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상병급여는 관습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정민간사회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영역을 통해 작동되는 사회적 지원이다. 예를 들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상병급여나 민간보험기금에서 의무적인 기여금을 통해 누적된 급여로 제한된다. 둘째, 자발적인 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은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되고, NGO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민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급여이다.

사회적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개인민간보험은 가입한 사람에 한정되며,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제로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른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구간 재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그 혹은 그녀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격(기여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그런 지출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민간에서 배제’된다. 아래의 표는 사회적인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에 대한 구분을 보여준다. 생명보험저축플랜은 생명보험급여의 일부가 사회적 목적을 따르더라도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하지 않아서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생명보험저축플랜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지 않는 모기지 제도도 포함하지만, 사망, 장애, 의료개입과 은퇴 급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가진 민간 생명보험급여는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포괄적인 정보를 설명할 수 있을 때에는 포함할 수 있다.

〈표 2-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

구분	공공		민간	
	의무적	자발적	의무적	자발적
재분배 있음	자산조사 급여, 사회보험급여	공공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자영자의 '선택참여(opt in)'	고용주 제공의 상병급여, 강제적인 기여로부터 누적된 급여	조세이익 급여, (개인 은퇴계좌, 직업연금, 고용주 제공 의료플랜)
재분배 없음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저축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비 조세이익 연금 급여	민간에서 배제: 개인의 선호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야기된 보험 플랜에서 누적된 급여

주: 1) 정의에 따라 개인간 이전은 사회적 속성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음.

2) 어두운 부분은 사회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급여를 반영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OECD에서 정의하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의 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하면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 된다.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도 가능해진 장점이 있으나 이들 자료는 조세 전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복지 수준을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 부문별 복지 정책의 경향과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용이하지만 조세시스템이 어떻게 사회보장 체계에서 공·사 지출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고경환 외, 2011: 21 재인용). 이런 문제의식에서 OECD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순사회복지지출이란 “정부의 사회복지 차원의 노력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현금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를 통하여 사회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稅前 총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복지효과 측정은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예: 아동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 급여수령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사회지출에서 급여범위와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

상의 혜택과 부담을 추가한 것이 순사회복지지출이다(고경환 외, 2011: 21 재인용).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먼저 총 공공사회지출(1)에서 국고로 귀속된 직접세와 공공급여로 소비된 재화에 대한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공공사회지출(2)을 계산한다. 그리고 현금급여와 유사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연금 제외)의 가치(T1)가 소비에 사용되므로 이들 항목에 대한 간접세의 귀속가치를 빼서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 TBSP(4)를 도출한다. 현행 민간급여(T2)에 대한 TBSP의 가치를 더하면 순 현재 공공사회지출(6)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순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규모와 급여수급자에게 재분배되는 순 사회복지의 비중을 잘 반영해 준다.
- 정부통제 하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지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정 민간급여도 포함하고 이 급여가 직접세와 간접세의 과세대상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순 정부 통제 사회복지지출(net government controlled social expenditure)은 순 공공 법정사회복지지출(net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한다(9). 마지막으로 총 자발적 민간급여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을 계산한다(11).
- 순 공공급여, 법적민간급여와 자발적급여를 합하면 순 총사회복지지출(13)지표가 나온다. 이 지표는 국내생산에서 사회급여수급자에게 할당된 비중을 정량화해 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 민간사회급여(T3)에 대한 세제혜택은 민간사회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TBSP가 공공지출항목이지만 민간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순 민간사회복지지출을 더하는 것은 가계에 지원되는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순 총사회복지지출(13)은 순 현행 공공사회복지지출(6)과 순 직접 민간사회복지지출(12)을 더한 값에서 현행 민간사회복지지출(T2)을 뺀 값이다.<sup>8)</sup> 따라서 순 총사회복지지출은 한 경제의 국내생산 중에서 사회복지 수

8) 민간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가치는 민간부문급여에 부과된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그러나 이러한 TBSP가 얼마만큼 민간급여의 가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

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 마지막으로 순 사회복지지출통계는 경제규모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경상 GDP가 아닌 요소 GDP로 표시한다. 이는 간접세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급여를 조정했기 때문에 분모인 GDP도 동일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소 GDP는 간접세나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개요

+/-	줄번호	항목
	1	총 직접 공공사회복지지출
-		공공 현금보조로 지불된 직접세와 사회적 기여금
	2	순 현금 직접 공공사회복지지출
-		순 현금이전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3	순 직접 공공사회복지지출
+	T1	현금급여를 반영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혜택
-		현금급여와 유사한 세제혜택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4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
+	T2	현행 민간사회급여에 대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5	순 TBSP(연금 제외)
	6	순 현행 공공사회복지지출[3+5]
	7	총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직접세와 법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법적 민간현금으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8	순 직접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9	순 정부 법정사회복지지출[6+8]
	10	총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		직접세와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11	순 직접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
	12	순 직접 민간 사회복지지출[8+11]
	13	순 총 사회복지지출[6+12-T2]

주: 1) 음영이 있는 줄은 세금이 조정됨.

2)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순 총 사회복지지출은 현행 민간보조를 향한 세금 우대조치를 감한 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순 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얻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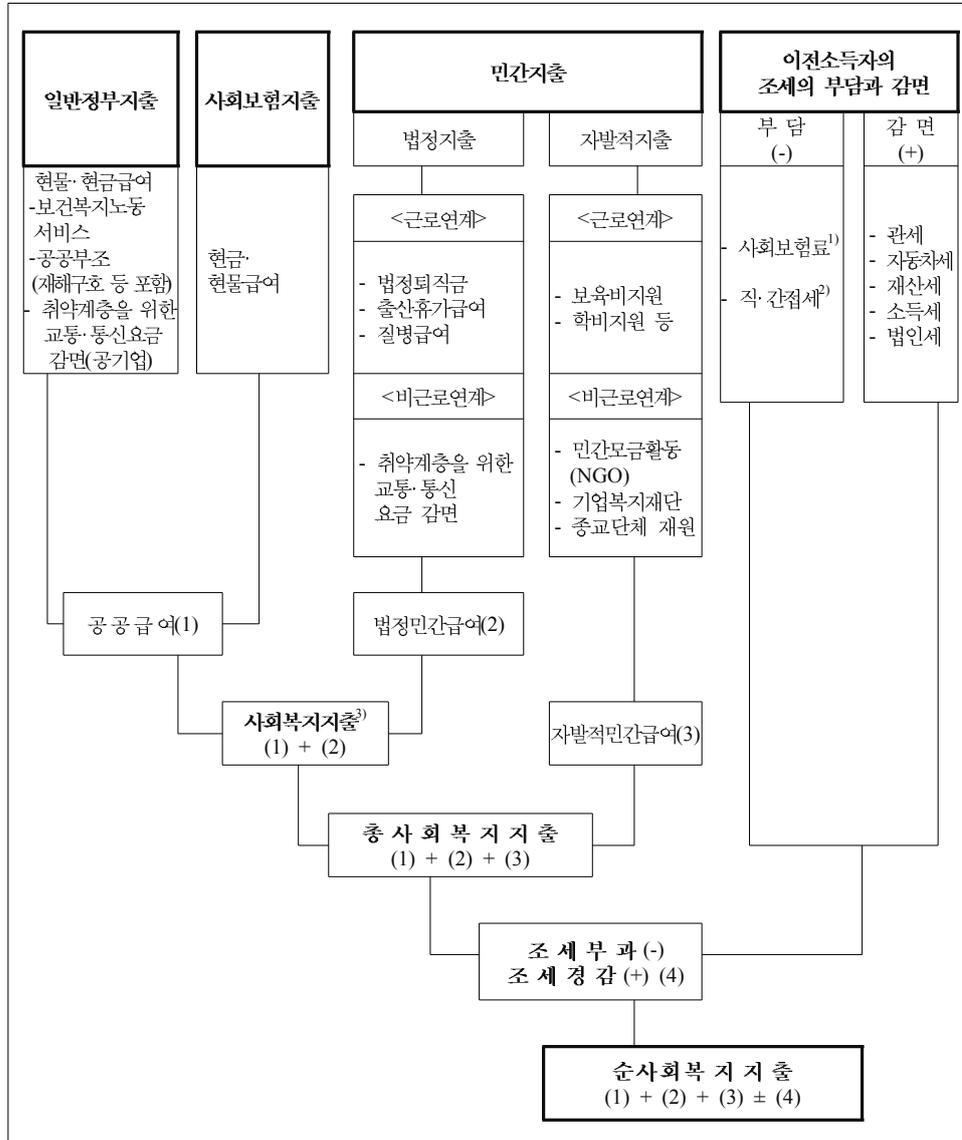
3) 아래에 괄호 안의 숫자/글자는 이 표에서 해당되는 줄을 나타낸 것임.

자료: Willem Adema, et al.(2011)

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1] 사회복지지출 추계과정



주. 1) 연금수급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예, 지역건강보험료)와 법정민간급여수급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예, 5대사회보험료).  
 2) 직접세액은 이전소득자와 법정민간급여수급자의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추계하고, 간접세액은 이전소득자, 법정민간급여수급자 그리고 자발적민간급여수급자의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추계함.  
 3) OECD는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Public Expenditure+Mandatory Private Expenditure)로 표기

## 나. 정책영역

OECD SOCX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정책영역으로 구분한다. 9개의 정책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노령(Old-age)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된다. 노령현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한다. 조기은퇴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은 포함한다.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역시 포함한다(예를 들면, 노인 그룹홈 운영 경비). SNA93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SOCX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을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한다.
- 유족(Survivors)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유족현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해당하는데, 유족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다.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는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 때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한다.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에 포함한다.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 보건(Health)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한다.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이다. 보건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보조의료서비스와 제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보건지출에서 공공기관의 용자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한다.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혜택이 있음)한다. 최근 보건부문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지출되는 장기요양돌봄서비스에 관한 지출의 이중계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보건계정(System of Health Accounts)의 개선으로 장기요양돌봄서비스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보다 확보되었으며, 이중계산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
- 가족(Family)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연관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된다.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이 포함된다.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각국 초등학교의 의무취학연령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몇몇 노르딕 국가에서 아동은 7세에 학교에 들어가는 반면 직전 해에 6세 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 참가한다. 국제 비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해야 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의 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도출된 추계치 이용). 이와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입학(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하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취학전 지출(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 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조정해야 한다.

-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이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을 포함한다. 이 항목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 실업(Unemployment)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 투입된 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원을 포함한다.
- 주거(Housing)영역에는 임대료 보조와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른 급여들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에만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현물급

여로 분류되었던(SNA, 1993 - D. 6331 참조) 꼬리표를 붙인 현금급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SOCX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포함한다(1.2.1, 3.2.1, 그리고 9.2.2.에 각각).

주거부문의 추계에 있어서 데이터 이슈는 모기지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과 같은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의 포함 여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택의 건설이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때에는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을 추계하는데 있어 방법론과 그러한 지원에 대한 적용과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없어 현재는 그러한 주거 지원은 SOCX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다.

〈표 2-3〉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

Panel A: 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1. 노령(OLD AGE)	5. 가족(FAMILY)
현금급여	현금급여
연금	가족수당
조기퇴직연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 급여들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현물급여
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	보육/재가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기타 현물 급여들
2. 유족(SURVIVORS)	6.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현금급여	고용서비스와 행정
연금	노동시장훈련
기타 현금 급여들	청년에 대한 지원
현물급여	고용보호지원
장제비	장애인 고용 지원
기타 현물 급여들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7. 실업(UNEMPLOYMENT)
현금급여	현금급여
장애연금	실업보상/해고수당
연금(산업재해)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	현물급여
유급상병휴가(기타 상병수당)	8. 주거(HOUSING)
기타 현금 급여들	현물급여
현물급여	주거보조
생활시설/재가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
직업재활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들	
4. 보건(HEALTH)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현물급여	현금급여
	소득보조
	기타 현금급여들
	현물급여
	공공부조
	기타 현물급여들

주: 통계항목 수는 매뉴얼을 기준하면 58개, OECD 홈페이지 iLibrary에는 62개를 제시하고 있어 4개의 항목 차이 발생(Category No.4의 현금급여, Category No. 6의 2개, Category No. 8의 현금급여)

Panel B: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 범위
1. 노령(OLD AGE)
이전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
4. 보건(HEALTH)
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 제2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

정책의 목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의 경계선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국은 OECD 작성지침을 기반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추계기준과 추계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OECD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일반지출(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과 사회보험, 공기업으로 구성된다.

#### 가. 정부의 일반지출

중앙정부의 일반지출에 대한 추계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과 『나라살림』, 각 부처의 예·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 전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 영역별 사업의 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참고자료로 『나라살림』, 각 부처의 예·결산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일반 정부지출의 기금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보훈처 소관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등이 포함된다.

지방정부의 일반지출에 대한 추계는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예·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혹은 집적된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를 위해 직접 수집하고 있다.

정부의 일반지출은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전 생활보호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만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2008년 도입)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연금(2010년 도입)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사회보상제도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특별보상의 취지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종종 사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의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로서 국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일례로 전쟁 중 개인의 희생이나 재산상 손실의 경우 외교적 또는 군사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의 보상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추계에는 <표 2-4>의 급여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표 2-4>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구분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상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sup>1)</sup>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가보훈, 위안부보호, 사할린동포보호 등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선정된 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선정된 자	애국지사, 순국·애국지사유족,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4.19 부상자 및 그 유족 등 복지지원대상자
급여내용	-7종(긴급복지지원 포함 8종)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등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훈처, 통일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주: 1) 재원조달은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령, 장애, 기타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과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돌봄과 관련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자녀 보육과 부모 부양에 대한 돌봄 욕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요보호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도입으로 재가서비스가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만 제공한데 반해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기능 등을 수행하는 적극적고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영향으로 가구 내 자녀의 수가 매우 감소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2-5〉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제 도	소 관 부 처	급 여 종 류
아동·노인·장애인	보건복지부	- 보육료지원 -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 유아교육비 지원 -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
재가복지	보건복지부	- 보육·아동사업 등 - 복지관 운영 등 지원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 개인의료서비스 - 집합보건의료비(시설·장비포함) - 자본형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고용노동부 등	- 고용안정사업, 뉴스타트 등 -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등 - 일자리 나누기 등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지원금 등 -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 청년인턴제, 사회적기업 등 - 창업점포지원, 청년벤처지원 등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법률<sup>9)</sup>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은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고궁·능 등 입장료 감면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버스 및 여객선 교통요금 감면이 해당한다.

〈표 2-6〉 일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입장료 감면

구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일반정부	교 통	고궁·능 입장료 감면	문화재청 산하 사업소	실태조사 <sup>1)</sup>
		버스, 여객선	국가보훈처	실태조사 <sup>2)</sup>

주: 1) 문화재청의 협조  
2) 국가보훈처의 협조

본 연구에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일반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추계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세입세출예·결산서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를 포함<sup>10)</sup>하였다. 한편, 정형선 외(2011)에 따르면 보건영역의 정부지출 중 개인의료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통계연보와 보건복지백서 등 보충자료를 이용하고, 집합보건의료비는 보건복지부 예·결산자료와 국민건강증진기금결산자료, 보건소 집행내역조사를 통해 추계하

9) 관련 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등임.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보건과 복지 분야의 자료수집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며, 자본형성은 정부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 자료를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하여 Top-down방식으로 지출을 추계할 수도 있다. 이 때 회계범위는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를 포함하였고, 지출의 범위로는 사회보험지출과 주거부문은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만 포함하였다. 또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9개 정책영역을 구분하였다.

#### 나. 사회보험지출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므로 정부의 일반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지출에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먼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금의 급여종류로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sup>11)</sup> 등을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급여는 연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sup>12)</sup>. 이들 연금급여의 성격은 기능구조와 연계된다. 즉 퇴직연금은 노령(Old-age) 영역에, 유족연금은 유족(Survivors) 영역에, 장해연금은 근로무능력(Incapability-related) 영역에, 재해부조금은 기타(Other policy areas)에 각각 포함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sup>13)</sup>은 기능구조상으로는 보건(Health)영역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개인의료비와 집합의료비로 구분된다. 개인의료비의 추계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사업연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집합보건의료비의 추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건강검진결

11)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장해연금’, 군인연금은 ‘상이연금’,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으로 칭함.

12) 퇴직수당의 경우 각 연금에서 급여(국민연금 제외)를 실시하고 있음.

13)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2000년 보험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됨.

과분석, 고용노동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산재의료관리원의 산재의료관리원 손익계산서를 활용하고 있다(정형선 외, 2011).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sup>14)</sup>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례비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구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사업<sup>15)</sup>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산재보험사업연보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며, 세부적인 자료의 구분을 위해 각 기관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다. 공기업의 취약계층 교통·통신요금 감면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교통·통신 등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은 공기업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TV 등 통신요금과 철도, 지하철 등 교통요금의 할인 또는 면제이다.

본 추계의 범위로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며 재원이 공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였다.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는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추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감면의 추계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철도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14)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범위가 최근 1인 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로부터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

15) 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음.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74조)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법 18조) 지급함.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근로기준법 93조)에게 1년 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40%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7〉 공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구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공기업	교통	철도요금	한국철도공사	실태조사
		지하철요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고속도로통행료	한국도로공사	
	통신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	

##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고용주의 법정급여, 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과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용주의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지원으로써 법정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휴가실시 앞의 두 달 해당), 질병휴가 기간의 법정임금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감면은 크게 교통부문과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시내·시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의 요금감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책임보험은 2011년을 기준으로 그동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 분류하던 것을 OECD와 협의하여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변경하였다.

### 가.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1953)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2005년도 자료까지는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국세연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OECD 작성지침에 따르면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자의 퇴직금만 노령급여에 포함해야 하는데, 기업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연령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은 가입사업장 수(2008년, 10%)와 가입자 수(2008년, 17%)를 근거로 전체 법정퇴직금의 약 20%만 추계에 포함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2조)는 기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sup>16)</sup>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sup>17)</sup>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를 곱하여 추계하였다. 다음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조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Maternity\ Bene\ Private = \sum W_{ij} \times 2$$

$W_{ij}$  = i 연도 직장여성 중 분만한 j 취업자의 월평균소득

그리고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급여(동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이 급여의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휴가 동안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다.

16)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됨.

17)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함.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text{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text{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외병일수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sup>1)</sup>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연간화

상수<sup>2)</sup> =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 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범위는 사업자에 따라 서비스별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범위가 다르다. 즉 교통요금은 10%~무료, 통신요금은 30%~무료, 그리고 관람요금은 50%~무료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신요금의 경우 일정한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적거나 1회 이용의 단가가 낮을수록 감액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기준은 <표 2-8> 과 같다.

〈표 2-8〉 교통·통신 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제 도		노 인	장 애 인	보 훈 대 상 자
교 통 요 금	철도요금	·KTX ·무궁화호(30%) ·통일호(50%) ·전철(무료)	·KTX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50%) ·전철(무료)	1년 6개월 무료제공 (무궁화호 이하 이용)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무 료	무 료	무 료
	국내선 항공료	10%	- 등록 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50%(1~3급)	일반유공자 30% 상이군경, 동행보호자 1인 50%(1~4급)
	고속도로 통행료	-	50%	1~5급: 면제 6급: 50% 승합, 화물차: 50%
통 신 요 금	시내·외 전화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통화료(50%) · 시외통화료(월 3만원 사용 한도에서 50%) · 114안내요금(100%) · 전화회선으로 PC통신 이용시 동일 할인을 적용	· 시내·외 통화료 50%
	이동통신 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이동전화(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및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기본요금의 20%)	· 이동 전화(기본요금의 30%)

주: '-'표는 제도 없음

취약계층 교통·입장요금 감면의 추계방법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철도청, 문화재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기초 자료가 다소 미흡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 무료금액은 내부 자료를 기초로 별도 추정하였다.

〈표 2-9〉 민간기업의 교통·통신요금 감면 등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구분	제 도	서비스대상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
민간기업	교 통	국내선항공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실태조사
		지하철	코레일공항철도(주), 서울메트로9호선(주)	
	통 신	시내·외 전화요금	KT,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실태조사 <sup>1)</sup>
		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텔레콤	실태조사 <sup>1)</sup>

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

#### 다. 시장부문의 자동차책임보험

시장부문 사회복지자원에는 개별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 이전된 보험금 총액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시장부문의 사보험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다기 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고, 가구간 재분배적 성격을 갖기 보다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비사회적인 지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dema, 2001),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금 지출과 만기도래에 의한 저축성 보험금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 내면 사회복지 자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sup>8)</sup>.

시장부문의 법정민간지출로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치료비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누구에게나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민간회사가 운영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추계는 보험개발원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과실상계 전 결정금액으로 집계한다. 다만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치료비와 보험회사가 향후의 의료비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18) OECD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망, 장애, 의료 서비스, 은퇴와 같은 지급금에서 사회적 성격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자발적인 민간부문에서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정책이 대부분 모기지에 포함되며,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유용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SOCX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Adema and Ladaique, 2009).

지불하는 ‘향후치료비’는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비용이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보상제도를 벗어나거나 민사상 조기 합의수단으로 이용되며 실제 향후 치료비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기업부문은 법정외복리비와 사회공헌활동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제3섹터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기업, 공동체,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품모집기관의 후원금 및 모금의 배분액으로 구성된다.

#### 가. 기업의 비법정복지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는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의 추계를 위해서 먼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1인당 월평균 금액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법정외복리비의 전체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사업내용에 따라 가족과 보건의료, 기타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포함되는 기업의 비법정복지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외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용구산업현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형선 외, 2011).

#### 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시설지원 등) 등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역

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확대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의 수준에 머무르는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방법 및 활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라든지, NGO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원 분야 또한 장학사업에 치중하던 초기와는 달리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메세나(Mecenat) 활동까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어 사회공헌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등 전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으로 사회공헌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이 증가추세에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에도 반영되어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 및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사회복지목적성의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건영역과 기타 영역에 포함된다.

### 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회복지시설<sup>19)</sup>은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정부 재원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주된 재원부담 주체는 정부지만 최근 민간후원금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정부 재원은 이미 정부의 일반지출에서 추계하고 있으므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만 추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과년도까지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지자체의 보고자료 등 행정자료가 잘 정비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추계하였다.

201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액은 3,349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2-10〉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현황

(단위: 백만원)

광역자치단체	수입액	사용액
계	371,687	334,927
서울특별시	120,127	108,269
부산광역시	25,680	22,167
대구광역시	20,514	18,617
인천광역시	13,295	12,559
광주광역시	13,996	12,929
대전광역시	9,168	8,370
울산광역시	9,215	8,379
경기도	45,565	38,420
강원도	12,610	11,919
충청북도	8,611	7,853
충청남도	8,617	8,165
전라북도	20,938	19,969
전라남도	21,830	20,240
경상북도	14,236	12,731
경상남도	18,892	16,598
제주도	8,393	7,74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과 종교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IMF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 속에서 심화된 소득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경제적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저출산및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서 유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경영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사회복지재단과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다양한 재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의 일반지출로 분류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의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조달되는 경우는 자발적민간부문으로 추계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추계는 해마다 발간되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 마. 공동체부문(공제회)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지원은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공제회는 특정한 직역집단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직역집단이므로 직업복지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기업복지와 구별되고, 또 개별적 시장계약의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장과 유사하나 가입자의 범위가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따라서 공제회는 그 성격상 기업부문이나 시장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일정부문 이윤을 추구하여 가입자에게 배당한다는 면에서 제3섹터나 비영리부문의 특성과도 상이하다. 결국 공제회의 급여는 공동체 영역을 제공주체로 보아야 한다(고경환 외, 2011: 131).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공제회의 급여가 재분배적 성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시장계약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다양한 직역집단 공제회마다, 또 하나의 공제회 내에서의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계에 포함하는 공제회의 급여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공제회 불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급여수령시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자발적 민간급여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추계에 포함되는 공제회의 급여 내용은 〈표 2-11〉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11〉 공제회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성 격	공 제 회	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 내용
상호부조 (8)	군인공제회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경찰공제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POBA 행정공제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 사회복지직 종사자에 대한 상호부조, 후생복지관련 급여
	교정공제회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대한의사공제조합	상호공제사업과 의료배상공제사업 관련 급여
정책성 (4)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에 대한 상호부조, 복지증진, 노후생활안정 급여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사망(유족), 상해/재해/노령퇴직급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및 예방

주: 1) 공제회 성격 중 유사보험(새마을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 등)과 보증·손해공제(의료배상공제, 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제외함.

2) 의협 공제회가 대한의사공제조합으로 변경 됨(2013. 3).

3) 지난 1981년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협 공제회는 2011년 4월 의료법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고, 상호공제사업과 의료 배상공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자료: 매일경제(2013.6.20); 각 공제회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조사결과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설립성격별, 정책영역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2〉 응답공제회의 설립성격별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성 격	공 제 회	계
계		175,864
상호부조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POBA 행정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6)	154,058
정책성	노란우산공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3)	21,806

〈표 2-13〉 응답공제회의 정책영역별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영역	공제회	계	SOCX분류
계		175,864	
노령퇴직급여	대한소방공제회, POBA 행정공제회	147,938	노령
유족급여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 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4,818	유족
상해, 상병급여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교정공제회, POBA 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1,452	근로무능력
결혼·출산보조금, 보육시설내 사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5,079	가족
주택재해부조금, 종사자후생복지, 재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16,577	기타

#### 바. 모금기관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

자발적 민간모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책 영역별 지출금액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모금기관과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의 모금기관과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모금기관과 기부금 단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 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등록기관이다. 각 민간모금단체(기관)의 개념과 관련법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민간모금단체(기관) 유형별 정의와 관리주체

기관유형	개 념	근 거 법	관리주체	기관 예시
전문/법정/특례 지정기부금단체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sup>20)</sup>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어린이난치병협회,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등
기부금품 모집기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하는 기관	기부금품모집법	행정안전부	월드비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어린이재단, 전국재해구조협회, 한국여성재단 등

자료: 행정안전부(2012. 1),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조사대상 기관(모집단) 768개소의 모금기관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가 597개(77.7%)로 가장 많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119개(15.5%)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기관이 52개(6.8%) 순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모집등록단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표 2-15〉 민간모금단체 유형별 기관수(2011년말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 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기부금품모집기관
계	768 <sup>21)</sup>	597	119	52
비율	100.0	77.7	15.5	6.8

주: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전국민간모금기관이 2,387개소였으나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기부금단체 1,188개소, 미등록 기관 314개소, 중복등록 55개소, 실제 모금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 47개소, 폐쇄 9개소, 2011년말 신규등록기관 6개소가 조사에서 제외됨.

자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1.

20)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2) 조사내용

민간모금기관(단체)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표는 크게 일반사항과 수입조사, 그리고 지출조사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사항(I. 일반사항)에서는 민간모금기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기관명과 설립일자, 모집등록기간, 기부금모집 내용, 종사자수, 전담부서와 인력 수, 후원자관리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민간모금기관(단체) 세입조사(II. 세입조사표)는 크게 정부지원금과 법인전입금, 모금 및 후원금 내역, 잡수익 그리고 이월금 등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재원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금은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인전입금은 법인지원금, (기독교)예당의 지원금과 (천주교 등)교구의 지원금, (불교 등)종단본부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다. 모금 및 후원금은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후원금으로 구성된다. 잡수익은 불용품의 매각대나 예금이자 수입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모금기관(단체)의 지출(지출조사표, III)은 시설 운영비와 복지프로그램 사업비, 타기관 후원, 적립금, 그리고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시설운영비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기타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사업비는 노인, 유족, 장애, 보건의료, 가족, 주거,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지출되는 금액이다.

## (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우편으로 조사표를 배포하였으며, 사전 훈련된 전화조사원에 의해 3차로 조사되었다. 먼저 1차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전화조사원이 각 민간모금기관(단체)에 조사표 도착확인 및 조사표 작성독려와 회송요청을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는 조사표가 각 기관(단체)에 도착한 이후 작성시작부터 실시하였으며 조사표 작성독려와 작성의 질의와 응답, 그리고 회송요청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조사는 조사표 미회송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과 회송요청을

실시하였다. 응답조사표의 회송은 대부분 전자메일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팩스와 우편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되었다.

(4)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이 572개소(응답률은 74.5%)로 나타났다. 무응답기관은 196개로 나타났다.

〈표 2-16〉 민간모금단체(기관) 응답 및 회수율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유 형		
		전문/법정/특례모금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기관
조사기관(A)	768	597	119	52
응답기관(B)	572 <sup>*)</sup>	450	85	37
조사표회수 (B/A*100)	74.5	75.4	71.4	71.2

주: 완료조사 306개, 부분완료조사 72개, 필수항목만 조사 194개

(5) 추계방법

민간모금기관(단체)의 배분금액에 대한 합계치는 조사완료 된 모금단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조사 완료기관의 모금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를 선행연구 고찰과 본 조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후 회귀대체를 통해 조사미완 및 거부기관의 값들을 산출한다. 이때 회귀방정식의 도출에는 조사 완료기관의 모금액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모금규모가 특별하게 큰 1개 기관은 모형의 안정을 위해 제외하였다.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beta_0 + \beta_1 X_1 + \dots + \beta_r X_r + e$$

$Y$  : 모금 및 후원 금액(천원)

$X_i$  :  $r$ 개의 설명변수

$\beta_i$  : 회귀계수

$e$  : 오차항

여기서 오차항  $e$ 는 Durbin-Watson  $D=2.262$ , Kolmogorov-Smirnov  $D = 0.039$ ( $P$ -value=0.1500)로 독립성을 만족하고 정규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ln \hat{Y} = 11.77 + 0.25 \times \ln X_1 + 1.11 \times \ln X_2$$

$\hat{Y}$  = 모금 및 후원 추정금액(천원)

$X_1$  = 종사자 수

$X_2$  = 모금 전담인력 수

$$R^2 = 0.517$$

#### (6) 분석결과

응답기관과 부분응답 기관의 회귀대체, 무응답기관의 비례대체, 그리고 모금액이 유난히 큰 1개 기관을 반영한 민간모금액의 합계는 3조 2,2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활용을 보면(표 2-17 참조) 사업비와 기관후원으로 지출된 비중이 75.08%로 나타나고 있어 2조 4,225억원이 배분된 것으로 추계된다.

〈표 2-17〉 민간모금기관의 모금재원 배분 구성 비중

(단위: %)

전체	운영비	사업비	기관후원	적립금	이월금	예비비	기타
100.00	12.04	70.67	4.41	0.24	10.52	0.52	1.60

민간모금액이 배분되는 전체 7개 영역 중(표 2-18 참조) ‘비해당’을 제외한 6개 영역별 구성비중으로 배분하면 〈표 2-19〉와 같이 2조 1,943억원으로 분석된다.

〈표 2-18〉 민간모금기관의 배분재원 구성 비중

(단위: %)

전체	노인	유족	장애	가족 <sup>1)</sup>	주거	기타	비해당 <sup>2)</sup>
100.0	29.9	0.02	2.0	4.5	0.4	53.8	9.4

주: 1) 청소년·아동·한부모 포함

2) 비해당은 보건 1.2%, 해외 7.05%, 북한 0.29%, 제외 0.86%로 구성. 이중 보건은 OECD Health Database의 수치를 원용함에 따라 비해당으로 분류하였음.

〈표 2-19〉 민간모금단체(기관)의 복지영역 후원금 규모추계

(단위: 백만원)

	계	노인	유족	장애	가족	주거	기타
금액	2,194,327	723,367	485	48,451	109,014	9,690	1,303,320

주: 참고로 민간모금단체(기관) 후원금 중 보건의료 29,070백만원, 해외 77,378백만원, 북한 3,284백만원임.

#### 4. 조세지출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다소 체계화된 반면에 조세혜택은 관세감면, 자동차세 면세, 재산세 등 감면, 근로소득 공제,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표 2-20〉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분류	종류	대상	자료원
조세 부담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sup>1)</sup> /기업) 질병휴가급여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청, 고용노동부
	2. 간접세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통계청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법정민간급여수급자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조세 혜택	1. 관세 감면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관세청
	2.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용 자동차	국세청
		· 구입단계 · 등록 및 보유단계	행정안전부
	3. 재산세 등 감면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4. 근로소득 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국세청 기획재정부
	5. 법인세 감면	사회복지 관련 기부 기업	국세청 기획재정부
6. 근로장려세제 <sup>2)</sup> (EITC)	저소득층	국세청	

주: 1) 2007년도까지는 과세, 2008년부터 비과세

2) 제도 분류는 여기서 하지만 통계는 공공복지지출에 포함

## 가. 조세부담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아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직접세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에 부과된 직접세액 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선택으로 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항목별세율’(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구별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한다. 이 때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sup>21)</sup>’

21) OECD Taxing Wage(2008-2009)에서는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제시하고 있음. 4가지 가구유형은

은 ‘결정세액’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begin{aligned} \text{이전소득에 대한 직접세액} &= \text{이전소득금액} \times \text{실효세율}^* \\ * \text{실효세율} &= \frac{\text{결정세액}}{\text{근로자 연간소득(공제전)}} \end{aligned}$$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일부 연금 소득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며,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노령연금은 연금소득,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표 2-21〉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범위

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 연금 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지역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
사적 연금 소득	퇴직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개인연금 <sup>주)</sup>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 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4.12.31 이전: 퇴직소득 과세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 축분 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

주: 개인연금저축 등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민간부문의 지출이지만 재분배의 성격(혹은 가입의 강제성)이 미비하여 자발적인간 사회복지지출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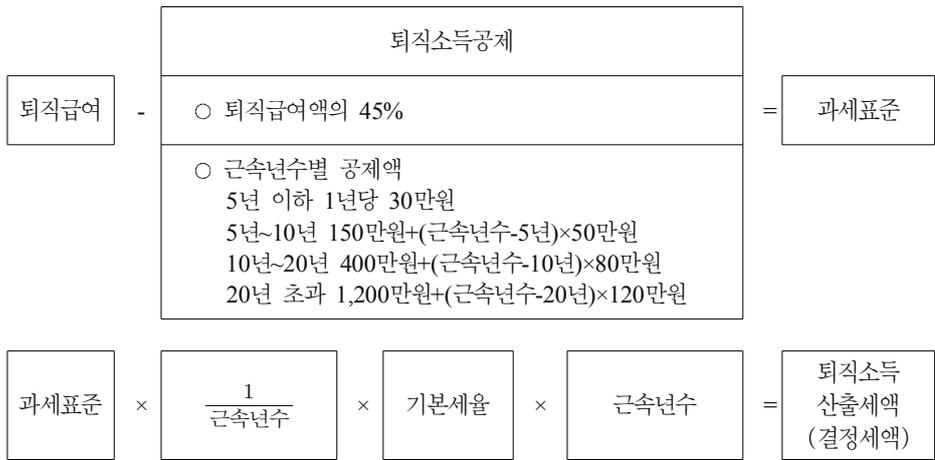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1.

한편 법정퇴직금과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는 2008년부터 비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미혼가구, 홑벌이무자녀, 홑벌이두 자녀, 맞벌이두 자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구형태별 자료가 없 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함.

- 법정퇴직금 과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09년 기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근속연수로 곱한 세액으로 과세
- 산전후휴가급여 및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 근로소득을 구성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2010년 기준)의 세율 적용

[그림 2-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 2) 간접세(Indirect tax)

간접세를 추계하는 방법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와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가 있다. 먼저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가구(농가 및 어가가구는 제외), 1인가구의 지출 항목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어 간접세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소득자<sup>22)</sup>의 사례수는 비교적 높지만 (전체조사가구의 47.6%, 2010) 간접세율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소비품목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실

22) 이전소득자는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사회적현물이전·세금환급금의 수급자를 포함.

제로 미시자료의 수집 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조세자료와 국민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간접세율을 추계<sup>23)</sup>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세율이 추계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 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권하고 있다.

평균간접세율 산출을 위해서 본 연구는 일반소비세와 특정소비세를 활용하였다. 먼저 ‘일반소비세’(5110)에는 부가가치세, ‘특정소비세’(5121)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이들에 대한 부가세(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여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Minim 10.55%(2011), Medium 13.22%, 그리고 Maxim 15.34%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소비범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Minim 방식을 선택하였다.

$$\begin{aligned} \text{Minim} &= (\text{일반소비세} + \text{국내소비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ediu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axi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최종소비지출} \end{aligned}$$

본 연구에서 실제로 추계하고자 하는 간접세액의 세원은 <표 2-22>와 같이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원은 정부부문(서비스부문 비포함<sup>24)</sup>)의 현금급여, 사회보험 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 현금급여, 자발적민간부문의 현금급여 그리고 조세감면이다. 이 때 간접세액을 추계함에 있어 현금급여는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하였다.

23)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OECD 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기초로 목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24)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의료보 건용역은 면세하고 있음.

〈표 2-22〉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부 문	추 계 범 위
정부부문	·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생계보호, 국가보훈의 보상금 등): 포함 · 공공부조의 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보호): 제외 · 국가공급의 사회복지서비스: 제외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액: 제외
사회보험	· 현금급여(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포함 · 현물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제외
법정민간부문	·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포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액: 제외
자발적민간부문	· 현금급여(기업의 고용연계급여 등): 포함 · 현물급여(종교 및 자선단체의 이전지출(현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민간의료비 등): 제외
조세지출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구입단계),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포함

사회보험료는 연금수령금액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의 산전후휴가급여와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먼저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은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의 반영으로 과대추계되어 본 연구에서 이 보험료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이를 포함한 경우 과대추계가 제외하였을 때 과소추계보다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전소득자인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급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를 부담한다. 이의 추계는 근로자부담의 3대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평균), 고용보험료율)의 합을 반영하였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2-2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요율(2011)

종 류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2.82%	2.82%	5.64%
고용 보험	실업급여	0.55%	0.55%	1.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	0.25~0.85% (종업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0.25~0.85%
산재보험		-	평균 1.77% - 최고35%(석탄광업) - 최저0.6%(전문기술서비스업 등)	0.6~35%

## 나. 조세감면

정부는 국가재정 확보의 목적 이외에 경제발전 촉진 및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특정한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 유인(incentive)을 주는 데, 이를 조세지출<sup>25)</sup>이라고 부른다. 국가재정법 제27조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를 뜻하며, 조세지출 지원 수단으로는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저율과세·준비금”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

요약하면,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할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지출은 복지지출로 간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사회복지성격을 갖는

25) OECD는 1996년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의 개념을 통해 조세지출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기준조세체계란 “조세체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의되며, 조세체계의 구조적인 요소인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 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됨. 이러한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항목들을 조세지출이라고 정의함.

조세지출을 OECD에서는 조세혜택(TBSPs)으로 명시하고 있다. OECD는 조세지출의 방식을 특정 소득이나 특정 납세자에 대한 감세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TBSPs)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사회복지지출에 계산되는 조세지출은 후자만 포함한다.<sup>26)</sup>

조세혜택(TBSP)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세부분의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매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그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세부분의 지방세감면은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매년 지방세정연감에 그 감면액을 발표하고 있다.

〈표 2-24〉 우리나라 조세혜택 구조

부 분	관련 개념	근거 법령	제출자료	담당부처
국 세	조세지출 <sup>27)</sup>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소득세법 등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국세청
지방세	지방세 특례 <sup>28)</sup>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자치단체 조례 등	지방세정연감 지방세지출예산서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 1) 국세 부분

국세 부분은 정부에서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간하여 항목별로 조세지출 내역을 발표하고 있는데 총 15개 분야로 나누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내역을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2).<sup>29)</sup>

정부의 조세지출은 그 유형을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

26) OECD, 앞의 자료, p.34

27) 「국가재정법」 제27조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29) 「교육비 특별공제」는 가족복지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분야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고경환 외, 2011: 77)

감면의 종류는 비과세(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저율과세(일반 세율 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감면(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세액공제(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등이 해당한다(대한민국 정부, 2012:3). 간접감면의 종류는 준비금(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연기), 과세이연(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 연기), 이월과세(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 등이다(대한민국 정부, 2012:3).

이 중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세부항목별로 정책목표를 수반한다. 각 제도별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지원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은 보육지원 강화, 가족기능 강화,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을, 노인·청소년은 노인생활안정을, 노동은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증진,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산업재해 예방을, 주택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사회복지일반은 사회복지기반조성,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수반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공공보건 의료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식품의약품안전은 의약품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조세지출 항목별 주요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사회복지분야

##### ○ 취약계층지원: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골도전화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2호)
-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 소득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4호)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
  - 해당연도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5호)
  -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2)
  -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소득공제, 본인/장애인은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영유아·취학전·초중고)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
  - 가족 중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 고용 :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임금삭감 방식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사회적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취득가액의 7%, 10%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

- 우 청년 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근로장려금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10)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
- 주택 :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 사회복지일반 : 저율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준비금 등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1항)
  - 개인연금저축가입 20세 이상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영농·영어 조합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 법인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범위 내 손금산입,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내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법인세법 제24조)
  - 개인기부금 중 법정기부금(100%) 지정기부금(소득금액 30%내)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6항)

- 장애인, 환자수송(병원),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10년 이상시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sup>30)</sup>(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수도권외 신축주택 취득자,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sup>31)</sup>

□ 보건 분야

- 보건의료 : 준비금, 세액면제, 소득공제
  -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4항)
  - 희귀병환자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 보장성보험, 공제회 공제에 대한 연 100만원 한도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
  -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연 700만원 한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2항)
- 건강보험 : 저율과세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머)
- 식품의약품안전 :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금액(중고품 투자 제외)의 7%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30)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년,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001년 일몰종료 됐으나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음.

31) 2003년 일몰종료 됐으나 현재까지 큰 규모(2010년 기준 453억)로 운용 중에 있음.

〈표 2-25〉 보건복지분야 조세지출 내역과 감면유형

분야	항목	조세지출 내역	감면유형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저율과세
		장애인 추가공제	세액공제
	보육·가족 및 여성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비과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세액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세액공제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공제	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세액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세액공제
	노인·청소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세액공제
	노동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세액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세액감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현금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로 인한 급여 비과세	비과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세액공제
		주택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사회복지 일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저율과세
		영농·영어 조합법인 배당소득 저율과세	저율과세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준비금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세액공제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비과세
		장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sup>32)</sup>	세액감면
보건	보건의료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준비금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비과세
		보험료 특별공제	세액공제
		의료비 특별공제	세액공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
	식품의약 안전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2), 조세지출예산서, pp.38-56.

## 2) 지방세 부분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정연감에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발표된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참고하였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정의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조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세제혜택(TBSP)과 부합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비과세, 과세면제 및 특례규정이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거나 특정지역 개발, 특정 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비과세 감면은 대상으로 감면액이 다음과 같음.<sup>33)</sup>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단체, 관리협회,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고경환 2011:77),
- 근거법에 의거하여 지방세정연감에 제시된 대상 중 사회복지 관련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sup>34)</sup> 등이 부합됨.

□ 지방조례를 통한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권한을 위임받아 조례에 의해 과세를 면제

- 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

32) 일몰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중이고 비교적 감면액이 커서 포함하였음.

33) 종교 및 제사단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정당,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 등임.

34) 해당 항목에 대한 근거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서민생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임.

차,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등이며(고경환, 2011:77),

- 지방세정연감에 제시된 대상 중 사회복지 관련 항목으로 부합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sup>35)</sup>, ‘장애인소유 자동차’<sup>36)</sup>, ‘한센정착농원지원’<sup>37)</sup>, ‘종교단체의료업’<sup>38)</sup>, ‘지방의료원’<sup>39)</sup>, ‘노인복지시설’<sup>40)</sup>,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sup>41)</sup> 등임.

이에 대한 추계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보고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의 통계연보와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조세지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직접세와 간접세의 추정방식을 변경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직접세는 사업소득세와 경상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는 OECD 지침서에서 제시된 간접세의 개념과 해당 세목을 통해 이전소득자의 간접세를 추정해보았다(표 2-26 참조). 즉 소득 종류별 소득 분류에서 이전소득자만을 분류하여 이들 가구의 항목별 지출액 자료로 가구단위로 지불하는 간접세액과 세부담율을 계산하였다. 간접세 추정에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OECD 지침서에서 제시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전소득자의 간접세액에 해당하는 세목을 살펴본 결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등이 포함되었다.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3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3조·제36조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표 2-26〉 OECD 지침서에 의한 간접세 개념과 해당 세목

OECD 기준(OECD Classification)			
5000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5100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이전에 대한 조세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5110 일반소비세 (General Taxes)	5111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es)
			5112 판매세(Sales Taxes)
			5113 기타 일반소비세 (Other)
		5120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조세(Taxes 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5121 특정소비세 (Excises)
			5122 전매수익 (Profits of Fiscal Monopolies)
			5123 관세 (Customs and Import Duties)
			5124 수출세(Taxes on Exports)
			5125 투자재화에 대한 조세 (Taxes on Investment Goods)
			5126 특정용역에 대한 조세 (Taxes on Specific Services)
			5127 국제거래에 대한 기타 조세 (Other Taxe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5128 기타(Other Taxes)			
5130 5110과 5120에 속하지 않은 것 (Unallocable as between 5110 and 5120)			
5200 재화의 사용에 대한 조세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5210 정기적인 조세 (Recurrent Taxes)	5211 자동차면허세 가계부담 (Paid by Households: Motor Vehicles)	
		5212 자동차면허세 기타부담 (Paid by Others: Motor Vehicles)	
	5213 기타 정기적 조세 (Paid in respect of Other Goods)		
5220 비정기적인 조세 (Non-recurrent Taxes)			
5300 5100과 5200에 속하지 않은 것 (Unallocable as between 5100 and 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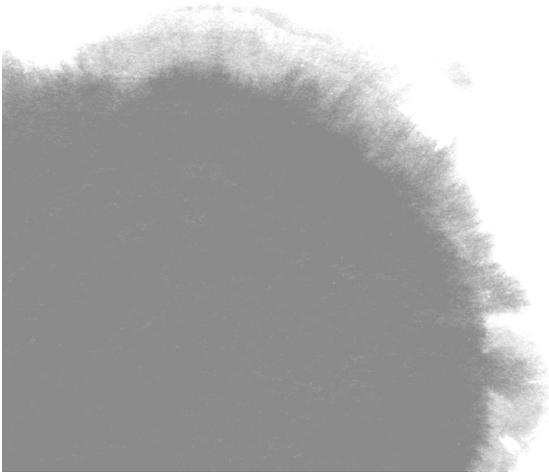
자료: OECD(2010), Revenue Statistics 1965-2009.



# 3장

K I H A S A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 제3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sup>42)</sup>

### 제1 절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일반 지출(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포함)과 사회보험지출, 공기업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의 일반지출은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부문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을 통해 2011년 기준 41.5조원 지출되었다. 공공부조 및 사회보상부문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와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보상금, 지방정부의 교육부 매칭사업비, 그리고 보건복지부 매칭사업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은 고용노동부 등의 ALMP 사업,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매칭비, 보육료 지원 사업, 국토해양부 공공임대주택건설비, 보건부문의 집합보건의료와 지방정부 매칭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의 교육부 매칭사업비(장애아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유아교육비 지원 등)는 전년(2.4조원)대비 3.5조원으로 47.8%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복권위원회(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비 등) 역시 전년도 10억원에서 무려 14배가량 증가(14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에서 소관하는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부문에서 전년(90억원)대비 4배가량 증가(360억원)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4,340억원)대비 7.5% 감소(4,02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 본 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하는 전년대비 증가율의 상세 내용은 <부표 4>, <부표 6>, <부표 8>, <부표 10>, <부표 13>, <부표 16> 참조

〈표 3-1〉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2011년)

(단위: 십억원)

제도	소관부처(재원)	항 목	2011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sup>*)</sup> ,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지원, 이차보전금 등	6,559	
	보건복지부 등	의료급여 등	4,644	
	교육과학기술부	병원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학비지원, 다문화가정지원 등	6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등	1	
	소방방재청	이재민구호, 주택피해복구비 등	129	
	통일부	새터민정착금, 새터민교육훈련 등	86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운영유족, 애국사 및 그 유족, 상이군경 이차보전금 등	2,539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402	
	복권위원회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비 등	14	
	지방정부	자체사업(기초생활보장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급여지원,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훈자체사업 등)	536	
	중앙정부 매칭사업(생계급여, 주거급여 <sup>*)</sup> , 해산 장제급여, 지활 등)	2,001		
	교육부 매칭사업비(장애아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유아교육비지원 등)	3,510		
	중앙정부 매칭사업(의료급여 등)	1,045		
사회 복지 서비스	노령 및 근로 무능력	보건복지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513
		복권위원회	장사시설현대화, 장애인재활시설확충	39
		국가보훈처	수송시설이용요금 감면	7
		문화재청	궁·릉 입장료 감면	3
		지방정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자체사업	585
		복지부관련 지방비(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337	
	가족	보건복지부	보육료지원, 아동보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62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비지원	1,261
		농림수산부	영유아양육	31
		여성가족부	아동보호,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육성지원	261
		복권위원회	저소득가정지원	78
		지방정부	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자체사업	746
		복지부관련 지방비(아동보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623	
	주택보급	국토해양부	공공임대주택건설비	2,328
		지방정부	공공임대주택지원 자체사업	90
	보건	보건복지부	자본형성	1,132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집합보건의료	2,255
		지방비	복지부 등 관련 지방비(집합보건의료)	1,592
	ALMP	고용노동부 등	ALMP(고용안정, 직업능력 제외)	3,423
	기타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	6
		지방정부	기타 복지서비스 자체사업	19
		복권위원회	소외계층지원	19
		농림수산부	취약농가인적지원	7
문화관광부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36	
지식경제부	저소득 연탄보조	15		
계			41,503	

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타 사회복지정책영역(socx no. 9)'에 포함

다음으로 사회보험지출의 공적연금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공적연금 지출규모는 22.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9조원)대비 9.3% 증가한 수치이다. 연금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공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연금(43.0%), 공무원연금(39.3%), 군인연금(10.1%), 사학연금(7.5%) 그리고 별정우체국연금(0.1%)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노령부문 89.8%, 유족 8.5%, 장애 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공적연금 지출규모(2011)

(단위: 십억원, %)

연금구분	자료원	노령	유족	장애	기타	계	구성비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8,380	1,092	347	-	9,819	43.0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8,293	646	42	0	8,980	39.3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1,604	109	2	0	1,714	7.5
군인연금	국방부	2,210	84	20	0	2,314	10.1
별정 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6	2	-	0	27	0.1
계		20,512	1,932	411	0	22,855	100.0
구성비		89.8	8.5	1.8	0.0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1;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2011;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11;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2011; 별정우체국관리단, 내부자료, 2011.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는 〈표 3-3〉과 같다. 먼저 2011년 기준 고용보험은 5.3조원으로 전년(5.4조원)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등에서 다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등 급여비가 67.7%,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22.6%, 육아휴직급여 5.2%, 산전후휴가급여 4.4%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1년 기준 산재보험은 3.7조원으로 전년(3.5조원)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보험구분	관련부처	프로그램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고용보험 <sup>1)</sup>	고용 노동부	구직급여, 상병급여, 재취업, 기타(미지급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3,687	3,561	67.7	-3.4
		산전후휴가급여	193	233	4.4	20.7
		육아휴직급여	178	276	5.2	55.1
		고용안정, 직업능력 <sup>2)</sup>	1,307	1,191	22.6	-8.9
		고용보험 계	5,364	5,262	100.0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약국자료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재활급여	3,549	3,650		2.8

주: 1) 대부사업과 유사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은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 실적(고용보험기금)의 합계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11;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11.

2011년 기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각각 36.9조원, 2.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6.3%, 9.4%씩 증가한 것이다.

〈표 3-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보험구분	관련부처	프로그램	2010	2011	'10-'11 증감율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입원, 외래, 의약품, 건강검진 등	34,785	36,993	6.3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전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1,830	2,002	9.4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년도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2011년 기준 공공부문의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을 통한 지출은 6천3백억원으로, 전년(6,065억원)대비 3.7% 증가하였다. 이를 항목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지하철 요금감면 지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56.7%), 다음으로 철도(32.7%), 고속도로통행료(7.0%) 그리고 TV 수신료(3.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철도, 지하철, TV 수신료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속도로통행료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규모

(단위: 백만원, %)

제도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교통	철도('91.1)	203,200	205,892	32.7	1.3
	지하철('91.1)	335,936	356,375	56.7	6.1
	고속도로통행료('97.8)	45,170	44,303	7.0	-1.9
통신	TV 수신료('97.1)	22,170	22,380	3.6	0.9
계		606,476	628,950	100.0	3.7

주: ( )안은 최초 도입된 년도임.

이상의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면 112.9조원으로 전년(107.2조원)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62.7%), 정부일반지출(36.8%), 공공기관의 요금감면(0.6%) 순으로 나타나 사회보험을 통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	공공 사회복지지출(A) (A=a+b+c)	정부일반지출(a)			사회보험(b)	공기업(c) (교통·통신비 등 요금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2010	107,202	40,156	28,391	11,765	66,440	606
2011	112,894	41,503	28,419	13,084	70,762	629
	구성비	(36.8)	(25.2)	(11.6)	(62.7)	(0.6)
	'10-'11 증감율	3.4	0.1	11.2	6.5	3.7

참고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Top-down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앞서 추계한 Bottom-up 방식의 결과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개별 중앙정부별 세부 사업들이 누락된데 그 원인이 있다. 누락사업으로는 농수산부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통일부의 새터민정착지원금, 소방방재청의 주택피해 복구 등 재해구호, 문화관광부의 문화체육 바우처,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이다. 본 추계는 거시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

원이 제도별, 정책영역별 어떻게 구성되는지 세부 통계도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의 축적이 중요하다.

2011년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9.14%로 전년(9.14%)대비 0.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보건영역(44.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노령영역(23.0%), 가족영역(10.2%), 기타영역(6.6%) 순이다.

기능별 지출 구성비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살펴보면, 가족영역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족영역(9.6%), 노령영역(6.5%), 보건영역(4.5%)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다.

〈표 3-7〉 공공사회복지지출<sup>1)</sup>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24,381	22.7	25,965	23.0	6.5
2. 유족	3,035	2.8	3,326	2.9	9.6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5,692	5.3	6,014	5.3	5.7
4. 보건 <sup>2)</sup>	48,294	45.0	50,448	44.7	4.5
5. 가족	9,217	8.6	11,569	10.2	25.5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032	4.7	4,615	4.1	-8.3
7. 실업	3,687	3.4	3,561	3.2	-3.4
8. 주거	-	-	-	-	-
9. 기타	7,864	7.3	7,397	6.6	-5.9
계	107,202	100.0	112,894	100.0	5.3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비율	9.14		9.14		0.03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사회보험급여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문의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2011년 일반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41.5조원이었으며 이 중 중앙정부는 28.4조원(68.5%), 지방정부는 13.1조원(31.5%)을 지출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가족(26.6%)과 보건(25.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기타(17.8%), 노령(12.2%), ALMP(8.2%), 근로무능력관련급여(6.1%) 그리고 유족(3.4%) 순으로 나타난다.

〈표 3-8〉 일반정부지출의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계		일반정부	
		구성비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령	5,056	12.2	3,433	1,623
유족	1,394	3.4	1,394	-
근로무능력관련급여	2,521	6.1	2,032	489
보건	10,667	25.7	8,030	2,637
가족	11,060	26.6	4,266	6,794
ALMP	3,423	8.2	3,423	-
실업	-	0.0	-	-
기타	7,382	17.8	5,841	1,541
계	41,503	100.0	28,419	13,084
구성비	100.0		68.5	31.5

다음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기준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지출은 70.8조원, 공기업지출은 0.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6.5%(66.4조원), 3.7%(0.6조원) 증가한 것이다.

사회보험 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52.3%), 공적연금(32.3%), 고용보험(7.4%), 산재보험(5.2%) 그리고 장기요양보험(2.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사회보험은 보건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의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은 주로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능영역 역시 노령과 근로무능력관련급여, 기타에 집중되고 있다.

〈표 3-9〉 사회보험과 공기업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	정책영역	계	사회보험						공기업 (교통 통신 등 감면)
			공적 연금	건강 보험	장기요양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2010		67,046	66,440	20,911	34,785	1,830	5,364	3,549	606
	노령	20,909	20,512	20,512	-	-	-	-	396
	유족	1,932	1,932	1,932	-	-	-	-	-
	근로무능력급여	3,493	3,274	411	-	-	-	2,864	219
	보건	39,781	39,781	-	36,993	2,002	-	786	-
	가족	509	509	-	-	-	509	-	-
2011	ALMP	1,191	1,191	-	-	-	1,191	-	-
	실업	3,561	3,561	-	-	-	3,561	-	-
	기타	14	0	0	-	-	-	-	14
	계	71,391	70,762	22,855	36,993	2,002	5,262	3,650	629
	구성비		100.0	32.3	52.3	2.8	7.4	5.2	
	'10-'11 증감율	6.5	6.5	9.3	6.3	9.4	-1.9	2.8	3.7

201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능과 제도를 연계하여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 총 112.9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순서는 사회보험(62.7%)과 사회복지서비스(18.3%), 공공부조(16.4%), 사회보상(2.6%)으로 나타나 사회보험을 통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능구조별 구분에서는 보건영역이 50.4조원(44.7%)으로 가장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노령영역 26.0조원(23.0%), 가족영역 11.6조원(10.2%), 기타영역 7.4조원(6.6%) 순으로 나타나 보건영역과 노령영역의 사회보험 기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제도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구성비	계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노령	23.0	25,965	3,804	0	1,648	20,512
유족	2.9	3,326	-	1,394	-	1,932
근로무능력관련급여	5.3	6,014	513	1,124	1,103	3,274
보건	44.7	50,448	5,690	-	4,978	39,781
가족	10.2	11,569	3,431	3	7,625	509
ALMP	4.1	4,615	-	-	3,423	1,191
실업	3.2	3,561	-	-	-	3,561
기타	6.6	7,397	5,066	449	1,881	0
계	100.0	112,894	18,504	2,970	20,658	70,762
구성비		100.0	16.4	2.6	18.3	62.7

##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되나 법에 근거한 의무지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자동차책임보험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비 요금 감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법정퇴직금의 추계결과 2010년 4.9조원, 2011년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은 전체 지출액(2010년 24.6조원, 2011년 26.7조원) 중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20%)의 금액만을 추계에 포함하였다.

〈표 3-11〉 법정퇴직금 지출규모

(단위: 십억원, %)

제도구분	연도	금액	법정퇴직자가 수령하는 금액 <sup>1)</sup>
법정퇴직금	2010	24,623	4,925
	2011	26,720	5,344
	증감율	8.5	8.5

주: 1) SOCX에 포함되는 법정퇴직금은 정년퇴직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전체 금액의 약 20%로 추계됨.  
자료: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추계결과 2010년 3.5조원, 2011년 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6.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퇴직보험과 신탁의 효력 만료와 퇴직금제도의 세계혜택 축소에 따른 것이다.

〈표 3-12〉 퇴직연금 지출규모

(단위: 개소, 명, 십억원, %)

연도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수	퇴직연금 가입자 수	금액
2010	94,455	2,393,934	3,549
2011	1,507,158	3,283,608	6,263
증감율	1,495.6	37.2	76.5

주: 퇴직연금 지출규모는 연도별 적립금 누계에서 전년도 적립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계됨.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퇴직연금통계, 각년도.

자동차책임보험금의 추계결과 2010년 1.2조원, 2011년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책임보험금의 전년 대비 증감율은 0.9%로 감소하고 있다(정형선 외, 2011).

다음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지만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산전후휴가 급여는 6,032억원으로 전년(5,628억원)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산전후휴가급여 지출규모

(단위: 명, 십억원, %)

연도	수급자수	금액
2010	130,340	563
2011	136,701	603
'10-'11 증감율	4.9	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서 재가공

유급질병휴가급여의 추계결과 2010년 0.7조원에서 2011년 0.9조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외병일 수의 변동은 작은 반면 전산업의 월평균정액급여와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유급질병휴가급여 지출규모

연도	유급질병휴가급여 (십억원)	연평균 외병일수 (일)	전산업 월평균 정액급여(원)	상용근로자수 (천명)
2010	714	2.6	1,918,249	7,374
2011	927	2.9	2,017,099	7,675
'10-'11 증감율(%)	29.9	11.5	5.2	4.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보건부문)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민간부문의 교통·통신비 감면에 대한 추계결과 2011년 기준 0.6조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부문의 지하철과 공항철도에서 금액의 규모는 작지만 전년대비 40.9%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항철도의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 개통(2010.12.29)과 도시철도 9호선의 증편운행(2011.10)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항공요금은 3.9%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신부문도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표 3-15〉 민간부문의 교통·통신 감면 규모

(단위: 십억원, %)

제도구분		2010	2011	'10-'11 증가율
교통	국내항공요금('91.8)	15	14	-3.9
	지하철('09.7), 공항철도('07.3)	9	13	40.9
통신	전화('89.7), 이동통신('96.6)	564	564	-0.1
계		588	591	0.5

주: ( ) 는 최초 제도가 도입된 시기임.

이상과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결과 2011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4.9조원으로 전년(11.5조원)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능별·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3-16〉 과 같다.

먼저 제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퇴직연금(6.3조원)과 법정퇴직금(5.3조원), 자동차책임보험금(1.2조원), 유급질병휴가급여(0.9조원), 산전후휴가급여(0.6조원), 교통통신요금 감면(0.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능별로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교통통신요금감면으로 구성된 노령부문이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급질병휴가급여와 교통통신감면으로 구성된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8.8%, 자동차책임보험금으로 구성된 보건부문이 8.2%로 나타났고, 산전후휴가급여로 구성된 가족부문이 4.0%, 저소득층 교통통신요금 감면으로 구성된 기타 정책영역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2010-2011년)

(단위: 십억원, %)

연도	정책영역구분	구성비	계	법정퇴직금 <sup>1)</sup>	퇴직연금	자동차 책임보험금	산전후 휴가급여	유급질병 휴가급여 <sup>2)</sup>	교통통신 감면 <sup>3)</sup>
2010			11,573	4,925	3,549	1,235	563	714	588
2011	노령	77.7	11,617	5,344	6,263				10
	근로무능력관련급여	8.8	1,322					927	395
	보건	8.2	1,223			1,223			
	가족	4.0	604				603		0
	기타	1.2	185						185
	계	100.0	14,952	5,344	6,263	1,223	603	927	591
'10-'11 증감율			29.2	8.5	76.5	-0.9	7.2	29.9	0.5

주: 1) 법정퇴직금 전체 금액(26,720십억원) 중 법정퇴직연령 비율(약 20%)을 적용한 수치임.  
 2) 산식: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와병일수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1)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와병일수의 연간화  
 상수2) =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3) 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항공요금, 지하철, 공항철도, 전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건부분).

### 제3 절 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 결과는 〈표 3-17〉 과 같다. 2011년 사회복지지출은 127.8조원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112.9조원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4.9조원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118.8조원) 대비 7.6%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1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35%(공공사회복지지출 9.14%,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21%의 합)로 전년(10.12%) 대비 0.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각각 90.3%, 9.7%에서 2011년 88.3%, 11.7%로 변화하였다. 즉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2010	금 액	118,775	107,202	11,573
	경상GDP %	10.12	9.14	0.99
	구성비	100.0	90.3	9.7
2011	금 액	127,845	112,894	14,952
	경상GDP %	10.35	9.14	1.21
	구성비	100.0	88.3	11.7
'10-'11 증감율		7.6	5.3	29.2

사회복지지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보건영역(2010년 41.7%, 2011년 40.4%)과 노령영역(2010년 27.7%, 2011년 29.4%)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2010-2011년간 증감율을 살펴보면, 가족부문(24.5%)과 노령부문(14.4%), 유족부문(9.6%)의 전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 기타사회정책영역은 각각 전년 대비 8.3%,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사회복지지출<sup>1)</sup>의 기능별 추계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2,863	27.7	37,582	29.4	14.4
2. 유족	3,035	2.6	3,326	2.6	9.6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6,810	5.7	7,336	5.7	7.7
4. 보건 <sup>2)</sup>	49,529	41.7	51,672	40.4	4.3
5. 가족	9,781	8.2	12,172	9.5	24.5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032	4.2	4,615	3.6	-8.3
7. 실업	3,687	3.1	3,561	2.8	-3.4
8. 주거	-	-	-	-	-
9. 기타	8,040	6.8	7,582	5.9	-5.7
계	118,775	100.0	127,845	100.0	7.6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	10.12		10.35		2.2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제4 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기업부문과 제3섹터(사회복지시설, 민간모금기관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기관, 사회적 기업, 공동체)로 구성된다. 2011년 기준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은 19.0조원으로 전년(16.1조원) 보다 18.3%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부문 84.1%, 제3섹터 15.9%로 나타났다.

기업부문의 자발적민간부문 지출은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78.4%)와 사회공헌활동(5.0%), 기업의 법정 외 보건비(0.6%)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3섹터는 민간모금기관(11.5%), 비영리단체(2.8%), 사회복지시설(1.8%), 공동체(0.9%), 사회적기업(0.1%) 순으로 나타난다.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11년도 민간모금기관이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한 금액은 전년(589십억원)에 비해 3.7배 증가한 2.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증 이유는 민간모금기관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주요 민간모금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오다 201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추계부터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조를 통해 민간모금기관의 모집단을 처음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이 2011년 92개소에서 2012년 572개소로 6.2배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부문과 제3섹터의 모금 및 후원금 전달로 인한 이중계산은 2011년 기준 224십억원으로 1.2%를 차지한다(표 3-19 참조).

〈표 3-19〉 자발적민간지출의 총규모

(단위: 십억원, %)

부 문	구 분	2010		2011		'10-'11 증감율
			비율		비율	
	계	16,064	100	19,011	100	18.3
제3섹터	소 계	1,330	8.3	3,027	15.9	127.5
	민간모금기관	589	3.7	2,194	11.5	272.7
	사회복지시설	422	2.6	335	1.8	-20.5
	사회적 기업	22	0.1	14	0.1	-36.9
	비영리단체	494	3.1	532	2.8	7.8
	공동체	30	0.2	176	0.9	481.0
	이중계산 <sup>1)</sup>	-225	-1.4	-224	-1.2	-0.8
기업	소 계	14,734	91.7	15,984	84.1	8.5
	기업의 법정외 복리비	13,802	85.9	14,912	78.4	8.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837	5.2	953	5.0	13.9
	기업의 법정외 보건비	95	0.6	119	0.6	25.2

주: 1) 민간모금기관 배분금액 중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지원된 부분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사회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사회복지지출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011년 기준 민간사회복지지출은 33.9조원으로 전년(27.6조원)대비 22.9% 증가하였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타사회정책영역(48.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령(36.6%), 보건(5.5%), 가족(5.1%) 그리고 근로무능력관련급여(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기준 GDP대비 민간사회복지지출은 2.75%로 전년(2.36%)대비 0.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별로 전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노령영역의 퇴직연금이 76.5%로 크게 증가했고, 기타영역(14.9%), 가족영역(3.6%), 보건영역(2.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족부문은 조사기관수가 증가(4개 기관 → 9개 기관)한 이유로 금액은 약간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3-20〉 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sup>1)</sup>	8,564	31.0	12,417	36.6	45.0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4,925	17.8	5,344	15.7	8.5
· 퇴직연금	3,549	12.8	6,263	18.4	76.5
2. 유족	0	0.0	5	0.0	1,544.4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153	4.2	1,368	4.0	18.6
4. 보건	1,824	6.6	1,874	5.5	2.8
5. 가족	1,684	6.1	1,745	5.1	3.6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	-	-	-	-
7. 실업	-	-	-	-	-
· 실업보상	-	-	-	-	-
8. 주거	-	-	-	-	-
9. 기타	14,413	52.2	16,554	48.7	14.9
계	27,638	100.0	33,963	100.0	22.9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	2.36		2.75		16.7

주: 1)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기업의 퇴직연금, 교통요금 감면 등이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한편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은 법정민간부문과 자발적민간부문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1년도 기준 민간사회복지지출(33.9조원) 중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19.0조원(56.0%),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4.9조원(44.0%)으로 나타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노령(77.7%)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취약계층지원의 기타정책영역(86.1%)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2011년 기준 GDP 대비 민간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1.21%,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은 1.54%로 나타났다.

〈표 3-21〉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기능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지출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1. 노령 <sup>1)</sup>	11,617	77.7	800	4.2
·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5,344	35.7	-	-
· 퇴직연금	6,263	41.9	-	-
2. 유족	-	-	5	0.0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1,322	8.8	46	0.2
4. 보건	1,223	8.2	651	3.4
5. 가족	604	4.0	1,141	6.0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	-	-	-
7. 실업	-	-	-	-
· 실업보상	-	-	-	-
8. 주거	-	-	-	-
9. 기타	185	1.2	16,369	86.1
계	14,952	100.0	19,011	100.0
경상GDP	1,235,161		1,235,161	
경상GDP 대비 %	1.21		1.54	

주: 1) 정년퇴직자의 법정퇴직금, 기업의 퇴직연금, 교통요금 감면 등이 포함

## 제5절 총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는 〈표 3-22〉와 같다. 2011년 기준 총사회복지지출은 146.9조원으로 전년(134.8조원)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GDP대비 총사회복지지출 역시 11.89%로 전년(11.49%) 대비 0.4%p가 증가하였다. 2011년 총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7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12.9%),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2〉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연도구분		계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지출	자발적민간지출
2010	금 액	134,839	107,202	11,573	16,064
	경상GDP 대비	11.49	9.14	0.99	1.37
	구성비	100.0	79.5	8.6	11.9
2011	금 액	146,857	112,894	14,952	19,011
	경상GDP 대비	11.89	9.14	1.21	1.54
	구성비	100.0	76.9	10.2	12.9
'10-'11 증감율		8.9	5.3	29.2	18.3

총사회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보건영역(2011년 35.6%)과 노령영역(2011년 26.1%)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항목별 사회복지지출을 보면 보건영역은 공공사회복지지출(2011년 44.7%)에서, 노령영역은 사회복지지출(2011년 29.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사회정책영역은 주로 정부의 일반지출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2011년 6.6%)과 사회복지지출 비중(2011년 5.9%)에 비해 총사회복지지출의 비중(2011년 16.3%)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사회정책영역의 지출규모는 일반정부지출을 포함하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자발적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총사회복지지출의 2010년 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가족영역과 노령영역에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영역 22.1%, 노령영역 16.5%).

〈표 3-23〉 총사회복지지출<sup>1)</sup>의 기능별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

정책영역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노령	32,945	24.4	38,382	26.1	16.5
2. 유족	3,035	2.3	3,330	2.3	9.7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6,845	5.1	7,382	5.0	7.8
4. 보건 <sup>2)</sup>	50,118	37.2	52,323	35.6	4.4
5. 가족	10,901	8.1	13,314	9.1	22.1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5,032	3.7	4,615	3.1	-8.3
7. 실업	3,687	2.7	3,561	2.4	-3.4
8. 주거	-	-	-	-	-
9. 기타	22,277	16.5	23,950	16.3	7.5
총사회복지지출(십억)	134,839	100.0	146,857	100.0	8.9
경상GDP	1,173,275		1,235,161		5.3
경상GDP 대비 %	11.49		11.89		3.5

주: 1)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포함

2)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 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제6절 순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앞서 추계방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추계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추계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 추계결과 2010년 4.42%에서 2011년 4.58%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전소득자를 포함한 가구의 직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 2.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직접세율(실효세율)을 통한 추계를 활용하였다.

〈표 3-24〉 직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매크로데이터 <sup>1)</sup>		마이크로데이터 <sup>2)</sup>
	2010	2011	2010
직접세율	4.42	4.58	2.2

주: 1) 근로소득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 과세미달자 제외)×100=직접세율

2) 이전소득자가 있는 가구의 사업소득세와 경상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하여 추정

자료: 2012 국세통계연보

다음으로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간접세율은 2010년 기준 최소 11.63% ~ 최대 16.17%, 2011년 기준 최소 10.55% ~ 최대 15.34%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 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자의 간접세 부담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매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최소세율을 추계에 활용하였다.

〈표 3-25〉 간접세율 추계결과

(단위: %)

구분	매크로데이터			마이크로데이터
		2010	2011	2010
간접세율	Minim	11.63	10.55	5.1
	Maxim	16.17	15.34	

주: Minim=(5110 일반소비세 + 5121 국내소비세)/(민간소비+정부소비-공무원임금)×100

Maxim=(5000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국민계정의 민간최종소비지출×100

자료: OECD(2011), Revenue Statistics 1965-2011, 2011; 한국은행 홈페이지, 국민계정 ; 통계청, 2010가계동향조사.

사회적 목적을 위한 조세혜택의 대표적인 사례는 조세감면제도이다. 조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그리고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조세감면 지출규모는 8.9조원으로 2010년(8.6조원)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표 3-26〉 조세감면제도의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구분	2010	2011
계	8,616	8,88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89	421
지방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 <sup>1)</sup>	229	28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단계 면세금액	72	330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세금액	19	15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 <sup>2)</sup>	8,206	8,091

주: 1) 감면대상의 일부제도가 지방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장애인소유자동차, 노인복지시설 등)

2) 근로소득 특별공제 등 조세지출에 대한 정책영역별 추계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표 19〉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 2012 세정연감, 국세청 내부자료, 2011; 관세청 내부자료, 2011;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 결과는 아래의 〈표 3-27〉과 같다. 2011년 순사회복지지출은 148.1조원으로 전년(136.0조원)대비 8.86% 증가하였다. 2011년 요소 GDP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은 13.46%로 전년(13.06%)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단위: 십억원, 요소 GDP 대비 %)

구분	2010		2011		'10-'11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1. 총사회복지지출	134,839	100.0	146,857	100.0	8.91
2. 조세부담 <sup>1)</sup>	7,451	5.5	7,689	5.2	3.1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810	0.6	1,008	0.7	24.54
간접세	6,641	4.9	6,680	4.5	0.59
3. 조세혜택 <sup>2)</sup>	8,616	6.4	8,886	6.1	3.13
순사회복지지출	136,004	100.9	148,053	100.8	8.86
(요소GDP 대비 비율)	13.06		13.46		3.05

주: 1) 직접세는 기업복지의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임(참고로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는 소득세가 면세임). 간접세 추계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현금급여, 기업복지 중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TBSPs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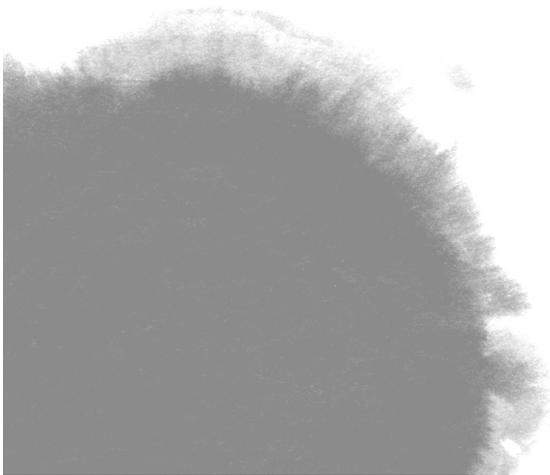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 4장

K I H A S A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 제4장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동향

###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지금까지 OECD 작성지침에 따른 2011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과 추계결과를 살펴보았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함께 과거 지출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과 과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본 장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취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1990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처음 추계한 이후 지금까지의 지출액, 구성 백분율, GDP 대비 백분율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전년대비 증감을 제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액과 GDP 대비 비율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 정책영역별로 제시하였다.

〈표 4-1〉 연도별 사회복지지출액

(단위: 십억원,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경상GDP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6,118	5,989	5,398	591	129 <sup>1)</sup>	191,383
1991	7,154	7,021	6,312	708	134 <sup>1)</sup>	231,428
1992	8,767	8,632	7,783	850	134 <sup>1)</sup>	263,993
1993	10,277	10,104	9,029	1,075	172 <sup>1)</sup>	298,762
1994	12,220	12,030	10,649	1,380	190 <sup>1)</sup>	349,973
1995	22,682	14,984	13,307	1,676	7,699	409,654
1996	26,682	17,701	15,769	1,932	8,981	460,953
1997	31,564	21,769	18,770	2,999	9,795	506,314
1998	39,340	31,120	25,679	5,441	8,220	501,027
1999	48,486	37,700	33,771	3,929	10,786	549,005
2000	45,495	34,309	29,084	5,225	11,185	603,236
2001	50,884	38,866	34,398	4,469	12,018	651,415
2002	54,822	41,337	37,036	4,301	13,485	720,539
2003	61,991	46,500	41,442	5,058	15,491	767,114
2004	67,955	55,737	50,156	5,581	12,218	826,893
2005	75,614	61,873	56,297	5,576	13,741	865,241
2006	89,829	73,760	67,849	5,911	16,068	908,744
2007	99,451	81,482	74,899	6,583	17,969	975,013
2008	108,989	93,429	85,941	7,488	15,560	1,026,452
2009	128,437	112,060	102,105	9,955	16,377	1,065,037
2010	134,839	118,775	107,202	11,573	16,064	1,173,275
2011	146,857	127,845	112,894	14,952	19,011	1,235,161
1990-2011 평균증가율	16.3	15.7	15.6	16.6	26.8	9.3
2001-2011 평균증가율	11.2	12.6	12.6	12.8	4.7	6.6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표 4-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구성비

(단위: %)

구 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100.0	97.9	88.2	9.7	2.1 <sup>1)</sup>
1991	100.0	98.1	88.2	9.9	1.9 <sup>1)</sup>
1992	100.0	98.5	88.8	9.7	1.5 <sup>1)</sup>
1993	100.0	98.3	87.9	10.5	1.7 <sup>1)</sup>
1994	100.0	98.4	87.1	11.3	1.6 <sup>1)</sup>
1995	100.0	66.1	58.7	7.4	33.9
1996	100.0	66.3	59.1	7.2	33.7
1997	100.0	69.0	59.5	9.5	31.0
1998	100.0	79.1	65.3	13.8	20.9
1999	100.0	77.8	69.7	8.1	22.2
2000	100.0	75.4	63.9	11.5	24.6
2001	100.0	76.4	67.6	8.8	23.6
2002	100.0	75.4	67.6	7.8	24.6
2003	100.0	75.0	66.9	8.2	25.0
2004	100.0	82.0	73.8	8.2	18.0
2005	100.0	81.8	74.5	7.4	18.2
2006	100.0	82.1	75.5	6.6	17.9
2007	100.0	81.9	75.3	6.6	18.1
2008	100.0	85.7	78.9	6.9	14.3
2009	100.0	87.2	79.5	7.8	12.8
2010	100.0	88.1	79.5	8.6	11.9
2011	100.0	87.1	76.9	10.2	12.9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표 4-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단위: GDP 대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0	3.20	3.13	2.82	0.31	0.07 <sup>1)</sup>
1991	3.09	3.03	2.73	0.31	0.06 <sup>1)</sup>
1992	3.32	3.27	2.95	0.32	0.05 <sup>1)</sup>
1993	3.44	3.38	3.02	0.36	0.06 <sup>1)</sup>
1994	3.49	3.44	3.04	0.39	0.05 <sup>1)</sup>
1995	5.54	3.66	3.25	0.41	1.88
1996	5.79	3.84	3.42	0.42	1.95
1997	6.23	4.30	3.71	0.59	1.93
1998	7.85	6.21	5.13	1.09	1.64
1999	8.83	6.87	6.15	0.72	1.96
2000	7.54	5.69	4.82	0.87	1.85
2001	7.81	5.97	5.28	0.69	1.84
2002	7.61	5.74	5.14	0.60	1.87
2003	8.08	6.06	5.40	0.66	2.02
2004	8.22	6.74	6.07	0.67	1.48
2005	8.74	7.15	6.51	0.64	1.59
2006	9.88	8.12	7.47	0.65	1.77
2007	10.20	8.36	7.68	0.68	1.84
2008	10.62	9.10	8.37	0.73	1.52
2009	12.06	10.52	9.59	0.93	1.54
2010	11.49	10.12	9.14	0.99	1.37
2011	11.89	10.35	9.14	1.21	1.54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표 4-4〉 기능별 공공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원)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5,398	1,166	-	-	298	563	2,926	60	51	-	-	-	335
1991	6,312	1,471	-	-	409	778	3,186	89	44	-	-	-	336
1992	7,783	2,028	-	-	452	988	3,772	111	103	-	-	-	328
1993	9,029	2,661	-	-	494	977	4,241	154	144	-	-	-	359
1994	10,649	3,317	-	-	569	1,275	4,827	185	114	-	-	-	363
1995	13,307	4,373	-	-	637	1,499	5,914	262	168	-	-	-	455
1996	15,769	4,651	-	-	720	1,746	7,541	337	184	10	10	-	580
1997	18,770	5,458	-	-	819	2,079	8,813	429	360	79	79	-	734
1998	25,679	8,931	-	-	874	2,071	9,951	549	1,627	799	799	-	876
1999	33,771	13,005	-	-	900	1,929	11,747	530	3,266	936	936	-	1,458
2000	29,084	7,570	-	-	1,040	2,272	13,147	665	2,313	471	471	-	1,607
2001	34,398	6,715	-	-	1,172	2,663	18,093	941	1,429	845	845	-	2,540
2002	37,036	7,324	-	-	1,364	3,160	19,022	1,018	1,342	835	835	-	2,971
2003	41,442	8,785	-	-	1,597	3,799	20,838	1,268	932	1,030	1,030	-	3,192
2004	50,156	11,241	-	-	1,825	4,405	22,832	1,969	941	1,448	1,448	-	5,496
2005	56,297	12,653	-	-	2,013	4,673	25,935	2,211	1,035	1,752	1,752	-	6,026
2006	67,849	14,181	-	-	2,235	5,170	30,397	5,200	1,089	2,074	2,074	-	7,502
2007	74,899	16,056	-	-	2,471	5,551	34,297	5,217	1,267	2,434	2,434	-	7,606
2008	85,941	19,808	-	-	2,667	5,936	37,073	7,562	3,304	2,865	2,865	-	6,726
2009	102,105	21,954	-	-	2,927	6,370	42,905	8,542	6,461	4,116	4,116	-	8,829
2010	107,202	24,381	-	-	3,035	5,692	48,294	9,217	5,032	3,687	3,687	-	7,864
2011	112,894	25,965	-	-	3,326	6,014	50,448	11,569	4,615	3,561	3,561	-	7,397

〈표 4-5〉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단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보상	8.주거	9.기타	
1990	2.82	0.61	-	-	0.16	0.29	1.53	0.03	0.03	-	-	-	0.18
1991	2.73	0.64	-	-	0.18	0.34	1.38	0.04	0.02	-	-	-	0.15
1992	2.95	0.77	-	-	0.17	0.37	1.43	0.04	0.04	-	-	-	0.12
1993	3.02	0.89	-	-	0.17	0.33	1.42	0.05	0.05	-	-	-	0.12
1994	3.04	0.95	-	-	0.16	0.36	1.38	0.05	0.03	-	-	-	0.10
1995	3.25	1.07	-	-	0.16	0.37	1.44	0.06	0.04	-	-	-	0.11
1996	3.42	1.01	-	-	0.16	0.38	1.64	0.07	0.04	0.00	0.00	-	0.13
1997	3.71	1.08	-	-	0.16	0.41	1.74	0.08	0.07	0.02	0.02	-	0.14
1998	5.13	1.78	-	-	0.17	0.41	1.99	0.11	0.32	0.16	0.16	-	0.17
1999	6.15	2.37	-	-	0.16	0.35	2.14	0.10	0.59	0.17	0.17	-	0.27
2000	4.82	1.25	-	-	0.17	0.38	2.18	0.11	0.38	0.08	0.08	-	0.27
2001	5.28	1.03	-	-	0.18	0.41	2.78	0.14	0.22	0.13	0.13	-	0.39
2002	5.14	1.02	-	-	0.19	0.44	2.64	0.14	0.19	0.12	0.12	-	0.41
2003	5.40	1.15	-	-	0.21	0.50	2.72	0.17	0.12	0.13	0.13	-	0.42
2004	6.07	1.36	-	-	0.22	0.53	2.76	0.24	0.11	0.18	0.18	-	0.66
2005	6.51	1.46	-	-	0.23	0.54	3.00	0.26	0.12	0.20	0.20	-	0.70
2006	7.47	1.56	-	-	0.25	0.57	3.34	0.57	0.12	0.23	0.23	-	0.83
2007	7.68	1.65	-	-	0.25	0.57	3.52	0.54	0.13	0.25	0.25	-	0.78
2008	8.37	1.93	-	-	0.26	0.58	3.61	0.74	0.32	0.28	0.28	-	0.66
2009	9.59	2.06	-	-	0.27	0.60	4.03	0.80	0.61	0.39	0.39	-	0.83
2010	9.14	2.08	-	-	0.26	0.49	4.12	0.79	0.43	0.31	0.31	-	0.67
2011	9.14	2.10	-	-	0.27	0.49	4.08	0.94	0.37	0.29	0.29	-	0.60

〈표 4-6〉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원)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591	359	359	-	-	143	89	-	-	-	-	-
1991	708	424	424	-	-	166	118	-	-	-	-	-
1992	850	521	521	-	-	190	139	-	-	-	-	-
1993	1,075	597	597	-	-	205	273	-	-	-	-	-
1994	1,380	797	797	-	-	220	363	-	-	-	-	-
1995	1,676	984	984	-	0	244	441	-	-	-	-	6
1996	1,932	1,091	1,091	-	0	302	530	-	-	-	-	9
1997	2,999	1,872	1,872	-	0	365	666	85	-	-	-	11
1998	5,441	4,227	4,226	-	0	433	676	94	-	-	-	12
1999	3,929	2,607	2,606	-	0	504	653	153	-	-	-	11
2000	5,225	3,475	3,474	-	-	621	905	212	-	-	-	12
2001	4,469	2,600	2,599	-	-	714	835	309	-	-	-	11
2002	4,301	2,340	2,330	-	-	868	817	260	-	-	-	14
2003	5,058	2,873	2,863	-	-	871	972	321	-	-	-	21
2004	5,581	3,268	3,266	-	-	975	963	362	-	-	-	13
2005	5,576	3,183	3,182	-	-	1,041	1,031	307	-	-	-	14
2006	5,911	3,331	3,330	-	-	1,077	1,119	367	-	-	-	17
2007	6,583	3,941	3,663	276	-	1,036	1,117	459	-	-	-	30
2008	7,488	4,740	3,959	779	-	1,072	1,116	507	-	-	-	54
2009	9,955	6,996	5,082	1,910	-	1,095	1,192	526	-	-	-	144
2010	11,573	8,481	4,925	3,549	-	1,118	1,235	563	-	-	-	176
2011	14,952	11,617	5,344	6,263	-	1,322	1,223	604	-	-	-	185

〈표 4-7〉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단위: GDP 대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부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0.31	0.19	0.19	-	-	0.07	0.05	-	-	-	-	-
1991	0.31	0.18	0.18	-	-	0.07	0.05	-	-	-	-	-
1992	0.32	0.20	0.20	-	-	0.07	0.05	-	-	-	-	-
1993	0.36	0.20	0.20	-	-	0.07	0.09	-	-	-	-	-
1994	0.39	0.23	0.23	-	-	0.06	0.10	-	-	-	-	-
1995	0.41	0.24	0.24	-	0.00	0.06	0.11	-	-	-	-	0.00
1996	0.42	0.24	0.24	-	0.00	0.07	0.11	-	-	-	-	0.00
1997	0.59	0.37	0.37	-	0.00	0.07	0.13	0.02	-	-	-	0.00
1998	1.09	0.84	0.84	-	0.00	0.09	0.13	0.02	-	-	-	0.00
1999	0.72	0.47	0.47	-	0.00	0.09	0.12	0.03	-	-	-	0.00
2000	0.87	0.58	0.58	-	-	0.10	0.15	0.04	-	-	-	0.00
2001	0.69	0.40	0.40	-	-	0.11	0.13	0.05	-	-	-	0.00
2002	0.60	0.32	0.32	-	-	0.12	0.11	0.04	-	-	-	0.00
2003	0.66	0.37	0.37	-	-	0.11	0.13	0.04	-	-	-	0.00
2004	0.67	0.40	0.40	-	-	0.12	0.12	0.04	-	-	-	0.00
2005	0.64	0.37	0.37	-	-	0.12	0.12	0.04	-	-	-	0.00
2006	0.65	0.37	0.37	-	-	0.12	0.12	0.04	-	-	-	0.00
2007	0.68	0.40	0.38	0.03	-	0.11	0.11	0.05	-	-	-	0.00
2008	0.73	0.46	0.39	0.08	-	0.10	0.11	0.05	-	-	-	0.01
2009	0.93	0.66	0.48	0.18	-	0.10	0.11	0.05	-	-	-	0.01
2010	0.99	0.72	0.42	0.30	-	0.10	0.11	0.05	-	-	-	0.01
2011	1.21	0.94	0.43	0.51	-	0.11	0.10	0.05	-	-	-	0.02

〈표 4-8〉 기능별 사회복지 지출액

(단위: 십억원)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5,989	1,525	359	-	298	705	3,015	60	51	-	-	-	335
1991	7,021	1,895	424	-	409	944	3,304	89	44	-	-	-	336
1992	8,632	2,549	521	-	452	1,178	3,911	111	103	-	-	-	328
1993	10,104	3,258	597	-	494	1,182	4,514	154	144	-	-	-	359
1994	12,030	4,114	797	-	569	1,495	5,190	185	114	-	-	-	363
1995	14,984	5,357	984	-	637	1,743	6,355	262	168	-	-	-	461
1996	17,701	5,742	1,091	-	720	2,048	8,072	337	184	10	10	-	589
1997	21,769	7,330	1,872	-	819	2,444	9,479	514	360	79	79	-	745
1998	31,120	13,157	4,226	-	874	2,505	10,626	643	1,627	799	799	-	888
1999	37,700	15,612	2,606	-	900	2,433	12,400	683	3,266	936	936	-	1,469
2000	34,309	11,046	3,474	-	1,040	2,892	14,052	877	2,313	471	471	-	1,619
2001	38,866	9,314	2,599	-	1,172	3,377	18,927	1,251	1,429	845	845	-	2,551
2002	41,337	9,665	2,330	-	1,364	4,029	19,839	1,278	1,342	835	835	-	2,985
2003	46,500	11,658	2,863	-	1,597	4,671	21,810	1,589	932	1,030	1,030	-	3,213
2004	55,737	14,509	3,266	-	1,825	5,380	23,795	2,330	941	1,448	1,448	-	5,509
2005	61,873	15,836	3,182	-	2,013	5,713	26,966	2,518	1,035	1,752	1,752	-	6,040
2006	73,760	17,512	3,330	-	2,235	6,248	31,517	5,567	1,089	2,074	2,074	-	7,519
2007	81,482	19,997	3,663	276	2,471	6,586	35,413	5,676	1,267	2,434	2,434	-	7,637
2008	93,429	24,547	3,959	779	2,667	7,008	38,190	8,069	3,304	2,865	2,865	-	6,780
2009	112,060	28,951	5,082	1,910	2,927	7,466	44,097	9,068	6,461	4,116	4,116	-	8,974
2010	118,775	32,863	4,925	3,549	3,035	6,810	49,529	9,781	5,032	3,687	3,687	-	8,040
2011	127,845	37,582	5,344	6,263	3,326	7,336	51,672	12,172	4,615	3,561	3,561	-	7,582

〈표 4-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비율(경상GDP 대비)

(단위: GDP 대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보상	8.주거	9.기타	
1990	3.13	0.80	0.19	-	0.16	0.37	1.58	0.03	0.03	-	-	-	0.18
1991	3.03	0.82	0.18	-	0.18	0.41	1.43	0.04	0.02	-	-	-	0.15
1992	3.27	0.97	0.20	-	0.17	0.45	1.48	0.04	0.04	-	-	-	0.12
1993	3.38	1.09	0.20	-	0.17	0.40	1.51	0.05	0.05	-	-	-	0.12
1994	3.44	1.18	0.23	-	0.16	0.43	1.48	0.05	0.03	-	-	-	0.10
1995	3.66	1.31	0.24	-	0.16	0.43	1.55	0.06	0.04	-	-	-	0.11
1996	3.84	1.25	0.24	-	0.16	0.44	1.75	0.07	0.04	0.00	0.00	-	0.13
1997	4.30	1.45	0.37	-	0.16	0.48	1.87	0.10	0.07	0.02	0.02	-	0.15
1998	6.21	2.63	0.84	-	0.17	0.50	2.12	0.13	0.32	0.16	0.16	-	0.18
1999	6.87	2.84	0.47	-	0.16	0.44	2.26	0.12	0.59	0.17	0.17	-	0.27
2000	5.69	1.83	0.58	-	0.17	0.48	2.33	0.15	0.38	0.08	0.08	-	0.27
2001	5.97	1.43	0.40	-	0.18	0.52	2.91	0.19	0.22	0.13	0.13	-	0.39
2002	5.74	1.34	0.32	-	0.19	0.56	2.75	0.18	0.19	0.12	0.12	-	0.41
2003	6.06	1.52	0.37	-	0.21	0.61	2.84	0.21	0.12	0.13	0.13	-	0.42
2004	6.74	1.75	0.40	-	0.22	0.65	2.88	0.28	0.11	0.18	0.18	-	0.67
2005	7.15	1.83	0.37	-	0.23	0.66	3.12	0.29	0.12	0.20	0.20	-	0.70
2006	8.12	1.93	0.37	-	0.25	0.69	3.47	0.61	0.12	0.23	0.23	-	0.83
2007	8.36	2.05	0.38	0.03	0.25	0.68	3.63	0.58	0.13	0.25	0.25	-	0.78
2008	9.10	2.39	0.39	0.08	0.26	0.68	3.72	0.79	0.32	0.28	0.28	-	0.66
2009	10.52	2.72	0.48	0.18	0.27	0.70	4.14	0.85	0.61	0.39	0.39	-	0.84
2010	10.12	2.80	0.42	0.30	0.26	0.58	4.22	0.83	0.43	0.31	0.31	-	0.69
2011	10.35	3.04	0.43	0.51	0.27	0.59	4.18	0.99	0.37	0.29	0.29	-	0.61

〈표 4-10〉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제도	세부제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합계	5,989	14,984	34,309	61,873	118,775	127,845
공공 <sup>주</sup> 부조	소계	511	817	2,758	7,395	17,000	18,504
	기초생활보장	511	817	2,758	7,395	11,318	12,536
	기초노령연금	-	-	-	-	3,823	3,804
	장애인연금	-	-	-	-	221	428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1,204	1,334
	근로장려금	-	-	-	-	434	402
		소계	355	711	1,051	1,756	2,834
사회 보상	국가보훈	315	677	1,025	1,672	2,498	2,658
	재해구호	40	33	19	28	168	132
	북한이탈 주민지원	-	1	7	50	78	90
	사할린동포	-	-	-	-	6	5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1	1	1
	의사상자예우	-	-	-	5	6	5
	긴급지원	-	-	-	-	77	78
		소계	636	1,711	5,400	10,481	20,929
사회 복지 서비스	시설보호	39	291	545	161	6,506	7,268
	재가복지	104	424	1,152	3,114	762	625
	근로복지	51	166	1,795	572	3,725	3,423
	보건의료	442	791	1,560	2,875	5,403	4,978
	주택보급	-	-	-	2,776	3,168	2,418
	교육복지	-	-	206	573	730	1,261
	교통통신 등 감면	-	39	141	409	615	638
	아동발달계좌	-	-	-	-	10	11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9	36
	소계	3,896	10,068	19,875	36,667	66,440	70,762
사회 보험	공적연금	1,233	4,478	7,650	12,093	20,911	22,855
	건강보험	2,124	4,452	9,776	19,236	34,785	36,993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1,137	1,460	3,048	3,549	3,650
	고용보험	-	2	989	2,289	5,364	5,262
	장기요양보험	-	-	-	-	1,830	2,002
민간 복지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16	127	305	588	591
기업 복지	소계	502	1,220	4,193	4,240	9,750	13,137
	법정퇴직금	359	984	3,474	3,182	4,925	5,344
	퇴직연금	-	-	-	-	3,549	6,263
	산전후 휴가급여	-	-	212	307	563	603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235	506	751	714	927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441	905	1,031	1,235	1,223

주: 의료급여 등 포함

〈표 4-11〉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총사회복지지출	6,118	22,682	45,495	75,614	134,839	146,857
요소 GDP 대비%	3.58	6.21	8.54	9.84	12.95	13.35
총공공지출	5,398	13,307	29,084	56,297	107,202	112,894
총법정민간지출	591	1,676	5,225	5,576	11,573	14,952
총자발적민간지출	129	7,699	11,185	13,741	16,064	19,011
조세부담(-)	-	870	2,209	4,014	7,451	7,68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44	131	392	810	1,008
간접세	-	826	2,078	3,621	6,641	6,680
조세혜택(+)	-	230	1,660	5,659	8,616	8,886
T1 <sup>2)</sup>	-	230	1,660	5,659	8,616	8,886
T2 <sup>3)</sup>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22,041	44,945	77,259	136,004	148,053
요소 GDP 대비%	-	6.03	8.44	10.06	13.06	13.46
요소GDP(1~3)	170,787.7	365,536.2	532,815.4	768,312.9	1,041,091.0	1,099,785.0
1.피용자보수	85,280.6	190,905.0	258,943.6	396,337.9	526,278.7	560,153.3
2.영업잉여	64,975.6	127,157.8	190,695.2	258,129.3	363,901.4	375,978.8
3.고정자본소모	20,531.5	47,473.4	83,176.6	113,845.7	150,910.9	163,652.9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임.  
 3)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 제2절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감에 대한 제도 분석

### 1.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함께 공공부조제도는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어 온 중요한 제도이다. 지난 20년간 공공부조제도는 큰 변화와 함께 제도적 확장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공공부조 지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즉 1990년 5천억원에 불과하던 공공부조 지출은 2000년 2조 8,000억원으로 10년간 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8조원을 넘어섰으며, 다시 2011년에는 18조원을 상회하는 지출액을 보여 5년간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지출을 살펴보자. 1999년 공공부조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 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하였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특히 생계보호의 범위와 대상은 체계적인 빈곤선의 산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먼저 결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량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생계보호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으며, 전체적인 공공부조 지출 역시 급격한 변동 없이 1997년까지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량실업 사태로 인해 한시적 생활보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부조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1조 5500억원 정도이던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1999년 2조 373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아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인구학적 기준이 철폐되었고,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적 요소가 강화되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기초보장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지출액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9년 말 생계보호대상자는 41만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자는 149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지출액 역시 2000년 2조 8천억, 2001년에는 4조 900억원에 이르렀다. 경제사정이 호전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수

급자 수가 140만명 미만으로 감소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지출액은 최저생계비의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 최저생계비는 매 3년 마다 계측되며, 계측년 사이는 대부분 소비자 물가상승율에 연동된다. 실측된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반영된 2005년, 2008년, 2011년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다른 연도에 비해 인상폭이 컸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지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5조 9천억이던 지출액은 2005년 7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10조원, 2011년에는 13조원에 육박하는 12조5천4백억원이 기초생활보장으로 지출되었다.

2011년도의 지출규모는 2010년도의 예산액 11조 3천억원에 비하여 약 1조 2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155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실측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비롯한 현금급여 액수가 상당히 인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2010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6만 3천원에서 2011년 143만 9천원으로 5.6% 증가하였고, 특히 생계급여를 비롯한 현금급여 기준은 2010년 111만 4천원에서 2011년 122만 4천원으로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자활급여액의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146천원에서 206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자활연구원 건립 및 지역자활센터지원 증가, 성과중심자활프로그램의 참여인원 증가, 자활소득공제 대상자 증가 등이 기초생활보장 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8년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몇 가지 공공부조형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공부조 지출액이 상당히 증가한 경향이 발견된다. 첫째, 1998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경로연금이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개편 시행되면서 공공부조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1월 70세 이상의 하위 60% 노인에게 지급되던 경로연금은 같은 해 7월부터 연령기준은 65세로 낮추었고,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의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5%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기초노령연금지출액은 2조 2천 4백억원에 달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상자 확대로 3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3조 8천억원 수준을 지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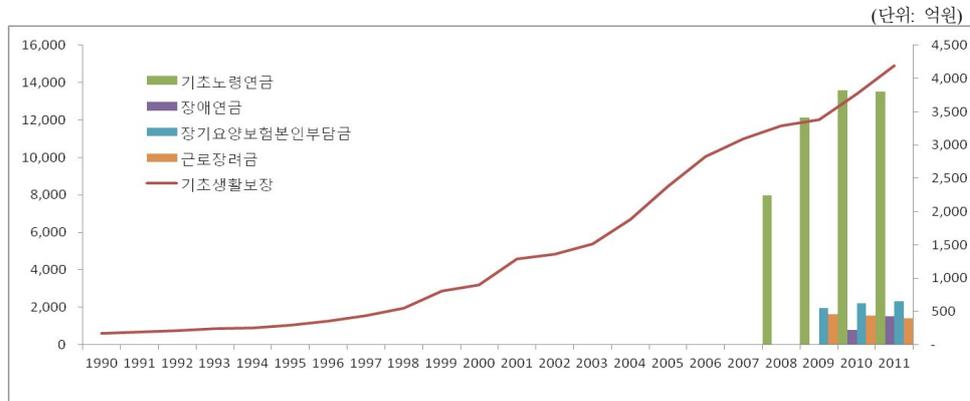
둘째,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무기여 공공부조 급여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장애인연금을 제공하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장애수당 대상자의 상당수는 장애인 연금제도로 편입되었다. 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 장애인 연금으로 2천 2백억원이 지출되었고, 2011년에는 약 4천 3백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의 지출액이 6개월분임을 감안한다면, 2011년 지출수준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라 기초보장 수급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기초보장 수급 노인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09년 1조 2백억 여원이 지출되었고, 장기요양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2010년에는 약 1조 2천억원, 2011년에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지출액이 증가되었다.

끝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며, 이에 따라 2009년 4,540억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2010년에는 근로장려금 지출액이 200억원 가량 감소한 4,340억원이었고, 2011년 지출액 역시 4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2012년에는 대상 범위가 영세사업자와 방문판매원 까지 확대되었고,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최대 200

만원까지로 인상되어 근로장려금 지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공공부조제도의 제도별 지출 추이



## 2. 사회보상

사회보상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원호제도를 중심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구호 및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사업, 사할린동포 고엽제피해자 위안부 등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사업에 대한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0년 3,550억원에서 2000년 1조 5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 사회보상에 대한 지출규모는 2조원을 돌파하였고, 2010년 2조 8천 3백억원, 2011년에는 2조9천7백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사회보상의 각 하위 영역별 지출의 추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상에 대한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지출이다. 보훈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애국지사, 순국유족, 전공상군경, 군경유족, 4·19 및 5·18 부상자와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한 보훈보상금, 보훈선양사업, 보훈복지사업(보훈대상자 진료비, 보철 및 보장구 지원, 보훈병원 및 재활체육시설 건립비용, 취업지원, 교통이용보조, 학자금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사업, 보훈행정 등 일반회계사업 외에, LPG 차량지원 등 특

별회계사업과 보훈기금에 의한 각종 복지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국가보훈에 대한 지출은 1990년 3,150억원에서 2000년 1조 250억원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도 지출액은 2조 4,980억원으로 다시 10년간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990년에서 2010년의 2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보훈에 대한 지출액 증가는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과 함께 보상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보훈대상자의 수가 1990년 17만 2천여 명에서 2011년 85만 7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국가보훈처, 2011). 이것은 독립유공자와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그 수가 증가한 것과 함께, 5.18 부상자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이 보훈사업에 추가되었으며, 중장기복지제대군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보훈대상자의 증가와 함께, 국가경제 및 재정여건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보훈보상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1990년 월기본연금액 기준 17만원 정도에 불과하던 보상금은 2000년 51만원 수준으로 10년간 3배 정도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70만원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약 81만원 정도로 인상되었다(국가보훈처, 2011). 이러한 보훈대상자의 증가와 급여액의 상승은 지난 20년간 국가보훈지출의 꾸준한 상승 추세를 설명하는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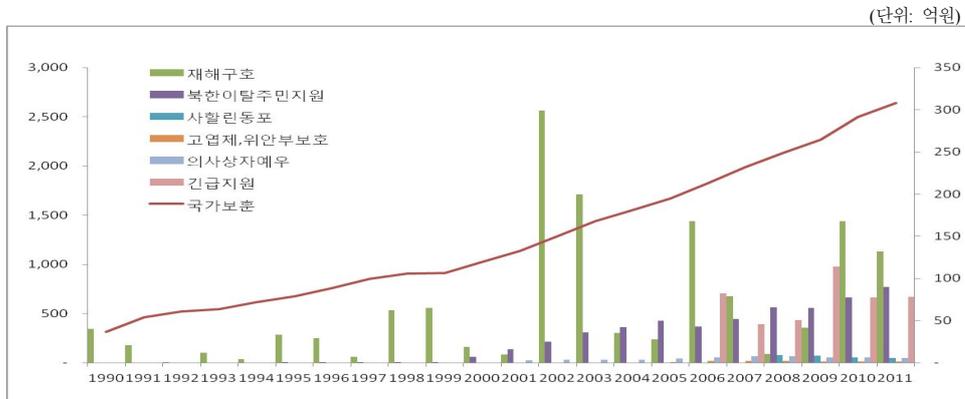
2011년 국가보훈처의 지출액은 2조 6,580억원으로 추계되어, 2010년 대비 약 1,6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2010년 81만원 수준이던 월기본연금액이 2011년 85만 7천원 수준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운영지원금,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보철구 지급, 취업지원 및 교통이용보조 등의 사업 예산도 증액되었다.

둘째, 사회보상에서 국가보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지출이다. [그림 4-2] 에서 보듯이 재해구호에 대한 지출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특정 연도에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1990년 재해구호비는 400억원 정도였으나 2000년에는 오히려 19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1992, 1994, 1997년에는 100억원 미만이었다. 사실 재해구호비에 대한

지출은 자연재해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추계되기 시작한 시점인 1990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홍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재해구호비가 다른 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재해구호비는 2000년대 들어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어 큰 피해를 낸 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는 전라남북도와 충청, 강원 지역을 관통하며 246명의 인명피해와 수만 명의 이재민,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고, 이듬해인 2003년 9월에는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매미가 100여 명의 인명 피해와 4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2년 재해구호비는 3천억원에 육박하였으며, 2003년에도 2,000억원의 재해구호비가 지출되었다. 1,680억원의 재해구호비가 지출된 2006년에는 7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예위니아가 겹쳐지면서 큰 피해를 냈고,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도 태풍과 집중호우, 산사태 등에 의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큰 해였다.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가 컸던 2010년 재해구호비 지출은 1,680억원이었으며, 1,320억원의 재해구호비가 지출된 2011년은 태풍 곤파스가 직접적인 피해를 준 해였다.

셋째,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143명에 달하였으며, 2006년에 2,000명을 넘어선 이래 2011년 까지 연간 2,500명에서 2,900명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다. 1995년에서 1999년 까지는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출도 연간 10억원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250억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지출되었으며, 201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지출액은 780억원, 2011년에는 900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20억원 증가하였다.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지출이 증가한 것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010년 2,400명에서 2011년 2,700여 명으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그림 4-2] 사회보상제도의 제도별 지출 추이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보상대상자 및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출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된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이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고령으로 연도가 갈수록 지원대상 및 지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고엽제피해자, 위안부보호 등에 대한 지출의 경우 연간 10-20억원 수준으로 지출액이 많지 않으며,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지출도 연간 1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가출·질병·휴폐업 및 실직, 방임이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을 단기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 추계되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출은 경제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는데, 2006년 820억에서 2007년 460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로 2009년 국내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출액이 1,14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긴급복지지원 지출액은 780억원으로 201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 3. 사회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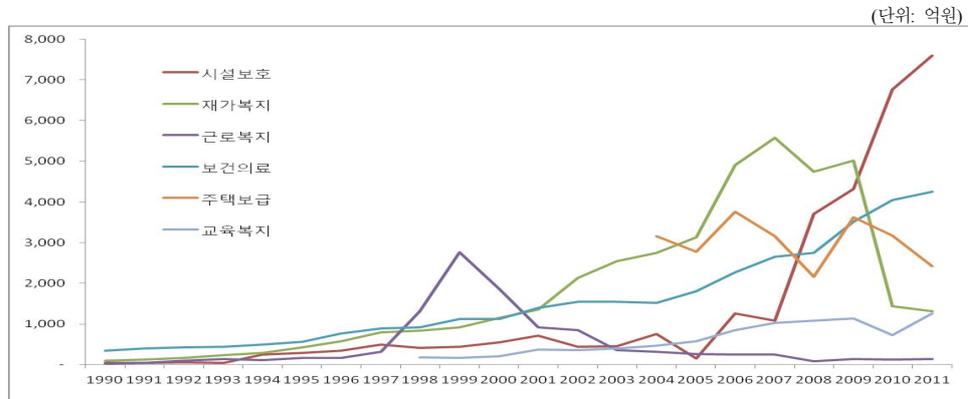
외환위기 직후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범으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추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저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가늠하는데 있어 핵심 사항이었다(김진욱, 2007; 안상훈, 2006).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압력이 인지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빠른 속도로 주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왔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되었다. 우선, 2005년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화·분권화의 여건이 갖추어졌다. 2007년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비롯하여 노인·장애인·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등 이른바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량이 확대되었다. 참여정부 때 법령을 완비하고 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촉발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계획에 따라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이 분야에 대한 제도화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설과 인력의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남찬섭, 2012).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1990년 88개소에 불과하였지만, 1995년까지 297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2009년 까지 419개소로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확충되었다. 1990년에서 2004년까지는 생활시설수 1,000개 미만에 생활인원 8만명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시설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시설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생활시설 수는 2천 개소를 초과하였고, 다시 2년 후인 2009년에는 4천 개소에 육박하였으며, 2010

년에는 거의 5천 개소에 달하였다. 생활인원 역시 2010년에는 16만 5천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량 확대는 종사 인력의 비약적인 증가와 수반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는 1989년 1,6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18,586명으로, 2009년에는 68,578명으로 증가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1990년 324명에서 1994년 3,000명으로, 2009년에는 10,334명으로 증가하였다(남찬섭, 2012: 274).

무엇보다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사회복지지출의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은 6,360억원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4,420억원으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여 시설·재가복지 등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40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7년 후인 1997년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은 2조 8천억원을 넘었고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이 1조 2천억원을 넘는 등 급격히 지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로 1990년대 후반 대량실업 문제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고용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이 5조원을 돌파하였고, 2005년에는 10조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2006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이 15조 2천억 원에 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10년에는 20조 9천억원, 2011년에는 20조 7천억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확대추이에도 불구하고 [그림 4-3]에서 보듯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 영역별 지출 추이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추이와 변화를 시설보호, 재가복지, 근로복지, 보건의료, 주택보급 및 교육복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지출 추이



첫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액은 199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며, 최근 다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육시설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대에 따라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 390억원에 불과하던 시설보호 지출액은 2000년 5,4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04년에는 7,520억원으로 시설보호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지출액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전되면서 시설보호 항목으로 분류된 지출액 규모가 1,60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2006년에는 시설보호 지출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그 이후부터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이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건립비 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보육비 지원 등 보육시설지원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2009년에 재가서비스로 분류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들 중 약 1.5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2010년 시설복지로 항목이 변경되어 2010년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0년 시설보호 지출액은 6조 5,060억원이었고, 2011년에는 7조 2,680억원으

로 추계되어 전년대비 8천 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1년의 시설보호 지출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0-4세 보육료 지원이 2010년 1조 3,689 억원에서 2011년 1조 7,349 억원으로 3,660 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2011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455 억원 증가한 3,950 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지원,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원, 노인일자리 관련 시설지원, 다문화가족관련 시설 지원, 보육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이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0년 1,000 억원이 조금 넘는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은 2000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3조원이 넘었으며, 2007년에는 5조 5천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1990년-1992년 사이에 도입된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 교육비 지원 등 재가장애인 경제부담 경감 사업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사업, 이동학대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지원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05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2007년 4대 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되면서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은 더욱 상승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에 의하여 바우처 사업 등 핵심적인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비 대응자금 부담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증가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그러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였다. 즉 기존의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관되면서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은 2008년 5조원 밑으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2010년에는 재가복지 지출이 7,620 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대응자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필수적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은 유지한 반면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자체사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2009년에 재가복지로 구분된 지출액 중 3조 5천억원이 다른 유형의

사업들로 항목이 전환되면서 재가복지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1년 재가복지 지출액은 6,25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7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 사업비 규모가 증가한 사업도 있지만, 장애인 연금의 확대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복지는 주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제공되는 공공고용서비스로서 OECD 기준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해당하는 지출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전인 1990년 근로복지에 대한 지출은 510억원에 불과하였고, 199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긴 했지만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7년부터 본격화된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1997년 근로복지에 대한 지출이 2,880억원으로 전년도의 2배에 육박하게 되었고, 1998년에는 1조 3천억원, 1999년에는 2조 7천억원 수준으로 폭증하였다.

경제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2000년부터는 근로복지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근로복지에 대한 지출이 1조원 아래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근로복지에 대한 지출은 3조 7,250억원, 2011년에는 3조 4,230억원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지출변화가 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우선 직업안정기관 운영비가 2010년 271억원에서 2011년 181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저소득 근로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패키지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0년 141억원에서 2011년 57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국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장비에 대한 투자 등 의료고정자본형성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 등의 집합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집합보건은 사회구성원 다중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예방 및 공중보건서비스(모자보건/가족계획, 학교보건, 전염병예방, 직장보건 및 기타 공중보건)와 보건행정관리로 구성된다(정형선, 2011). 1990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은 4,420억원이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9년 1조 6,070억원, 2006년 3조 6,0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5조

4,030억원, 2011년에는 4조 9,78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다섯째, 주택보급에 대한 지출이다. 주택보급은 공공임대주택건설비에 대한 지출로서, 이에 대한 지출이 처음 추계된 2004년에 이미 3조원을 넘는 수준이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연도마다 상당한 지출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뚜렷한 증가나 감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10년 주택보급에 대한 지출은 2004년과 비슷한 3조 1,680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2011년 지출액은 2조 4,18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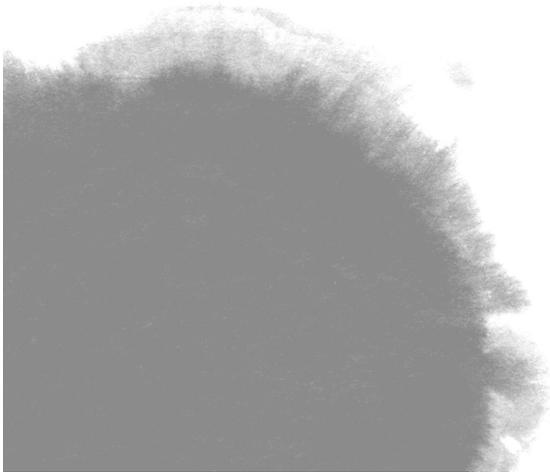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교육복지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로서 복지서비스 분야로 간주하지만, 유치원 교육은 보육시설과 연령대가 겹치긴 하지만 유아교육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이 처음 추계된 1998년의 지출은 1,850억원이었으나, 참여정부의 새마을지 플랜(저출산 고령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 3-4세 아동에게 차등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와 지출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2002년 2만 8천 여 명에서 2011년 15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은 2010년 7,300억원, 2011년에는 1조 2,61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 5장

K I H A S A

##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 제5장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통계(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OECD 회원국 중 복지레짐별 대표국가를 선정하여 정책영역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1 절 사회복지지출 비교

최근 OECD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국들의 2008년과 2009년의 데이터를 신규 공개하였다. 이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총사회복지지출은 매뉴얼에 제시된 예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로 계산하였고, 순사회복지지출은 OECD SOCX 사무국에서 발간하는 Working paper의 데이터(2007년 기준)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의 최신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09년 통계와 2011년 통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5-1〉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sup>1)</sup>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9	2.06	0.27	0.60	4.03	0.80	0.61	0.39	-	0.83	9.59
	2011	2.10	0.27	0.49	4.08	0.94	0.37	0.29	-	0.60	9.14
호주	4.9	0.2	2.3	6.2	2.8	0.3	0.5	0.3	0.2	17.8	
오스트리아	12.0	2.0	2.5	7.3	2.9	0.8	1.1	0.1	0.3	29.1	
벨기에	8.1	2.1	2.5	8.1	2.8	1.4	3.7	0.2	0.8	29.7	
캐나다	4.1	0.4	0.9	8.0	1.1	0.3	1.0	0.4	2.9	19.2	
칠레	2.8	0.8	0.9	3.7	1.5	0.2	0.1	1.0	0.3	11.3	
체코공화국	7.8	0.7	2.2	6.7	1.8	0.2	1.0	0.1	0.1	20.7	
덴마크	8.2	0.0	4.9	7.7	3.9	1.6	2.3	0.7	0.9	30.2	
에스토니아	7.9	0.1	2.7	5.2	2.6	0.2	1.1	0.0	0.1	20.0	
핀란드	10.2	0.9	4.1	6.8	3.3	0.9	2.0	0.5	0.7	29.4	
프랑스	12.3	1.8	2.0	9.0	3.2	1.0	1.5	0.8	0.4	32.1	
독일	9.1	2.2	2.3	8.6	2.1	1.0	1.7	0.6	0.2	27.8	
그리스	10.9	2.2	1.0	6.5	1.4	0.2	0.7	0.5	0.4	23.9	
헝가리	9.1	1.4	2.7	5.1	3.6	0.5	0.9	0.6	0.1	23.9	
아이슬란드	2.2	0.0	2.7	6.2	4.0	0.0	1.7	1.0	0.7	18.5	
아일랜드	4.5	1.1	2.4	7.1	4.1	0.9	2.6	0.3	0.6	23.6	
이스라엘	4.4	0.8	3.1	4.1	2.2	0.2	0.4	0.0	0.8	16.0	
이탈리아	13.0	2.6	1.9	7.4	1.6	0.4	0.8	0.0	0.0	27.8	
일본	10.4	1.4	1.0	7.2	1.0	0.4	0.4	0.2	0.3	22.2	
룩셈부르크	5.8	1.9	2.7	6.6	4.0	0.5	1.2	0.3	0.5	23.6	
멕시코	1.4	0.3	0.1	3.1	1.1	0.0	..	1.3	0.9	8.2	
네덜란드	5.8	0.2	3.1	7.9	1.7	1.2	1.4	0.4	1.4	23.2	
뉴질랜드	4.5	0.2	2.8	8.3	3.5	0.3	0.5	0.9	0.2	21.2	
노르웨이	7.1	0.3	4.7	6.2	3.2	0.5	0.4	0.2	0.7	23.3	
폴란드	9.8	2.0	2.3	5.2	1.1	0.6	0.3	0.1	0.2	21.5	
포르투갈	10.6	1.8	2.1	7.2	1.5	0.8	1.2	0.0	0.3	25.6	
슬로바키아공화국	6.4	0.9	2.0	6.0	2.0	0.2	0.7	0.0	0.4	18.7	
슬로베니아	9.2	1.7	2.2	6.8	1.3	0.3	0.5	0.0	0.5	22.6	
스페인	7.7	2.2	2.7	7.0	1.5	0.9	3.5	0.2	0.3	26.0	
스웨덴	10.2	0.5	5.0	7.3	3.7	1.1	0.7	0.5	0.7	29.8	
스위스	..	..	..	..	..	..	..	..	..	..	
터키	5.8	1.1	0.4	5.4	0.0	0.0	0.1	..	..	12.8	
영국	6.7	0.1	2.9	8.1	3.8	0.3	0.5	1.5	0.2	24.1	
미국	6.1	0.8	1.5	8.3	0.7	0.2	0.9	..	0.7	19.2	
OECD평균	7.3	1.0	2.4	6.6	2.3	0.5	1.1	0.7	0.8	22.1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3. 9. 30 다운로드)

〈표 5-2〉 OECD 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sup>1)</sup>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9	0.66	-	0.10	0.11	0.05	-	-	0.01	0.93
	2011	0.94	-	0.11	0.10	0.05	-	-	0.02	1.21
호주	0.4	..	..	..	..	..	..	..	..	0.4
오스트리아	..	..	0.9	..	..	..	..	..	..	0.9
벨기에	0.0	0.0	0.0	..	0.0	..	..	..	0.0	0.0
캐나다	..	..	..	..	..	..	..	..	..	..
칠레	1.1	0.2	0.1	..	..	..	..	..	..	1.5
체코공화국	0.4	0.0	0.0	..	..	..	..	..	0.1	0.5
덴마크	..	..	0.2	..	..	..	..	..	..	0.2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0.1	0.1	0.2	..	0.0	..	..	..	..	0.3
독일	..	..	1.2	..	0.1	..	..	..	..	1.2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0.0	1.4	..	..	..	..	..	..	1.4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1.2	0.0	0.4	..	0.1	..	..	..	..	1.6
일본	0.6	0.0	0.2	..	0.0	..	..	..	..	0.8
룩셈부르크	..	..	0.8	..	..	..	..	..	..	0.8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0.0	0.0	0.6	..	..	..	..	..	..	0.7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1.5	..	..	..	..	..	..	1.5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0.3	..	..	..	..	..	..	0.3
슬로바키아공화국	0.0	..	0.0	..	0.0	..	..	..	..	0.1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0.4	..	..	..	..	..	..	0.4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0.7	..	0.1	..	..	..	0.2	..	..	1.0
미국	..	..	0.2	0.2	..	..	..	..	..	0.3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3. 9. 30 다운로드)

〈표 5-3〉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sup>1)</sup>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9	2.72	0.27	0.70	4.14	0.85	0.61	0.39	-	0.84	10.52
	2011	3.04	0.27	0.59	4.18	0.99	0.37	0.29	-	0.61	10.35
호주	5.3	0.2	2.3	6.2	2.8	0.3	0.5	0.3	0.2	18.2	
오스트리아	12.0	2.0	3.4	7.3	2.9	0.8	1.1	0.1	0.3	30.0	
벨기에	8.1	2.1	2.5	8.1	2.8	1.4	3.7	0.2	0.8	29.7	
캐나다	4.1	0.4	0.9	8.0	1.1	0.3	1.0	0.4	2.9	19.2	
칠레	3.9	1.1	1.1	3.7	1.5	0.2	0.1	1.0	0.3	12.8	
체코공화국	8.2	0.8	2.2	6.7	1.8	0.2	1.0	0.1	0.2	21.3	
덴마크	8.2	0.0	5.2	7.7	3.9	1.6	2.3	0.7	0.9	30.4	
에스토니아	7.9	0.1	2.7	5.2	2.6	0.2	1.1	0.0	0.1	20.0	
핀란드	10.2	0.9	4.1	6.8	3.3	0.9	2.0	0.5	0.7	29.4	
프랑스	12.3	1.9	2.1	9.0	3.2	1.0	1.5	0.8	0.4	32.4	
독일	9.1	2.2	3.5	8.6	2.1	1.0	1.7	0.6	0.2	29.0	
그리스	10.9	2.2	1.0	6.5	1.4	0.2	0.7	0.5	0.4	23.9	
헝가리	9.1	1.4	2.7	5.1	3.6	0.5	0.9	0.6	0.1	23.9	
아이슬란드	2.2	0.0	4.1	6.2	4.0	0.0	1.7	1.0	0.7	19.9	
아일랜드	4.5	1.1	2.4	7.1	4.1	0.9	2.6	0.3	0.6	23.6	
이스라엘	4.4	0.8	3.1	4.1	2.2	0.2	0.4	0.0	0.8	16.0	
이탈리아	14.2	2.6	2.3	7.4	1.6	0.4	0.8	0.0	0.0	29.4	
일본	11.0	1.5	1.1	7.2	1.0	0.4	0.4	0.2	0.3	23.0	
룩셈부르크	5.8	1.9	3.5	6.6	4.0	0.5	1.2	0.3	0.5	24.4	
멕시코	1.4	0.3	0.1	3.1	1.1	0.0	..	1.3	0.9	8.2	
네덜란드	5.8	0.2	3.8	7.9	1.7	1.2	1.4	0.4	1.4	23.8	
뉴질랜드	4.5	0.2	2.8	8.3	3.5	0.3	0.5	0.9	0.2	21.2	
노르웨이	7.1	0.3	6.2	6.2	3.2	0.5	0.4	0.2	0.7	24.8	
폴란드	9.8	2.0	2.3	5.2	1.1	0.6	0.3	0.1	0.2	21.5	
포르투갈	10.6	1.8	2.4	7.2	1.5	0.8	1.2	0.0	0.3	25.8	
슬로바키아공화국	6.5	0.9	2.1	6.0	2.0	0.2	0.7	0.0	0.4	18.8	
슬로베니아	9.2	1.7	2.2	6.8	1.3	0.3	0.5	0.0	0.5	22.6	
스페인	7.7	2.2	2.7	7.0	1.5	0.9	3.5	0.2	0.3	26.0	
스웨덴	10.2	0.5	5.4	7.3	3.7	1.1	0.7	0.5	0.7	30.2	
스위스	..	..	..	..	..	..	..	..	..	..	
터키	5.8	1.1	0.4	5.4	0.0	0.0	0.1	..	..	12.8	
영국	7.3	0.1	3.0	8.1	3.8	0.3	0.7	1.5	0.2	25.0	
미국	6.1	0.8	1.7	8.5	0.7	0.2	0.9	..	0.7	19.5	
OECD평균	7.6	1.1	2.6	6.6	2.3	0.5	1.1	0.7	0.8	22.7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3. 9. 30 다운로드)

〈표 5-4〉 OECD 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단위: 정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sup>1)</sup>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9	0.00	-	0.00	0.05	-	-	-	1.48	1.54
	2011	0.06		0.00	0.05				1.42	1.54
호주	2.0	..	..	0.7	..	..	..	..	0.0	2.8
오스트리아	0.7	..	..	0.5	..	..	..	..	0.0	1.2
벨기에	1.3	..	0.4	0.5	..	..	..	..	0.1	2.3
캐나다	3.7	..	..	1.4	..	..	..	..	..	5.1
칠레	..	..	..	1.5	..	..	..	..	..	1.5
체코공화국	..	..	0.1	0.0	..	..	..	..	0.1	0.2
덴마크	2.5	..	..	0.2	..	..	..	..	..	2.7
에스토니아	..	..	..	0.0	..	..	..	..	..	0.0
핀란드	0.2	..	0.7	0.2	..	..	..	..	0.1	1.2
프랑스	0.1	..	0.5	1.6	..	..	..	..	0.6	2.8
독일	0.8	..	..	1.1	..	..	..	..	0.1	2.0
그리스	0.3	..	0.5	0.2	..	..	..	..	0.8	1.8
헝가리	..	..	0.0	0.2	..	..	..	..	0.0	0.2
아이슬란드	3.1	..	0.9	..	..	..	..	..	0.6	4.6
아일랜드	1.1	..	..	1.1	..	..	..	..	0.0	2.2
이스라엘	..	..	..	0.6	..	..	..	..	..	0.6
이탈리아	0.2	..	0.0	0.1	..	..	..	..	0.3	0.7
일본	3.0	..	..	0.2	..	..	..	..	0.0	3.2
룩셈부르크	0.4	..	0.1	0.2	..	..	..	..	0.2	0.9
멕시코	..	..	..	0.3	..	..	..	..	..	0.3
네덜란드	4.1	..	0.4	..	..	..	..	..	1.5	6.0
뉴질랜드	..	..	..	0.5	..	..	..	..	..	0.5
노르웨이	0.6	..	0.2	..	..	..	..	..	0.0	0.8
폴란드	..	..	..	0.0	..	..	..	..	..	0.0
포르투갈	0.2	..	0.1	0.5	..	..	..	..	0.9	1.6
슬로바키아공화국	0.3	..	0.2	..	..	..	..	..	0.4	0.9
슬로베니아	..	..	0.0	1.2	..	..	..	..	0.0	1.2
스페인	0.0	..	..	0.5	..	..	..	..	..	0.5
스웨덴	2.4	..	0.3	0.0	..	..	..	..	0.1	2.8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4.5	..	0.4	0.3	..	..	..	..	0.1	5.3
미국	3.9	..	0.4	5.9	..	..	..	..	0.0	10.2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3. 9. 30 다운로드)

〈표 5-5〉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2009) 비율

(단위: 경상GDP 대비%)

국가명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MP <sup>1)</sup>	실업	주거	기타	계	
한국	2009	2.72	0.27	0.70	4.19	0.85	0.61	0.39	-	2.32	12.06
	2011	3.11	0.27	0.60	4.24	0.99	0.37	0.29	-	2.03	11.89
호주	7.3	0.2	2.3	6.9	2.8	0.3	0.5	0.3	0.2	21.0	
오스트리아	12.7	2.0	3.4	7.8	2.9	0.8	1.1	0.1	0.3	31.2	
벨기에	9.4	2.1	2.9	8.6	2.8	1.4	3.7	0.2	0.9	32.0	
캐나다	7.8	0.4	0.9	9.4	1.1	0.3	1.0	0.4	2.9	24.3	
칠레	3.9	1.1	1.1	5.2	1.5	0.2	0.1	1.0	0.3	14.3	
체코공화국	8.2	0.8	2.3	6.7	1.8	0.2	1.0	0.1	0.3	21.5	
덴마크	10.7	0.0	5.2	7.9	3.9	1.6	2.3	0.7	0.9	33.1	
에스토니아	7.9	0.1	2.7	5.2	2.6	0.2	1.1	0.0	0.1	20.0	
핀란드	10.4	0.9	4.8	7.0	3.3	0.9	2.0	0.5	0.8	30.6	
프랑스	12.4	1.9	2.6	10.6	3.2	1.0	1.5	0.8	1.0	35.2	
독일	9.9	2.2	3.5	9.7	2.1	1.0	1.7	0.6	0.3	31.0	
그리스	11.2	2.2	1.5	6.7	1.4	0.2	0.7	0.5	1.2	25.7	
헝가리	9.1	1.4	2.7	5.3	3.6	0.5	0.9	0.6	0.1	24.1	
아이슬란드	5.3	0.0	5.0	6.2	4.0	0.0	1.7	1.0	1.3	24.5	
아일랜드	5.6	1.1	2.4	8.2	4.1	0.9	2.6	0.3	0.6	25.8	
이스라엘	4.4	0.8	3.1	4.7	2.2	0.2	0.4	0.0	0.8	16.6	
이탈리아	14.4	2.6	2.3	7.5	1.6	0.4	0.8	0.0	0.3	30.1	
일본	14.0	1.5	1.1	7.4	1.0	0.4	0.4	0.2	0.3	26.2	
룩셈부르크	6.2	1.9	3.6	6.8	4.0	0.5	1.2	0.3	0.7	25.3	
멕시코	1.4	0.3	0.1	3.4	1.1	0.0	..	1.3	0.9	8.5	
네덜란드	9.9	0.2	4.2	7.9	1.7	1.2	1.4	0.4	2.9	29.8	
뉴질랜드	4.5	0.2	2.8	8.8	3.5	0.3	0.5	0.9	0.2	21.7	
노르웨이	7.7	0.3	6.4	6.2	3.2	0.5	0.4	0.2	0.7	25.6	
폴란드	9.8	2.0	2.3	5.2	1.1	0.6	0.3	0.1	0.2	21.5	
포르투갈	10.8	1.8	2.5	7.7	1.5	0.8	1.2	0.0	1.2	27.4	
슬로바키아공화국	6.8	0.9	2.3	6.0	2.0	0.2	0.7	0.0	0.8	19.7	
슬로베니아	9.2	1.7	2.2	8.0	1.3	0.3	0.5	0.0	0.5	23.8	
스페인	7.7	2.2	2.7	7.5	1.5	0.9	3.5	0.2	0.3	26.5	
스웨덴	12.6	0.5	5.7	7.3	3.7	1.1	0.7	0.5	0.8	33.0	
스위스	..	..	..	..	..	..	..	..	..	..	
터키	5.8	1.1	0.4	5.4	0.0	0.0	0.1	..	..	12.8	
영국	11.8	0.1	3.4	8.4	3.8	0.3	0.7	1.5	0.3	30.3	
미국	10.0	0.8	2.1	14.4	0.7	0.2	0.9	..	0.7	29.7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을 뜻함.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 2013. 9. 30 다운로드)

〈표 5-6〉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2007) 비율

(단위: 요소 GDP 대비%)

국가명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 사회복지지출	순사회 복지지출
한국	2007	8.68	0.76	2.08	11.78
	2011	10.27	1.36	1.73	13.46
호주		17.9	0.5	3.7	21.0
오스트리아		29.6	0.9	1.1	25.8
벨기에		29.7	0.0	5.3	30.5
캐나다		18.9	0.0	5.9	24.0
체코공화국		20.7	0.3	0.2	19.3
덴마크		30.8	0.3	2.8	25.3
핀란드		28.2	0.0	1.2	23.4
프랑스		32.8	0.4	3.0	32.7
독일		28.4	1.2	2.0	28.4
아이슬란드		17.5	1.9	4.3	19.7
아일랜드		18.6	0.0	1.7	18.0
이탈리아		28.8	1.8	0.7	26.4
일본		20.3	0.6	3.4	23.4
룩셈부르크		23.2	0.3	0.7	19.6
멕시코		8.0	0.0	0.2	9.0
네덜란드		22.7	0.7	7.1	25.3
뉴질랜드		20.9	0.0	0.5	18.8
노르웨이		23.3	1.4	0.9	20.5
폴란드		22.8	0.0	0.0	18.6
포르투갈		25.6	0.5	1.5	25.0
슬로바키아공화국		17.4	0.2	0.9	16.7
스페인		24.1	0.0	0.6	21.8
스웨덴		32.1	0.5	2.9	27.8
터키		12.1	0.0	0.0	11.3
영국		23.3	0.9	5.7	26.9
미국		17.4	0.3	10.9	27.5
OECD평균		22.4	0.5	2.6	22.2

주: 한국의 2011년은 본 연구의 추계결과임.

자료: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2011.

##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심층 분석<sup>43)</sup>

### 1. 공공사회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이란 일반정부 지출과 사회보험 재정, 공기업의 지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들의 재정적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통계지표를 의미한다. 먼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스웨덴은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독일과 영국,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웨덴과 독일, 영국이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으로써 특정 수준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기준 GDP의 9.6%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절대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스웨덴 29.8%, 독일 27.8, 영국 24.1%, 미국 19.2%), 그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1990~2009년 연평균 증가율 한국 6.70%, 영국 1.95%, 미국 1.83%, 독일 1.31%, 스웨덴  $\Delta$ 0.07%).

[그림 5-1]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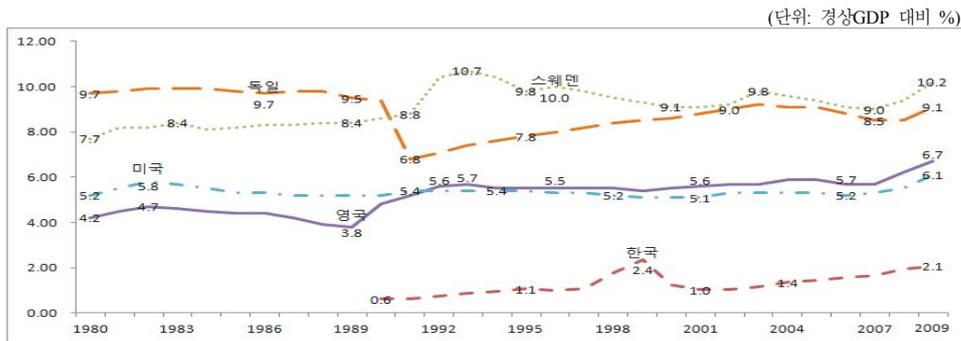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43) OECD SOCX 홈페이지(2012/11/15 다운로드)의 수치에 근거하여 작성

공공사회복지지출 전체를 정책영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령부문에 있어서 스웨덴은 1993년 GDP의 10.71%를 지출하여 가장 높은 지출수준을 기록하였지만, 1993년 복지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노령부문에 대한 지출수준은 2007년 재차 증가하여 2009년 현재 GDP의 10.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2006년 기준 영국 5.7%, 미국 5.2%), 완만한 증가를 보여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독일은 1980년대 고도실업에 따른 조기퇴직의 여파로 인해 노령부문에 대한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연평균 GDP의 9.7%를 기록하여 스웨덴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절감 노력에 힘입어 1991년 6.8%로 최저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독일통일의 여파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으로 인하여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GDP의 9.2%로 재차 1980년대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2001년 그리고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강력한 연금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지출수준은 감소하게 되었고, 2009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IMF 직후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최근 급격한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2] 공공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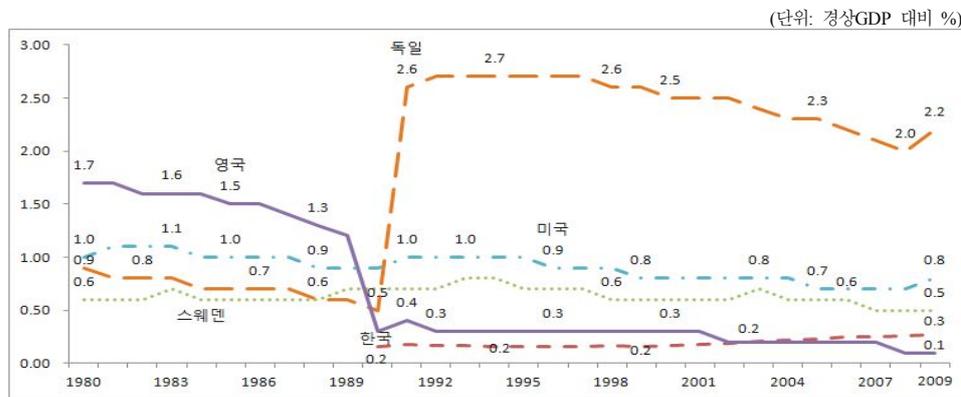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유족부문은 국가별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지는 추이를 보이는 독일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과 스웨덴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남성에게도 여성과 동등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에 따라 1991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초중반까지 최고수준을 보이며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1980년대 가장 높은 수준에서 1990년 0.3%의 급격한 감소 이후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추세에 머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영국과 한국의 지향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영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과 스웨덴은 유사한 수준으로 완만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3] 공공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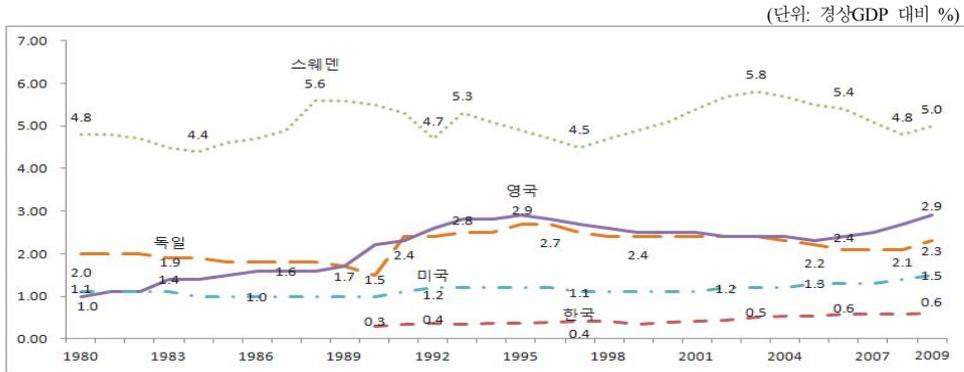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근로무능력관련급여 역시 지난 30년간 스웨덴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그 뒤를 영국과 독일, 미국, 우리나라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2003년 5.8%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이 높은 상병급여 수급율과 조기퇴직의 연계를 끊고자 1993년 단행한 복지개혁과 관련이 깊다. 영국은 스웨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큰 변화 없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독일은 영국과 유사하게 1995년

을 정점(영국 2.9%, 독일 2.7%)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4] 공공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보건부문에서 스웨덴은 1982년 8.4% 정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1990년대 초까지 스웨덴보다 낮았으나 2006년에는 역전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미국 7.3%, 영국 6.8%, 스웨덴 6.5%). 이는 최근 스웨덴이 보건부문 개혁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보건부문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GDP 대비 4%이다.

[그림 5-5] 공공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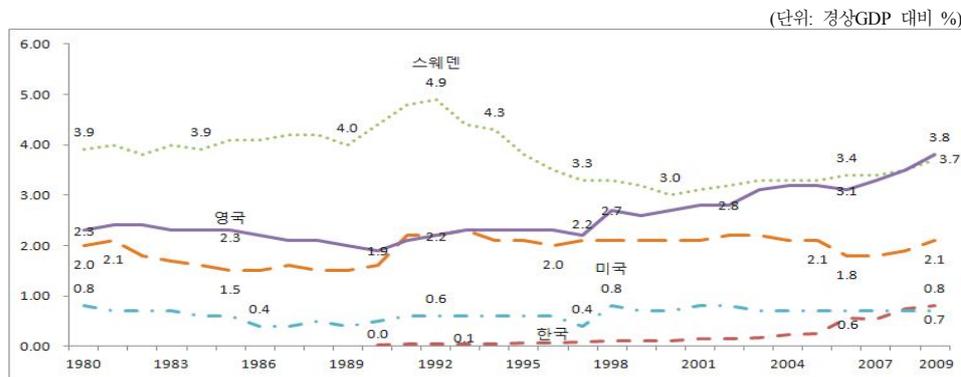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가족부문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1992년 4.9%로 정점을 찍고 1993년 복지개혁 이후 상당부분 감소하였다가 최근 미약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가족부문에서 눈여겨볼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스웨덴을 역전하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영국 3.8%, 스웨덴 3.7%).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가족부문의 지출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을 기점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림 5-6] 공공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적극적노동시장부문 역시 스웨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1994년 3년 동안 최고점(2.8%)을 유지하다가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또한 1980년대 중후반까지 비약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다가 1992년 1.5%를 정점으로 하였고 이후 2007년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1980년대의 고도실업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국영기업의 대규모적인 파산과 대량해고의 사태에 대처한 독일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1987년 0.8%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다소간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 0.5% 이후로 이내 감소하였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한 구조로 이루어진 관계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로 지출 수준도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5-7] 공공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 실업부문에서 스웨덴은 1993년 2.7%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8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은 1980년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을 역전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독일의 경우 2005년을 기점으로 일정기간 동안 실업부문에 대한 지출규모가 줄어들 수 있게 된 주된 배경으로는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기치로 한 Hartz개혁 보고서와 이에 기초하여 총 4단계에 걸쳐 도입된 Hartz 법률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5-8] 공공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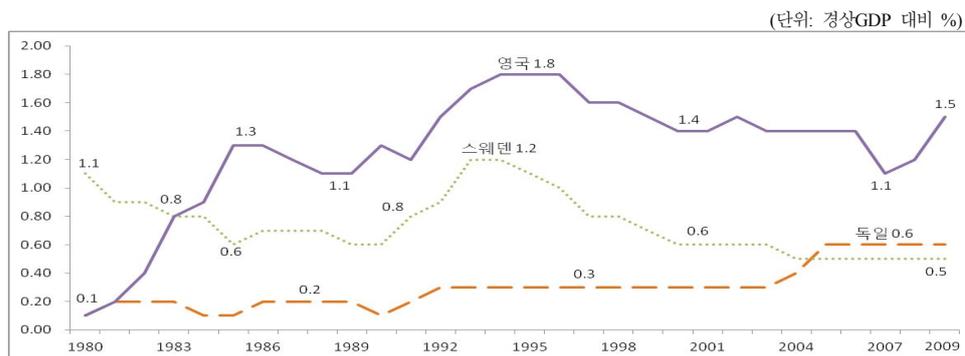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 주거부문을 살펴보면 1980년 영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84년 스웨덴을 역전하였고(영국 0.9%, 스웨덴 0.8%) 1996년 1.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7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영국과 대조적으로 1980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주거부문의 높은 지출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였고 1993년 1.2%로 회복했으나 또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2004년 소폭 증가 이후 스웨덴을 앞지르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6%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9] 공공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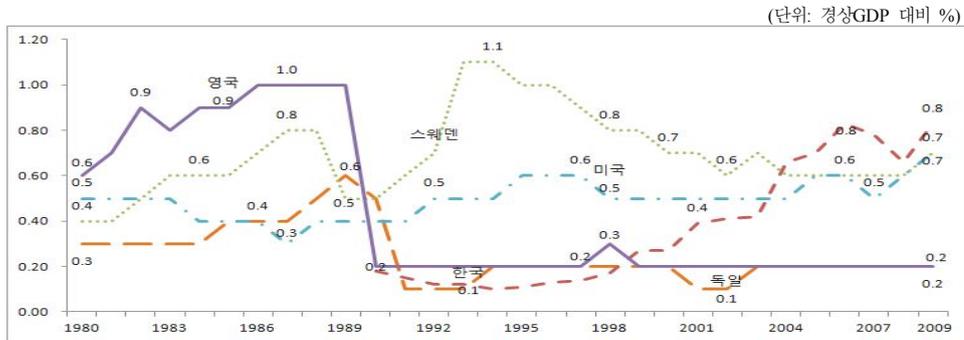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기타사회정책부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80년대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98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부터 0.2%~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1989년 0.6%를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0.1~0.2%의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미국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9년 가장 높은 0.7%를 기록했다. 한편 스웨덴은 1993년 복지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10] 공공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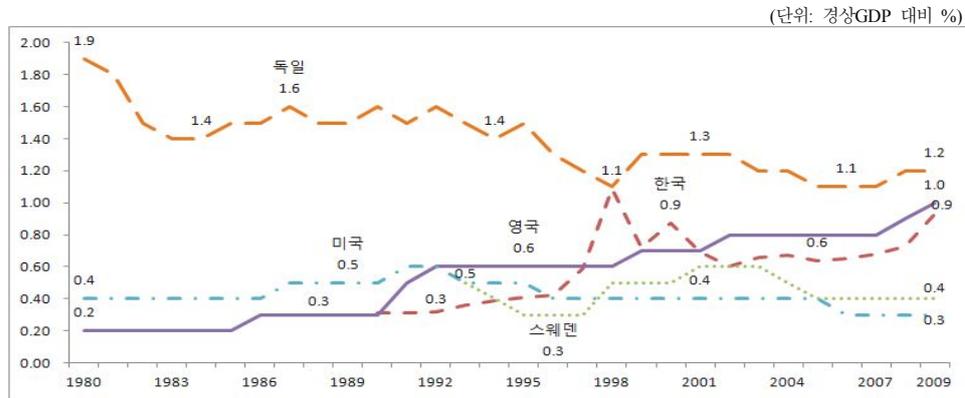
##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는 국가는 영국으로 지난 30년간 단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독일과 근소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독일에서 이처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임금계속지불법(Lohnfortzahlungsgesetz)’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 시 최초 6주간 사업주가 상병급여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일의 경우 여성의 모성

휴가 및 해고보상금 등이 기업 부담의 법정급여로서 운영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추이를 보이는데 1998년 1.1%의 정점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9년 0.9%로 회복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미국은 비교적 변화의 추이가 적은 편이다.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9년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0.4%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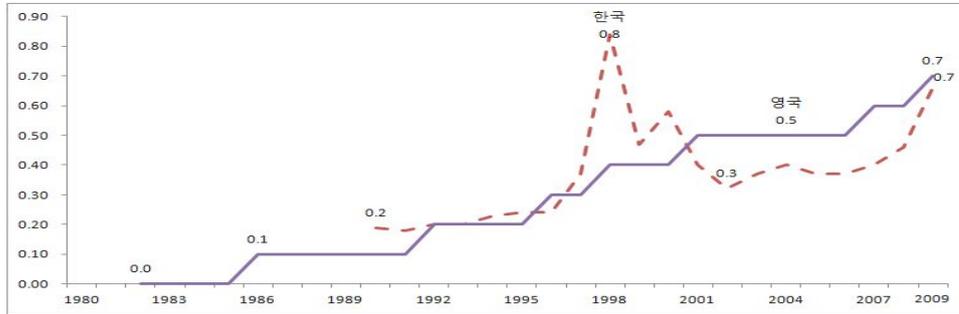
[그림 5-11] 주요국가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노령부문에서 영국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단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는 1998년 0.8%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9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1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노령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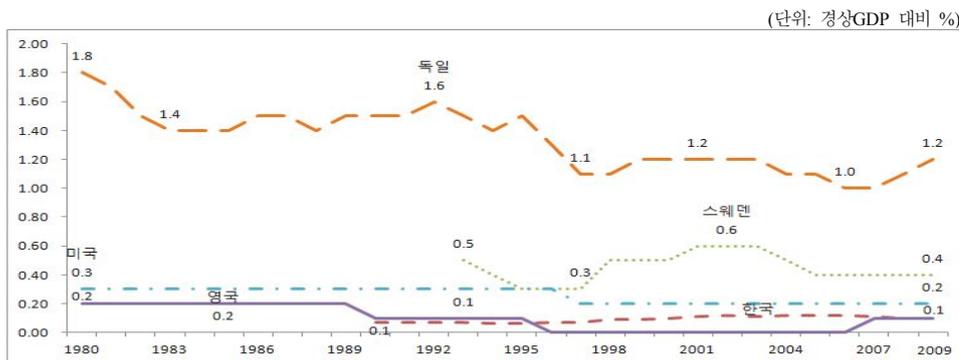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상병급여가 근로무능력관련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독일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와 근로무능력관련급여의 추이는 유사하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198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독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영국은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노령부문과 대조적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6년부터는 11년간 0%였고 2007년부터 0.1% 증가하였다.

한국은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990년을 기준으로 0.1%의 동일한 지출 수준을 나타낸다. 반면 스웨덴은 2003년 0.6% 정점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이후부터 GDP 대비 0.4%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3]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 3.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스웨덴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다음으로 독일과 영국, 미국,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은 1993년 36.2%로 상당히 높은 지출수준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1990년 23.3%로 최저점을 찍고 점차 증가하다가 2003년 29.0%를 정점으로 하여 이내 감소한 후 2008년 다시 증가하여 2003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 10월 3일의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Sozialunion)과 이에 근거한 연방정부와 사회보험제도의 대대적인 재정 이전 그리고 고도실업에 대처한 실업급여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영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 1990년 3.1%를 시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1999년 6.9% 이후 다소간 주춤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GDP 대비 10%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림 5-14]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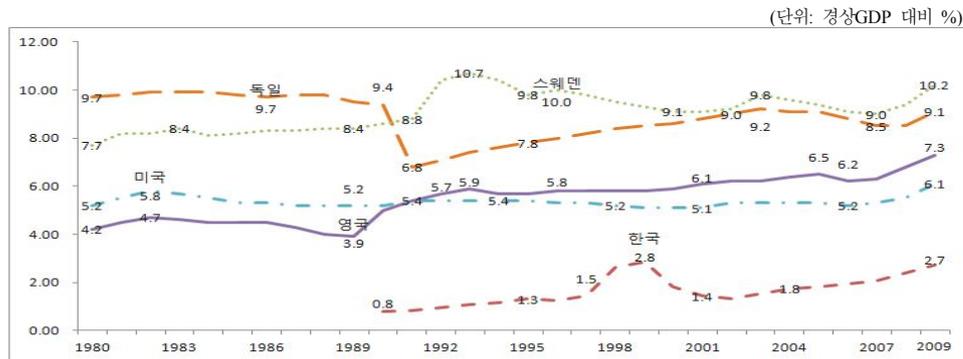
사회복지지출 노령부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를 비교해 국가간 지출 순위 변화가 주목된다. 독일은 1980년 9.7% 이후 10년간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1991년 6.8%의 최저점을 기록하며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9.2%로 회복하였고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대의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스웨덴은 1991년 독일을 역전하였고(스웨덴 8.8%, 독일 6.8%) 1993년 10.7%를 정점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7년 이후부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영국은 1989년 3.9%의 최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2년에는 미국을 앞섰고(영국 5.7%, 미국 5.4%) 이후부터 꾸준히 미국과의 격차를 넓혀왔다. 이에 반해 미국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좁은 편으로 2009년 6.1%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1999년 2.8%의 최고점 이후 다소간 감소하지만 이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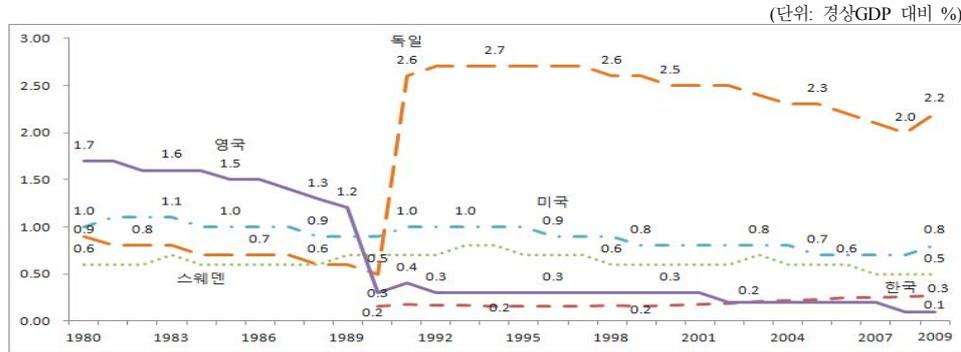
[그림 5-15] 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의 유족부문은 노령부문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 간 순위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1980년대에는 영국이 독보적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독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미국과 스웨덴, 우리나라, 영국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림 5-16] 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의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스웨덴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독일과 영국, 미국,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난다. 지난 20여년간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근로무능력관련급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반면 스웨덴은 2003년 6.4%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미약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5-17] 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관련급여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 보건부문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보건부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역동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1982년에 8.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1993년 복지개혁과 1996년 보건개혁 이후 상당부분 감소하다가 1999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5-18] 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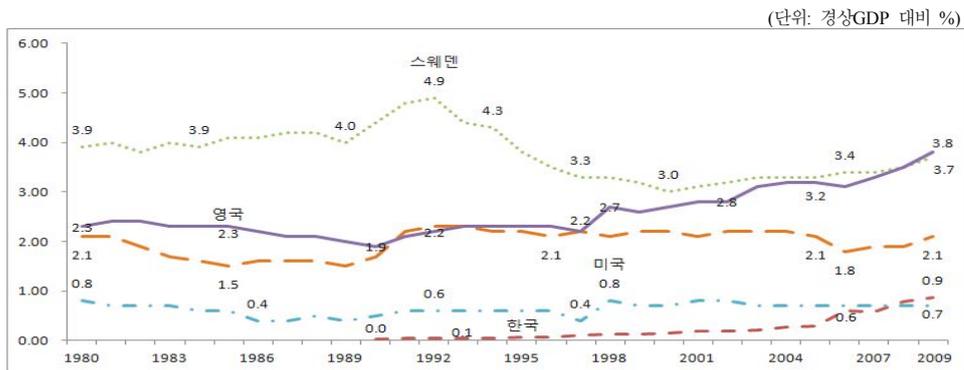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 가족부문 역시 스웨덴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1992년 4.9% 정점 이후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 역시 변화의 폭은 다르나 스웨덴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1992~1993년 2.3%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영국은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지출 수준을 높여왔고 2009년에는 스웨덴을 앞서게 되었다(영국 3.8%, 스웨덴 3.7%).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미국을 역전하였다(한국 0.8%, 미국 0.7%). 반면 미국은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이 좁게 나타난다.

[그림 5-19] 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의 적극적노동시장부문은 스웨덴의 지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99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 1.5%의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여 2007년 최저점 0.7%를 기록하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수준을 보이는데 영국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5-20] 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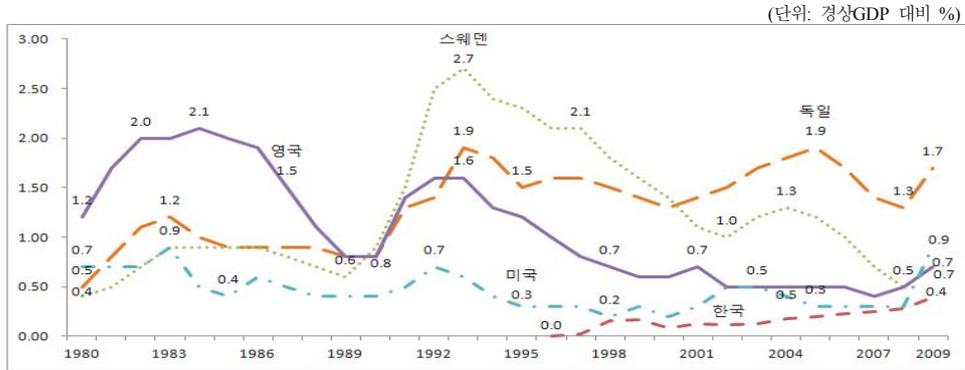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의 실업부문의 특징은 비교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도 2007년 또는 2008년을 기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스웨덴과 영국이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스웨덴과 영국은 1993년을 정점으로 하고 이후 두 국가 모두 다소 급격한 감소를 보여준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1993년과 2005년 두 번의 정점을 경험하고 2009년 1.7%로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은 다른 지출부문과 비교해 증감의 폭이 큰 편이며 최근 2008년 0.3%에서 2009년 0.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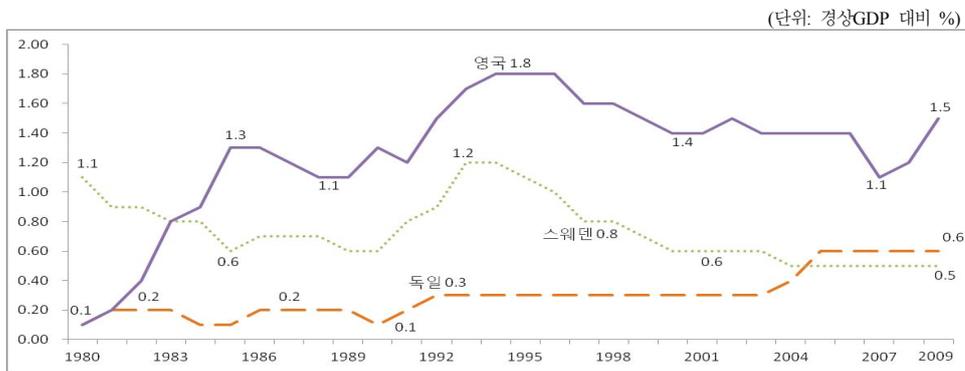
[그림 5-21] 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 주거부문은 영국의 변화 추이가 독보적인 수준을 나타내는데 198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1.8%를 정점으로 하여 다소간 감소하여 2007년 1.1% 최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1980년 초반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영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0.6%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5-22] 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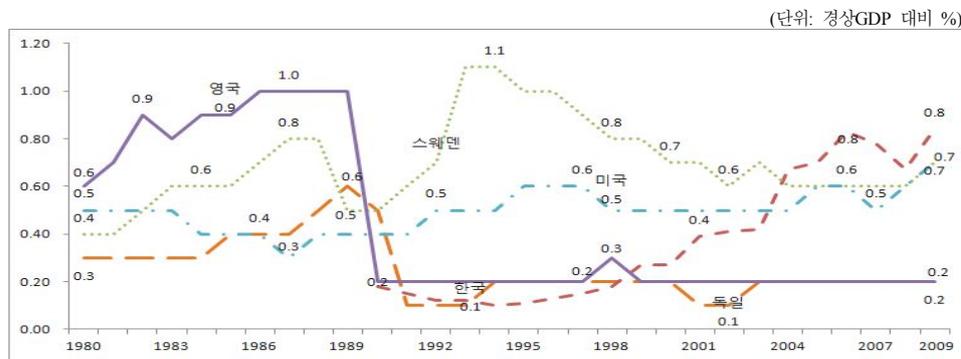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타사회정책부문 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변동사항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1989년 급격히 감소한 이후 0.2~0.3%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도 영국과 같이 1990년 초반에 감소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1993년 복지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부문과 비교해서 기타사회정책부문 지출이 높은 편이며 지난 30년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림 5-23] 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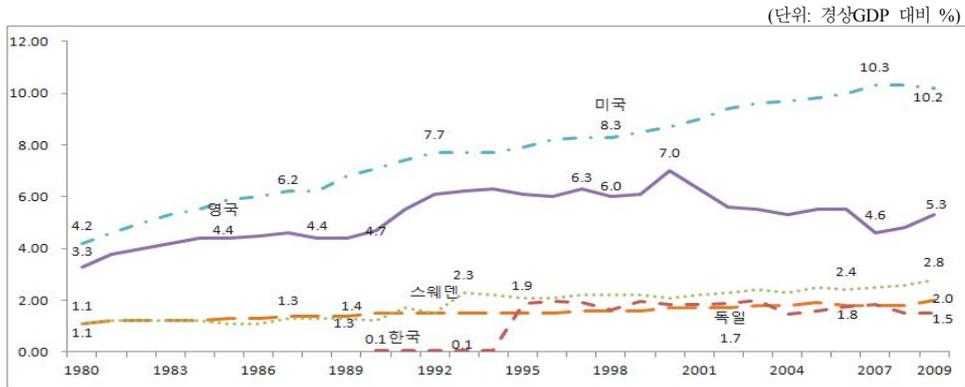
#### 4.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보면 미국의 지출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7~2008년 10.3%를 정점으로 2009년 소폭 감소하였다. 영국은 2000년 7.0% 정점을 찍고 상당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스웨덴과 독일,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완만한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복지문제는 국가에 의한 공공사회 복지의 형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민간사회복지는 종교단체, 노동자복지단

체 등이 국가의 공공부조제도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이 된다.

[그림 5-24] 주요국가의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노령부문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영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미국과 스웨덴, 독일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 30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8%로 주춤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영국을 4.4%로 앞섰으나 이내 감소하여 영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역시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2.4%로 정점을 나타낸다. 한편 독일은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25]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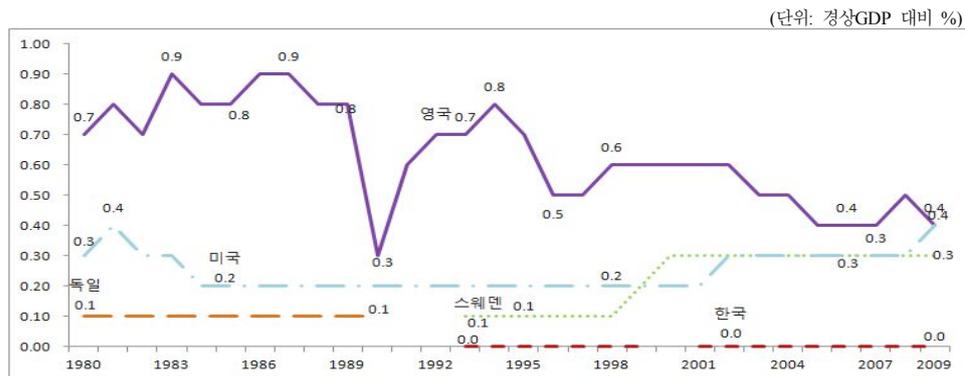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근로무능력부문은 영국의 추이가 가장 주목되는데 변화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 0.3%로 최저점을 찍고 1994년 다시 회복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1980년 초반에 소폭 감소한 이후 0.2%로 18년간 유지하다가 2002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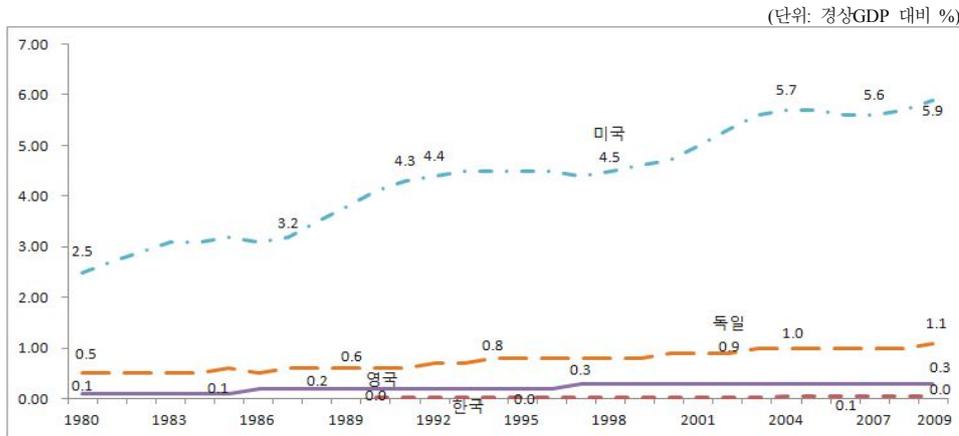
[그림 5-26]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보건부문은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독일과 영국, 우리나라 순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단계적으로 보건부문의 지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GDP 대비 5.9%가 정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영국,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5-27]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기타사회정책부문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2%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80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7~2008년 0%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0.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독일과 미국은 지출수준은 0~0.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28]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 5. 총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총사회복지지출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각각 비교한 앞의 내용과 다소 중복될 소지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예, 스웨덴, 한국)일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총합을 통해 한 국가의 복지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림 5-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사회복지지출은 스웨덴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1993년에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감소하다 2009년 33.0%로 회복 추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독일과 영국은 1990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고 2008년부터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영국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최고점 12.0%를 기록하였다.

[그림 5-29] 주요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노령부문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총사회복지지출 추이에서와 마찬가지로 1993년 가장 높은 수준 12.8%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감소양상을 보인다 2009년 12.6%로 예전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였다. 한편 노령부문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독일과 영국이다. 특히 독일은 1980년대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91년 7.5%로 급격히 감소하여 최하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영국은 1980년대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였지만 1990년부터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며 1999년에는 11.2%로 스웨덴을 역전하여(영국 11.2%, 스웨덴 10.9%)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1999년 2.9%로 최정점을 찍은 이후부터 감소하다가 2002년 1.3%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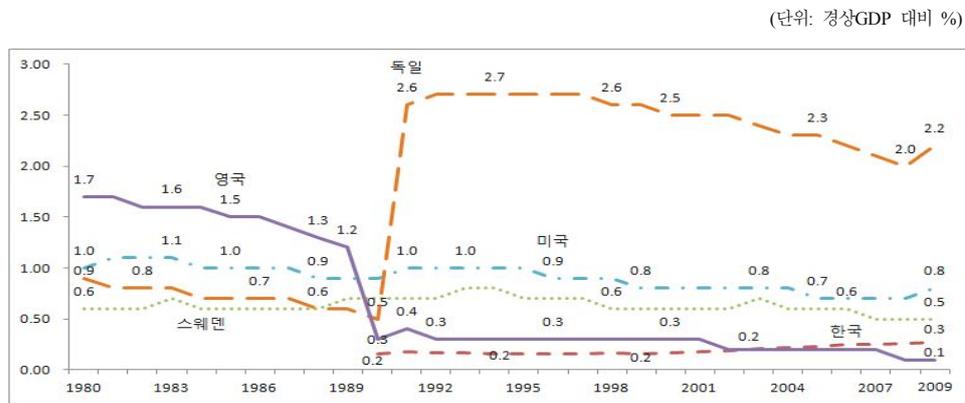
[그림 5-30] 총사회복지지출-노령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다음으로 유족부문의 노령부문과 달리 독일이 가장 독보적인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국가는 영국이다. 먼저 독일은 1991년 2.6%로 전년(1990년 0.5%)대비 5배가량 증가하는 비약적인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영국은 1980년대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1990년 0.3%로 전년(1989년 1.2%)대비 4배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5-31] 총사회복지지출-유족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근로무능력부문 총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높은 수준은 스웨덴이며 다음으로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순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은 지난 30년간 다른 국가에 비해 증감의 폭이 크게 나타나며 2003년에 정점인 6.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독일과 영국은 1995년에 각각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내고(독일 4.2%, 영국 3.7%), 2009년 유사한 지출 규모 수준(독일 3.5%, 영국 3.4%)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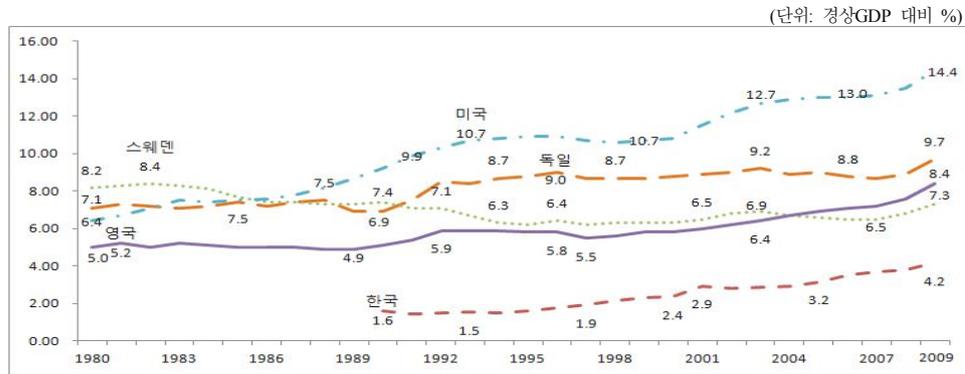
[그림 5-32] 총사회복지지출-근로무능력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총사회복지지출의 보건부문 국가별 순서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그리고 한국 순으로 나타난다.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스웨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일, 영국, 한국 역시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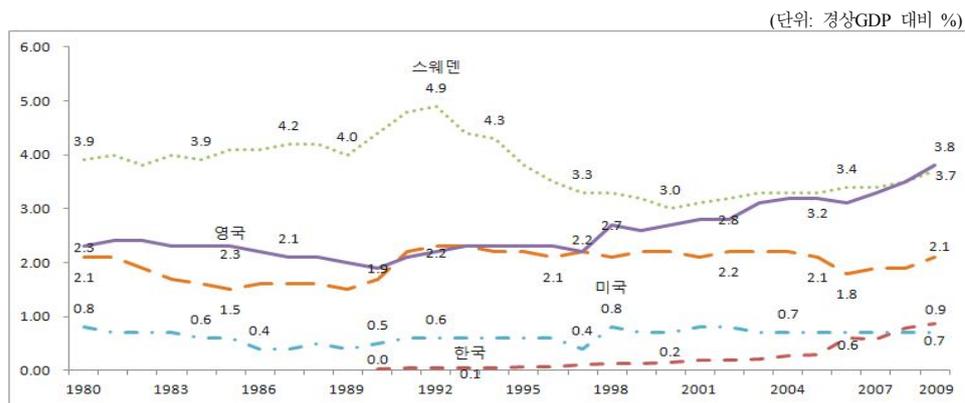
[그림 5-33] 총사회복지지출-보건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다음으로 가족부문 총사회복지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스웨덴이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영국이 스웨덴을 앞질러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고(영국 3.8%, 스웨덴 3.7%) 이어서 독일, 한국, 미국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 역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9년 0.8%로 미국(0.7%)보다 0.1%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스웨덴의 가족부문 지출은 1990년대 초보다 상당부분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한국의 가족부문 지출 투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5-34] 총사회복지지출-가족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총사회복지지출의 적극적노동시장부문은 전반적으로 증감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특히 스웨덴은 1992년부터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GDP 대비 2.8%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1.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 역시 1995년 1.5%로 최정점을 찍고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과 영국, 미국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적극적노동시장부문의 지출규모는 비슷하게 나타난다(한국 0.6%, 영국 0.3%, 미국 0.2%).

[그림 5-35] 총사회복지지출-적극적노동시장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사회복지지출의 실업부문은 국가별로 증감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 비약적인 증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1993년 GDP 대비 2.7%로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으나 이내 감소하여 2009년에는 3배 이상(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01년 스웨덴(독일 1.4%, 스웨덴 1.1%)을 앞질러 비교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은 1989년 0.8%로 급하락 이후 다소 회복 기세를 보였으나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미국, 한국과 같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2009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국 0.7%, 미국 0.9%, 한국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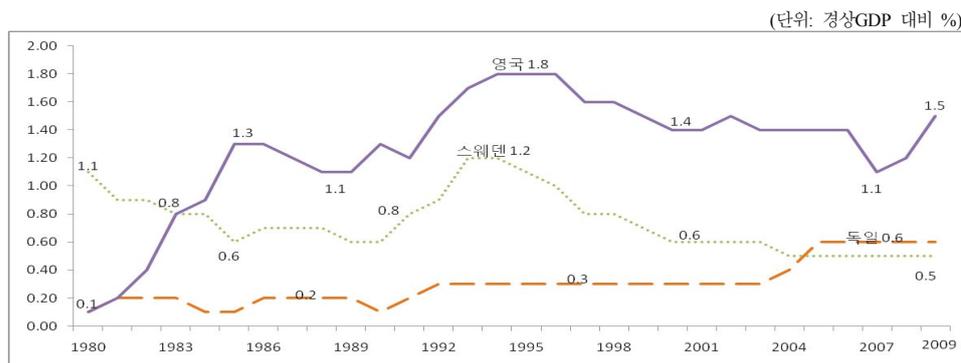
[그림 5-36] 총사회복지지출-실업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다음으로 주거부문 추이를 비교하면, 2009년 기준으로 영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독일, 스웨덴 순으로 나타난다(영국 1.5%, 독일 0.6%, 스웨덴 0.5%). 영국은 198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94-1996년 동안 1.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1.1%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009년, 1.5%). 다음으로 독일은 지난 24년간(1980-2004년) 스웨덴보다 낮은 수준에서 2005년 스웨덴을 역전하였다(독일 0.6%, 스웨덴 0.5%).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1980년 초반에는 영국과 독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반 침체기 이후 1993-1994년 1.2%에서 다시 감소하여 2009년 0.5%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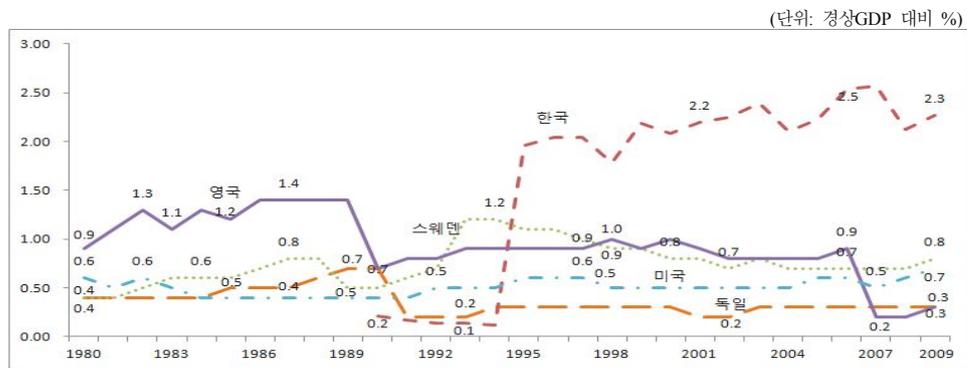
[그림 5-37] 총사회복지지출-주거부문 추이 비교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끝으로 기타사회정책부문을 살펴보면, 가장 뚜렷한 증가폭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은 1980년 후반에서 1990년 초반까지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5년 1.8%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후부터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영국은 1980년대에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1990년 2배 감소(0.7%)한 이후부터 소폭 증가하긴 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스웨덴, 미국과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완만한 추세를 보이며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5-38] 총사회복지지출-기타사회정책부문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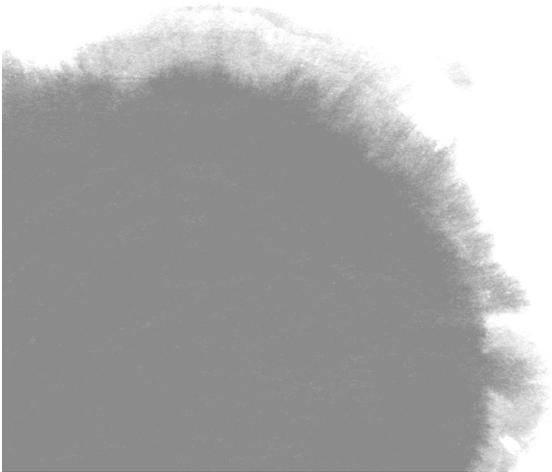
자료: OECD SOCX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 6장

K  
I  
H  
S  
A

향후 과제





## 제6장 향후 과제

OECD의 작성지침에 따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OECD의 추계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국내의 사회복지제도에 적용하여 사회복지지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OECD의 추상적인 작성지침의 해석에서 오는 차이와 각국의 제도를 포함하지 못하고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한계로 인해 추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OECD의 추계에 따라 국제비교가능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향후 지향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정례적으로 개정되는 OECD작성 기준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추계의 한계가 제기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추계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의 추계 준비

지금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부문의 지출의 추계는 OECD의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은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현금 및 서비스급여를 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보육지출은 이러한 보육료 지원 금액과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을 합산한 것을 비교하는데, 최근 OECD SOCX 개정판(2011)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즉 국가별 의무취학연령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지출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OECD는 각국의 의무취학연령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국가간 의무취학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의무취학연령 보다 어린 아동이 조기입학을 하거나 아동의 정서 및 안전을 이유로 입학유예하는 경우를 지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출액 전체에서 해당 아동 수를 적용한 추정치(estimate)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출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캐나다처럼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정액교부금(non-earmarked block-grant)을 통해 지방정부가 아동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거나 스위스처럼 지방정부가 보육에 지출하는 내역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지출을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inhabitants)에 대해 아동보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반적인 정액교부금으로 재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소득보장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회부조 수급자에 보육 지원은 일반적인 정액교부금을 통해 보조되고 있다.

OECD는 개정된 매뉴얼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지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그러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부터 바로 추계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매칭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지원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데이터의 생산 가능 여부에 대해 선행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취학연령 아동의 경우 입학연기와 조기입학 모두 행해지는 관계로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의 추계에 이를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해부터는 이러한 지출의 추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2. Loan에 대한 이자 지원 추계 준비

OECD SOCX는 원래 UN SNA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호 일치성을 위해 자본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OECD, 2012: para 92). 그러나 상환을 조건으로 받는 대출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출은 개인간 재분배나 강제적인 기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정책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저금리나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지원 금액은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OECD, 2012: para 93). 대표적인 사례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과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사업이다. OECD는 이자감면에 대한 추계의 필요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추계작성지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추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사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의 검토, 지원금의 발생시점이 국가 경기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만큼 실제 이차보전금의 흐름과 결산자료의 분석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3. 고용 관련 추계의 정확성 제고

현재 OECD 사회복지지출은 6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50개의 항목을 제출하고 있다. 12개 항목은 제도가 없음으로 미제출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15개국에서 관련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OECD의 정확한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 통계가 노령부문이 아니라 실업부문의 통계이며, 각국의 고용관련 법제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본 통계의 생산을 위해 선진국들의 고용관련 법제와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을 비교하고, 기존의 항목 및 제도와 관계를 고려하여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OECD가 ALMP database를 원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추계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와 재정흐름의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 사업 일부를 일반정부지출에서 살펴보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추계를 포함하여도 OECD에서 ALMP database를 통해 자료를 받는 동시에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원 자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보건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건부문 역시 OECD Health Database를 통해 지출을 추계한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다. 보건부문 지출의 증가와 중요도로 인해 지난 연구에서 보건부문의 지출 추계 방법과 추계결과,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역시 OECD ALMP database를 통해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계방법과 추계결과, 선진국과의 제도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모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할 때 포함되어야 하지만 누락될 수 있다. 혹은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고용노동부 일반사업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모두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반영하는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나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이 고용의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제도들과 비교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원 및 자료수집기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통계연감, 내부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관세청, 내부자료

국가보훈처, 교통통신요금 감면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내부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내부자료

기획재정부,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문화재청, 취약계층공능입장료 감면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 실태조사

별정우체국관리단, 공적연금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부자료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정형선(2011),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  
료·복지연구소(보건부문 지출자료)

통계청, 2011 사회조사(보건, 가족부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은행홈페이지, 국민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 기부금 및 모금관련 내부자료

## 2.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1), 조세개요

국가보훈처(2011), 보훈연감

김진욱(2007),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1, pp. 177-210.

남찬섭(2012),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유종일 편, 경제민주화 - 분배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 pp. 273-323. 모티브 북.

안상훈(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사회복지학회.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예산참고자료

Eurostat(2008), *ESSPROS Manual*.

OECD(2011), *Revenue Statistics 1965-2011*.

UN(2008), *2008 SNA*.

## 3. 웹페이지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SOCX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Index.aspx>)

Eurostat 홈페이지 ([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http://epp.eurostat.ec.europa.eu/statistics_explained/index.php/))

Glossary:ESSPROS)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4. 법령 정보

-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 근로기준법(제60조 유급질병휴가, 제74조 산전후휴가, 제93조 육아휴직)
-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동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제4조 법정퇴직금, 제12조 비과세소득, 제80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제51조·제52조 소득공제)
- 기부금품모집법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 의약품품질관리, 제30조의3·4: 중소기업, 제66·6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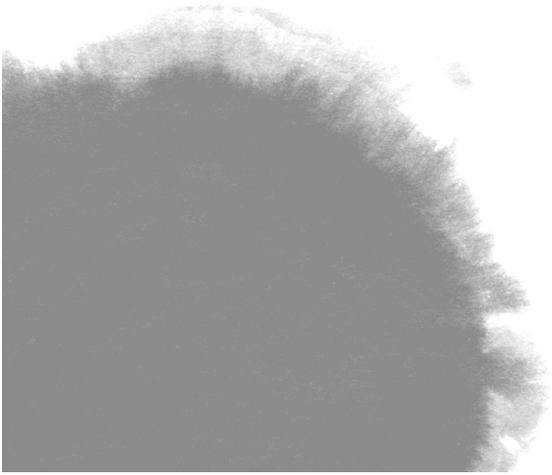
영농·영어조합법인, 제74조 비영리의료법인, 손금산입, 제85조 사회적기업, 제85조의6: 장애인표준사업장,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88조의2: 생계형저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 제97조의2: 국민주택, 제97조의3: 신축 임대주택, 제99조의3: 수도권 외 신축주택, 제100조의2~13: 근로장려금, 제105조 장애인용보장구, 제106조 희귀병환자)

개별소비세법(제18조 조건부면세)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정의, 제4조 지방세감면, 제17조 장애인용자동차,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제19조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20조 노인복지시설,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 제29조 국가유공자, 제31조 임대주택 등, 제33조 주택공급확대,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제38조 지방의료원 및 종교단체)

100







## 부록

- 부록 1.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 부록 2.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1)
- 부록 3.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 부록 4. OECD SOCX 가이드라인 전문/번역문



## 부록 1. 2011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부표 1〉 2011년도 사회복지지출 주요지표; 기능별

(단위: 십억원, %)

통계	구분	계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제도 및 재원						
공공사회 복지지출 (A)	계	112,894	25,965	3,326	6,014	50,448	11,569
	GDP 대비 비중	9.14	2.10	0.27	0.49	4.08	0.94
	일반정부지출 <sup>1)</sup>	41,503	5,056	1,394	2,521	10,667	11,060
	사회보험	70,762	20,512	1,932	3,274	39,781	509
	교통통신요금감면	629	396	-	219	-	-
법정민간 사회복지 지출(B)	계	14,952	11,617	-	1,322	1,223	604
	GDP 대비 비중	1.21	0.94	-	0.11	0.10	0.05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11,607	11,607	-	-	-	-
	산전후·질병휴가	1,531	-	-	927	-	603
	자동차책임보험	1,223	-	-	-	1,223	-
	교통통신요금감면	591	10	-	395	-	0
사회복지지출 (C=A+B)	계	127,845	37,582	3,326	7,336	51,672	12,172
	GDP 대비 비중	10.35	3.04	0.27	0.59	4.18	0.99
자발적민간사회 복지지출 (D)	계	19,011	800	5	46	651	1,141
	GDP 대비 비중	1.54	0.06	0.00	0.00	0.05	0.09
	기업부문	15,984	-	-	-	119*	1,033
	제3섹터	3,027	800	5	46	532	109
총사회복지지출 (E=C+D)	계	146,857	38,382	3,330	7,382	52,323	13,314
	GDP 대비 비중	11.89	3.11	0.27	0.60	4.24	1.08
순사회복지지출 <sup>3)</sup> (H=E+F-G)	계	148,053					
	요소GDP 대비 비중	13.46					
	조세혜택(F)	8,886					
	조세부담(G)	7,68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008					
	간접세	6,680					
경상GDP		1,235,161					
요소GDP		1,099,785					

주: 1) 중앙정부지출과 지방정부지출을 합한 것임.

2) 이중계산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순사회복지지출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부표 1〉 계속

(단위: 십억원, %)

계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구분		
					제도 및 재원	통계	
112,894	4,615	3,561	-	7,397	계		
9.14	0.37	0.29	-	0.60	GDP 대비 비중		공공사회 복지지출 (A)
41,503	3,423	-	-	7,382	일반정부지출 <sup>1)</sup>		
70,762	1,191	3,561	-	0	사회보험		
629	-	-	-	14	교통통신요금감면		
14,952	-	-	-	185	계		
1.21	-	-	-	0.02	GDP 대비 비중		법정민간 사회복지 지출(B)
11,617	-	-	-	-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		
1,531	-	-	-	-	산전후·질병휴가		
1,223	-	-	-	-	자동차책임보험		
591	-	-	-	185	교통통신요금감면		
127,845	4,615	3,561	-	7,582	계		사회복지지출 (C=A+B)
10.35	0.37	0.29	-	0.61	GDP 대비 비중		
19,011	-	-	-	16,369	계		자발적민간사회 복지지출 (D)
1.54	-	-	-	1.33	GDP 대비 비중		
15,984	-	-	-	14,832	기업부문		
3,027	-	-	-	1,536	제3섹터		
146,857	4,615	3,561	-	23,950	계		총사회복지지출 (E=C+D)
11.89	0.37	0.29	-	1.94	GDP 대비 비중		
148,053					계		순사회복지지출 <sup>3)</sup> (H=E+F-G)
13.46					요소GDP 대비 비중		
8,886					조세혜택(F)		
7,689					조세부담(G)		
1,008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6,680					간접세		
1,235,161					경상GDP		
1,099,785					요소GDP		

주: 1) 중앙정부지출과 지방정부지출을 합한 것임.  
 2) 이중계산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3) 순사회복지지출은 정책영역별로 구분되지 않음.

## 부록 2.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11)

〈부표 2〉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규모(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민간부문(D)
		공공부문(A)	법정민간부문(B)		
1991	16.9	17.2	16.9	19.9	3.6 <sup>1)</sup>
1992	22.5	23.0	23.3	20.0	0.6 <sup>1)</sup>
1993	17.2	17.1	16.0	26.5	28.3 <sup>1)</sup>
1994	18.9	19.1	17.9	28.4	10.3 <sup>1)</sup>
1995	85.6	24.6	25.0	21.4	3,948.6
1996	17.6	18.1	18.5	15.2	16.7
1997	18.3	23.0	19.0	55.2	9.1
1998	24.6	43.0	36.8	81.4	-16.1
1999	23.2	21.1	31.5	-27.8	31.2
2000	-6.2	-9.0	-13.9	33.0	3.7
2001	11.8	13.3	18.3	-14.5	7.4
2002	7.7	6.4	7.7	-3.8	12.2
2003	13.1	12.5	11.9	17.6	14.9
2004	9.6	19.9	21.0	10.3	-21.1
2005	11.3	11.0	12.2	-0.1	12.5
2006	18.8	19.2	20.5	6.0	16.9
2007	10.7	10.5	10.4	11.4	11.8
2008	9.6	14.7	14.7	13.7	-13.4
2009	17.8	19.9	18.8	32.9	5.3
2010	5.0	6.0	5.0	16.3	-1.9
2011	8.9	7.6	5.3	29.2	18.3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부표 3〉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100.0	21.6	-	-	5.5	10.4	54.2	1.1	0.9	-	-	-	6.2
1991	100.0	23.3	-	-	6.5	12.3	50.5	1.4	0.7	-	-	-	5.3
1992	100.0	26.1	-	-	5.8	12.7	48.5	1.4	1.3	-	-	-	4.2
1993	100.0	29.5	-	-	5.5	10.8	47.0	1.7	1.6	-	-	-	4.0
1994	100.0	31.1	-	-	5.3	12.0	45.3	1.7	1.1	-	-	-	3.4
1995	100.0	32.9	-	-	4.8	11.3	44.4	2.0	1.3	-	-	-	3.4
1996	100.0	29.5	-	-	4.6	11.1	47.8	2.1	1.2	0.1	0.1	-	3.7
1997	100.0	29.1	-	-	4.4	11.1	47.0	2.3	1.9	0.4	0.4	-	3.9
1998	100.0	34.8	-	-	3.4	8.1	38.8	2.1	6.3	3.1	3.1	-	3.4
1999	100.0	38.5	-	-	2.7	5.7	34.8	1.6	9.7	2.8	2.8	-	4.3
2000	100.0	26.0	-	-	3.6	7.8	45.2	2.3	8.0	1.6	1.6	-	5.5
2001	100.0	19.5	-	-	3.4	7.7	52.6	2.7	4.2	2.5	2.5	-	7.4
2002	100.0	19.8	-	-	3.7	8.5	51.4	2.7	3.6	2.3	2.3	-	8.0
2003	100.0	21.2	-	-	3.9	9.2	50.3	3.1	2.2	2.5	2.5	-	7.7
2004	100.0	22.4	-	-	3.6	8.8	45.5	3.9	1.9	2.9	2.9	-	11.0
2005	100.0	22.5	-	-	3.6	8.3	46.1	3.9	1.8	3.1	3.1	-	10.7
2006	100.0	20.9	-	-	3.3	7.6	44.8	7.7	1.6	3.1	3.1	-	11.1
2007	100.0	21.4	-	-	3.3	7.4	45.8	7.0	1.7	3.2	3.2	-	10.2
2008	100.0	23.0	-	-	3.1	6.9	43.1	8.8	3.8	3.3	3.3	-	7.8
2009	100.0	21.5	-	-	2.9	6.2	42.0	8.4	6.3	4.0	4.0	-	8.6
2010	100.0	22.7	-	-	2.8	5.3	45.0	8.6	4.7	3.4	3.4	-	7.3
2011	100.0	23.0	-	-	2.9	5.3	44.7	10.2	4.1	3.2	3.2	-	6.6

〈부표 4〉 기능별 공공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단위: %)

	공공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	-	-	-	-	-	-	-	-	-	-	-	-
1991	16.9	26.1	-	-	37.2	38.3	8.9	48.2	-14.0	-	-	-	0.2
1992	23.3	37.9	-	-	10.3	27.0	18.4	24.9	136.5	-	-	-	-2.3
1993	16.0	31.2	-	-	9.3	-1.1	12.4	38.7	39.6	-	-	-	9.3
1994	17.9	24.7	-	-	15.2	30.5	13.8	20.2	-20.6	-	-	-	1.1
1995	25.0	31.8	-	-	12.0	17.6	22.5	41.6	46.9	-	-	-	25.4
1996	18.5	6.4	-	-	13.0	16.5	27.5	28.9	9.2	-	-	-	27.5
1997	19.0	17.4	-	-	13.8	19.1	16.9	27.1	95.8	652.8	652.8	-	26.5
1998	36.8	63.6	-	-	6.7	-0.4	12.9	28.1	352.6	915.3	915.3	-	19.3
1999	31.5	45.6	-	-	3.0	-6.9	18.1	-3.5	100.7	17.1	17.1	-	66.4
2000	-13.9	-41.8	-	-	15.5	17.8	11.9	25.5	-29.2	-49.7	-49.7	-	10.2
2001	18.3	-11.3	-	-	12.7	17.2	37.6	41.6	-38.2	79.5	79.5	-	58.1
2002	7.7	9.1	-	-	16.4	18.7	5.1	8.1	-6.0	-1.2	-1.2	-	16.9
2003	11.9	19.9	-	-	17.1	20.2	9.6	24.6	-30.6	23.4	23.4	-	7.4
2004	21.0	28.0	-	-	14.3	15.9	9.6	55.2	0.9	40.6	40.6	-	72.2
2005	12.2	12.6	-	-	10.3	6.1	13.6	12.3	10.0	21.0	21.0	-	9.7
2006	20.5	12.1	-	-	11.0	10.6	17.2	135.2	5.3	18.4	18.4	-	24.5
2007	10.4	13.2	-	-	10.6	7.4	12.8	0.3	16.3	17.4	17.4	-	1.4
2008	14.7	23.4	-	-	7.9	6.9	8.1	45.0	160.7	17.7	17.7	-	-11.6
2009	18.8	10.8	-	-	9.7	7.3	15.7	13.0	95.6	43.7	43.7	-	31.3
2010	5.0	11.1	-	-	3.7	-10.6	12.6	7.9	-22.1	-10.4	-10.4	-	-10.9
2011	5.3	6.5	-	-	9.6	5.7	4.5	25.5	-8.3	-3.4	-3.4	-	-5.9

〈부표 5〉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 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100.0	60.9	60.9	-	-	24.1	15.0	-	-	-	-	-
1991	100.0	59.9	59.9	-	-	23.5	16.6	-	-	-	-	-
1992	100.0	61.3	61.3	-	-	22.4	16.3	-	-	-	-	-
1993	100.0	55.6	55.6	-	-	19.1	25.4	-	-	-	-	-
1994	100.0	57.7	57.7	-	-	15.9	26.3	-	-	-	-	-
1995	100.0	58.7	58.7	-	0.0	14.6	26.3	-	-	-	-	0.4
1996	100.0	56.5	56.5	-	0.0	15.6	27.4	-	-	-	-	0.5
1997	100.0	62.4	62.4	-	0.0	12.2	22.2	2.8	-	-	-	0.4
1998	100.0	77.7	77.7	-	0.0	8.0	12.4	1.7	-	-	-	0.2
1999	100.0	66.4	66.3	-	0.0	12.8	16.6	3.9	-	-	-	0.3
2000	100.0	66.5	66.5	-	-	11.9	17.3	4.1	-	-	-	0.2
2001	100.0	58.2	58.1	-	-	16.0	18.7	6.9	-	-	-	0.2
2002	100.0	54.4	54.2	-	-	20.2	19.0	6.1	-	-	-	0.3
2003	100.0	56.8	56.6	-	-	17.2	19.2	6.3	-	-	-	0.4
2004	100.0	58.6	58.5	-	-	17.5	17.2	6.5	-	-	-	0.2
2005	100.0	57.1	57.1	-	-	18.7	18.5	5.5	-	-	-	0.2
2006	100.0	56.4	56.3	-	-	18.2	18.9	6.2	-	-	-	0.3
2007	100.0	59.9	55.6	4.2	-	15.7	17.0	7.0	-	-	-	0.5
2008	100.0	63.3	52.9	10.4	-	14.3	14.9	6.8	-	-	-	0.7
2009	100.0	70.3	51.1	19.2	-	11.0	12.0	5.3	-	-	-	1.5
2010	100.0	73.3	42.6	30.7	-	9.7	10.7	4.9	-	-	-	1.5
2011	100.0	77.7	35.7	41.9	-	8.8	8.2	4.0	-	-	-	1.2

〈부표 6〉 기능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증감률)

(단위: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1990	-	-	-	-	-	-	-	-	-	-	-	-
1991	19.9	18.0	18.0	-	-	16.7	32.7	-	-	-	-	-
1992	20.0	22.9	22.9	-	-	14.3	17.8	-	-	-	-	-
1993	26.5	14.6	14.6	-	-	7.9	96.9	-	-	-	-	-
1994	28.4	33.4	33.4	-	-	7.3	33.3	-	-	-	-	-
1995	21.4	23.5	23.5	-	-	11.0	21.4	-	-	-	-	-
1996	15.2	10.8	10.8	-	39.1	23.7	20.1	-	-	-	-	39.1
1997	55.2	71.6	71.6	-	26.2	20.8	25.7	-	-	-	-	26.2
1998	81.4	125.8	125.8	-	68.6	18.7	1.4	10.6	-	-	-	7.1
1999	-27.8	-38.3	-38.3	-	5.7	16.4	-3.4	63.2	-	-	-	-3.6
2000	33.0	33.3	33.3	-	-100.0	23.1	38.7	38.8	-	-	-	2.4
2001	-14.5	-25.2	-25.2	-	-	15.0	-7.7	45.7	-	-	-	-6.5
2002	-3.8	-10.0	-10.3	-	-	21.6	-2.1	-15.8	-	-	-	32.0
2003	17.6	22.8	22.8	-	-	0.3	18.9	23.2	-	-	-	46.7
2004	10.3	13.7	14.1	-	-	11.9	-0.9	12.7	-	-	-	-36.6
2005	-0.1	-2.6	-2.6	-	-	6.7	7.1	-15.1	-	-	-	2.7
2006	6.0	4.6	4.6	-	-	3.5	8.6	19.4	-	-	-	21.8
2007	11.4	18.3	10.0	-	-	-3.9	-0.3	25.3	-	-	-	82.2
2008	13.7	20.3	8.1	182.2	-	3.5	-0.0	10.3	-	-	-	77.2
2009	32.9	47.6	28.4	145.3	-	2.2	6.8	3.9	-	-	-	168.1
2010	16.3	21.2	-3.1	85.8	-	2.0	3.6	7.0	-	-	-	21.9
2011	29.2	37.0	8.5	76.5	-	18.3	-0.9	7.2	-	-	-	5.4

〈부표 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100.0	25.5	6.0	-	5.0	11.8	50.3	1.0	0.8	-	-	-	5.6
1991	100.0	27.0	6.0	-	5.8	13.5	47.1	1.3	0.6	-	-	-	4.8
1992	100.0	29.5	6.0	-	5.2	13.6	45.3	1.3	1.2	-	-	-	3.8
1993	100.0	32.2	5.9	-	4.9	11.7	44.7	1.5	1.4	-	-	-	3.6
1994	100.0	34.2	6.6	-	4.7	12.4	43.1	1.5	1.0	-	-	-	3.0
1995	100.0	35.8	6.6	-	4.3	11.6	42.4	1.7	1.1	-	-	-	3.1
1996	100.0	32.4	6.2	-	4.1	11.6	45.6	1.9	1.0	0.1	0.1	-	3.3
1997	100.0	33.7	8.6	-	3.8	11.2	43.5	2.4	1.7	0.4	0.4	-	3.4
1998	100.0	42.3	13.6	-	2.8	8.0	34.1	2.1	5.2	2.6	2.6	-	2.9
1999	100.0	41.4	6.9	-	2.4	6.5	32.9	1.8	8.7	2.5	2.5	-	3.9
2000	100.0	32.2	10.1	-	3.0	8.4	41.0	2.6	6.7	1.4	1.4	-	4.7
2001	100.0	24.0	6.7	-	3.0	8.7	48.7	3.2	3.7	2.2	2.2	-	6.6
2002	100.0	23.4	5.6	-	3.3	9.7	48.0	3.1	3.2	2.0	2.0	-	7.2
2003	100.0	25.1	6.2	-	3.4	10.0	46.9	3.4	2.0	2.2	2.2	-	6.9
2004	100.0	26.0	5.9	-	3.3	9.7	42.7	4.2	1.7	2.6	2.6	-	9.9
2005	100.0	25.6	5.1	-	3.3	9.2	43.6	4.1	1.7	2.8	2.8	-	9.8
2006	100.0	23.7	4.5	-	3.0	8.5	42.7	7.5	1.5	2.8	2.8	-	10.2
2007	100.0	24.5	4.5	0.3	3.0	8.1	43.5	7.0	1.6	3.0	3.0	-	9.4
2008	100.0	26.3	4.2	0.8	2.9	7.5	40.9	8.6	3.5	3.1	3.1	-	7.3
2009	100.0	25.8	4.5	1.7	2.6	6.7	39.4	8.1	5.8	3.7	3.7	-	8.0
2010	100.0	27.7	4.1	3.0	2.6	5.7	41.7	8.2	4.2	3.1	3.1	-	6.8
2011	100.0	29.4	4.2	4.9	2.6	5.7	40.4	9.5	3.6	2.8	2.8	-	5.9

〈부표 8〉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정년 퇴직자의 법정 퇴직금	퇴직 연금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7.실업	실업 보상	8.주거	9.기타	
1990	-	-	-	-	-	-	-	-	-	-	-	-	-
1991	17.2	24.2	18.0	-	37.2	33.9	9.6	48.2	-14.0	-	-	-	0.2
1992	23.0	34.6	22.9	-	10.3	24.8	18.4	24.9	136.5	-	-	-	-2.3
1993	17.1	27.8	14.6	-	9.3	0.3	15.4	38.7	39.6	-	-	-	9.3
1994	19.1	26.3	33.4	-	15.2	26.5	15.0	20.2	-20.6	-	-	-	1.1
1995	24.6	30.2	23.5	-	12.1	16.6	22.4	41.6	46.9	-	-	-	27.1
1996	18.1	7.2	10.8	-	13.0	17.5	27.0	28.9	9.2	-	-	-	27.7
1997	23.0	27.7	71.6	-	13.8	19.4	17.4	52.2	95.8	652.8	652.8	-	26.5
1998	43.0	79.5	125.8	-	6.7	2.5	12.1	25.2	352.6	915.3	915.3	-	19.2
1999	21.1	18.7	-38.3	-	3.0	-2.8	16.7	6.3	100.7	17.1	17.1	-	65.5
2000	-9.0	-29.2	33.3	-	15.5	18.9	13.3	28.4	-29.2	-49.7	-49.7	-	10.2
2001	13.3	-15.7	-25.2	-	12.7	16.8	34.7	42.6	-38.2	79.5	79.5	-	57.6
2002	6.4	3.8	-10.3	-	16.4	19.3	4.8	2.2	-6.0	-1.2	-1.2	-	17.0
2003	12.5	20.6	22.8	-	17.1	15.9	9.9	24.3	-30.6	23.4	23.4	-	7.6
2004	19.9	24.4	14.1	-	14.3	15.2	9.1	46.6	0.9	40.6	40.6	-	71.5
2005	11.0	9.1	-2.6	-	10.3	6.2	13.3	8.0	10.0	21.0	21.0	-	9.6
2006	19.2	10.6	4.6	-	11.0	9.4	16.9	121.1	5.3	18.4	18.4	-	24.5
2007	10.5	14.2	10.0	-	10.6	5.4	12.4	2.0	16.3	17.4	17.4	-	1.6
2008	14.7	22.8	8.1	182.2	7.9	6.4	7.8	42.2	160.7	17.7	17.7	-	-11.2
2009	19.9	17.9	28.4	145.3	9.7	6.5	15.5	12.4	95.6	43.7	43.7	-	32.4
2010	6.0	13.5	-3.1	85.8	3.7	-8.8	12.3	7.9	-22.1	-10.4	-10.4	-	-10.4
2011	7.6	14.4	8.5	76.5	9.6	7.7	4.3	24.5	-8.3	-3.4	-3.4	-	-5.7



## 〈부표 9〉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합계	5,989	7,021	8,632	10,104	12,030	14,984	17,701	21,769
공공 부문	소계	5,398	6,312	7,783	9,029	10,649	13,307	15,769	18,770
	정부 <sup>주)</sup>	1,501	1,775	2,029	2,287	2,665	3,202	3,928	4,887
	사회보험	3,896	4,539	5,752	6,744	7,985	10,068	11,798	13,825
	공적연금	1,233	1,569	2,139	2,783	3,450	4,478	4,724	5,506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4,452	5,692	6,609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703	934	855	981	1,137	1,358	1,560
	고용보험	-	-	-	-	-	2	24	150
	장기요양보험	-	-	-	-	-	-	-	-
	공기업	-	-	-	-	-	37	43	59
	민간 부문	소계	591	708	850	1,075	1,380	1,676	1,932
법정퇴직금		359	424	521	597	797	984	1,091	1,872
퇴직연금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85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289	343
민간복지서비스		-	-	-	-	-	16	22	34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118	139	273	363	441	530	666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표 9〉 계속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31,120	37,700	34,309	38,866	41,337	46,500	55,737
공공 부문	소계	25,679	33,771	29,084	34,398	37,036	41,442	50,156
	정부	6,559	9,158	9,070	10,518	11,784	12,403	17,614
	사회보험	19,037	24,513	19,875	23,694	25,042	28,792	32,226
	공적연금	8,939	13,049	7,650	6,708	7,319	8,899	10,293
	건강보험	7,489	8,649	9,776	13,875	14,353	15,756	17,234
	산업재해 보상보험	1,454	1,277	1,460	1,751	2,027	2,495	2,877
	고용보험	1,155	1,539	989	1,361	1,343	1,642	1,822
	장기요양보험	-	-	-	-	-	-	-
	공기업	81	100	139	185	210	246	317
	민간 부문	소계	5,441	3,929	5,225	4,469	4,301	5,058
법정퇴직금		4,226	2,606	3,474	2,599	2,330	2,863	3,266
퇴직연금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94	153	212	309	260	321	362
유급질병 휴가급여		397	451	506	571	679	633	701
민간복지서비스		49	66	127	155	214	271	289
자동차 책임보험금		676	653	905	835	817	972	963

## 〈부표 9〉 계속

(단위: 십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부재원	재원
61,873	73,760	81,482	93,429	112,060	118,775	127,845	합계	
56,297	67,849	74,899	85,941	102,105	107,202	112,894	소계	공공 부문
19,225	25,615	27,060	32,517	41,097	40,156	41,503	정부	
36,667	41,776	47,308	52,861	60,430	66,440	70,762	사회보험	
12,093	13,330	15,098	17,382	18,649	20,911	22,855	공적연금	
19,236	22,335	25,433	27,311	30,921	34,785	36,993	건강보험	
3,048	3,196	3,288	3,446	3,494	3,549	3,650	산업재해 보상보험	
2,289	2,914	3,488	4,436	6,141	5,364	5,262	고용보험	
-	-	-	285	1,224	1,830	2,002	장기요양보험	
406	460	532	564	578	606	629	공기업	
5,576	5,911	6,583	7,488	9,955	11,573	14,952	소계	
3,182	3,330	3,663	3,959	5,082	4,925	5,344	법정퇴직금	
-	-	276	779	1,910	3,549	6,263	퇴직연금	
307	366	459	506	526	563	603	산전후 휴가급여	
751	757	695	697	694	714	927	유급질병 휴가급여	
305	338	373	431	551	588	591	민간복지서비스	
1,031	1,119	1,117	1,116	1,192	1,235	1,223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10〉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	17.2	23.0	17.1	19.1	24.6	18.1	23.0	43.0	21.1	-9.0
공공 부문	소계	-	16.9	23.3	16.0	17.9	25.0	18.5	19.0	36.8	31.5	-13.9
	정부 <sup>주)</sup>	-	18.3	14.3	12.7	16.5	20.2	22.7	24.4	34.2	39.6	-1.0
	사회보험	-	16.5	26.7	17.2	18.4	26.1	17.2	17.2	37.7	28.8	-18.9
	공적연금	-	27.3	36.3	30.1	24.0	29.8	5.5	16.6	62.3	46.0	-41.4
	건강보험	-	6.7	18.2	15.9	14.4	25.3	27.9	16.1	13.3	15.5	13.0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2	32.8	-8.4	14.7	15.8	19.5	14.8	-6.8	-12.2	14.3
	고용보험	-	-	-	-	-	-	1,100.0	523.3	671.9	33.3	-35.7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공기업	-	-	-	-	-	-	17.4	37.2	37.3	23.5	38.0
	민간 부문	소계	-	19.9	20.0	26.5	28.4	21.4	15.2	55.2	81.4	-27.8
법정퇴직금		-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38.3	33.3
퇴직연금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10.6	63.2	38.7
유급질병 휴가급여		-	16.7	14.3	7.9	7.3	6.8	23.0	18.7	15.7	13.6	12.2
민간복지서비스		-	-	-	-	-	-	41.6	51.9	44.8	35.1	93.9
자동차 책임보험금		-	32.7	17.8	96.9	33.3	21.4	20.1	25.7	1.4	-3.4	38.7

주: 중앙 및 지방정부  
취약계층의 교통·통신 요금 감면 포함

## 〈부표 10〉 계속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부재원	재원
13.3	6.4	12.5	19.9	11.0	19.2	10.5	14.7	19.9	6.0	7.6	합계	
18.3	7.7	11.9	21.0	12.2	20.5	10.4	14.7	18.8	5.0	5.3	소계	공공 부문
16.0	12.0	5.3	42.0	9.1	33.2	5.6	20.2	26.4	-2.3	3.4	정부	
19.2	5.7	15.0	11.9	13.8	13.9	13.2	11.7	14.3	9.9	6.5	사회보험	
-12.3	9.1	21.6	15.7	17.5	10.2	13.3	15.1	7.3	12.1	9.3	공적연금	
41.9	3.4	9.8	9.4	11.6	16.1	13.9	7.4	13.2	12.5	6.3	건강보험	
19.9	15.8	23.1	15.3	5.9	4.8	2.9	4.8	1.4	1.6	2.8	산업재해 보상보험	
37.6	-1.3	22.3	11.0	25.6	27.3	19.7	27.2	38.4	-12.7	-1.9	고용보험	
-	-	-	-	-	-	-	-	328.9	49.6	9.4	장기요양보험	
33.8	13.2	17.4	28.7	28.2	13.2	15.7	5.9	2.5	5.0	3.7	공기업	
-14.5	-3.8	17.6	10.3	-0.1	6.0	11.4	13.7	32.9	16.3	29.2	소계	
-25.2	-10.3	22.8	14.1	-2.6	4.6	10.0	8.1	28.4	-3.1	8.5	법정퇴직금	
-	-	-	-	-	-	-	182.2	145.3	85.8	76.5	퇴직연금	
45.7	-15.8	23.2	12.7	-15.1	19.4	25.3	10.3	3.9	7.0	7.2	산전후 휴가급여	
12.9	18.8	-6.8	10.8	7.1	0.9	-8.2	0.3	-0.5	2.9	29.9	유급질병 휴가급여	
21.6	38.3	26.5	6.9	5.4	10.9	10.3	15.6	27.7	6.8	0.5	민간복지서비스	
-7.7	-2.1	18.9	-0.9	7.1	8.6	-0.3	-0.0	6.8	3.6	-0.9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11〉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90.1	89.9	90.2	89.4	88.5	88.8	89.1	86.2	82.5	89.6	84.8
	정부 <sup>주)</sup>	25.1	25.3	23.5	22.6	22.2	21.4	22.2	22.4	21.1	24.3	26.4
	사회보험	65.1	64.6	66.6	66.7	66.4	67.2	66.7	63.5	61.2	65.0	57.9
	공적연금	20.6	22.3	24.8	27.5	28.7	29.9	26.7	25.3	28.7	34.6	22.3
	건강보험	35.5	32.3	31.0	30.7	29.5	29.7	32.2	30.4	24.1	22.9	28.5
	산업재해 보상보험	9.0	10.0	10.8	8.5	8.2	7.6	7.7	7.2	4.7	3.4	4.3
	고용보험	-	-	-	-	-	0.0	0.1	0.7	3.7	4.1	2.9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공기업	-	-	-	-	-	0.2	0.2	0.3	0.3	0.3	0.4
	민간 부문	소계	9.9	10.1	9.8	10.6	11.5	11.2	10.9	13.8	17.5	10.4
법정퇴직금		6.0	6.0	6.0	5.9	6.6	6.6	6.2	8.6	13.6	6.9	10.1
퇴직연금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0.4	0.3	0.4	0.6
유급질병 휴가급여		2.4	2.4	2.2	2.0	1.8	1.6	1.6	1.6	1.3	1.2	1.5
민간복지서비스		-	-	-	-	-	0.1	0.1	0.2	0.2	0.2	0.4
자동차 책임보험금		1.5	1.7	1.6	2.7	3.0	2.9	3.0	3.1	2.2	1.7	2.6

주: 중앙 및 지방정부

## 〈부표 11〉 계속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부재원	재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88.5	89.6	89.1	90.0	91.0	92.0	91.9	92.0	91.1	90.3	88.3	소계	공공 부문
27.1	28.5	26.7	31.6	31.1	34.7	33.2	34.8	36.7	33.8	32.5	정부	
61.0	60.6	61.9	57.8	59.3	56.6	58.1	56.6	53.9	55.9	55.3	사회보험	
17.3	17.7	19.1	18.5	19.5	18.1	18.5	18.6	16.6	17.6	17.9	공적연금	
35.7	34.7	33.9	30.9	31.1	30.3	31.2	29.2	27.6	29.3	28.9	건강보험	
4.5	4.9	5.4	5.2	4.9	4.3	4.0	3.7	3.1	3.0	2.9	산업재해 보상보험	
3.5	3.2	3.5	3.3	3.7	4.0	4.3	4.7	5.5	4.5	4.1	고용보험	
-	-	-	-	-	-	-	0.3	1.1	1.5	1.6	장기요양보험	
0.5	0.5	0.5	0.6	0.7	0.6	0.7	0.6	0.5	0.5	0.5	공기업	
11.5	10.4	10.9	10.0	9.0	8.0	8.1	8.0	8.9	9.7	11.7	소계	
6.7	5.6	6.2	5.9	5.1	4.5	4.5	4.2	4.5	4.1	4.2	법정퇴직금	
-	-	-	-	-	-	0.3	0.8	1.7	3.0	4.9	퇴직연금	
0.8	0.6	0.7	0.6	0.5	0.5	0.6	0.5	0.5	0.5	0.5	산전후 휴가급여	
1.5	1.6	1.4	1.3	1.2	1.0	0.9	0.7	0.6	0.6	0.7	유급질병 휴가급여	
0.4	0.5	0.6	0.5	0.5	0.5	0.5	0.5	0.5	0.5	0.5	민간복지서비스	
2.1	2.0	2.1	1.7	1.7	1.5	1.4	1.2	1.1	1.0	1.0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12〉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5,989	7,021	8,632	10,104	12,030	14,984	17,701	21,769	31,120	37,700	34,309
공공 <sup>1)</sup> 부조	소계	511	552	604	707	706	817	995	1,223	1,550	2,373	2,758
	기초생활보장	511	552	604	707	706	817	995	1,223	1,550	2,373	2,758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사회 보상	소계	355	485	524	555	621	711	790	859	968	980	1,051
	국가보훈	315	464	523	543	617	677	760	851	905	914	1,025
	재해구호	40	21	1	12	4	33	29	7	62	65	19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1	1	1	1	1	7
	사할린동포	-	-	-	-	-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	-	-	-	-
	긴급지원	-	-	-	-	-	-	-	-	-	-	-
사회 복지 서비스	소계	636	739	901	1,025	1,337	1,711	2,187	2,864	4,123	5,906	5,400
	시설보호	39	50	61	48	246	291	348	497	415	448	545
	재가복지	104	128	174	239	297	424	580	797	840	915	1,152
	근로복지 <sup>2)</sup>	51	44	103	144	114	166	170	288	1,272	2,663	1,795
	보건의료	442	517	563	594	680	791	1,043	1,220	1,327	1,607	1,560
	주택보급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185	169	206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39	46	62	84	103	141
	아동발달개좌	-	-	-	-	-	-	-	-	-	-	-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	-	-	-	-	-	-	-	-	-	-
사회 보험	소계	3,896	4,539	5,752	6,744	7,985	10,068	11,798	13,825	19,037	24,513	19,875
	공적연금	1,233	1,569	2,139	2,783	3,450	4,478	4,724	5,506	8,939	13,049	7,650
	건강보험	2,124	2,266	2,679	3,106	3,553	4,452	5,692	6,609	7,489	8,649	9,776
	산업재해 보상보험	540	703	934	855	981	1,137	1,358	1,560	1,454	1,277	1,460
	고용보험 <sup>3)</sup>	-	-	-	-	-	2	24	150	1,155	1,539	989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민간 복지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16	22	34	49	66	127
	소계	502	591	711	802	1,017	1,220	1,380	2,299	4,717	3,210	4,193
기업 복지	법정퇴직금	359	424	521	597	797	984	1,091	1,872	4,226	2,606	3,474
	퇴직연금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85	94	153	212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289	343	397	451	506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89	118	139	273	363	441	530	666	676	653	905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 〈부표 12〉 계속

(단위: 십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부제도	제도
38,866	41,337	46,500	55,737	61,873	73,760	81,482	93,429	112,060	118,775	127,845	합계	
4,090	4,233	4,677	5,902	7,395	8,738	9,412	12,725	15,182	17,000	18,504	소계	공공 부조
4,090	4,233	4,677	5,902	7,395	8,738	9,411	9,712	10,293	11,318	12,536	기초생활보장	
-	-	-	-	-	-	-	2,243	3,412	3,823	3,804	기초노령연금	
-	-	-	-	-	-	-	-	-	221	428	장애인연금	
-	-	-	-	-	-	-	770	1,023	1,204	1,334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454	434	402	근로장려금	
1,169	1,613	1,682	1,630	1,756	2,127	2,174	2,280	2,502	2,834	2,970	소계	사회 보상
1,140	1,286	1,442	1,550	1,672	1,826	1,988	2,133	2,265	2,498	2,658	국가보훈	
10	299	200	35	28	168	79	11	41	168	132	재해구호	
16	25	36	42	50	43	52	66	65	78	90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9	8	6	5	사할린동포	
-	-	-	-	1	2	2	2	1	1	1	고엽제, 위안부보호	
3	3	4	3	5	6	7	8	7	6	5	의사상자예우	사회 복지 서비스
-	-	-	-	-	82	46	51	114	77	78	긴급지원	
5,445	6,147	6,291	10,399	10,481	15,209	16,006	18,076	23,991	20,929	20,658	소계	
715	446	458	752	161	1,268	1,082	3,706	4,316	6,506	7,268	시설보호	
1,357	2,138	2,548	2,743	3,114	4,887	5,551	4,651	4,848	762	625	재가복지	
913	860	365	630	572	375	406	1,998	4,755	3,725	3,423	근로복지 <sup>2)</sup>	
1,894	2,133	2,269	2,320	2,875	3,601	4,238	3,889	4,718	5,403	4,978	보건의료	사회 복지 서비스
-	-	-	3,161	2,776	3,763	3,159	2,168	3,621	3,168	2,418	주택보급	
377	357	401	470	573	851	1,031	1,083	1,137	730	1,261	교육복지	
189	213	249	323	409	464	539	571	586	615	638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10	10	10	11	아동발달계좌	
-	-	-	-	-	-	-	-	-	9	36	문화,여행, 체육바우처	
23,694	25,042	28,792	32,226	36,667	41,776	47,308	52,861	60,430	66,440	70,762	소계	사회 보험
6,708	7,319	8,899	10,293	12,093	13,330	15,098	17,382	18,649	20,911	22,855	공적연금	
13,875	14,353	15,756	17,234	19,236	22,335	25,433	27,311	30,921	34,785	36,993	건강보험	
1,751	2,027	2,495	2,877	3,048	3,196	3,288	3,446	3,494	3,549	3,650	산업재해 보상보험	
1,361	1,343	1,642	1,822	2,289	2,914	3,488	4,436	6,141	5,364	5,262	고용보험 <sup>3)</sup>	
-	-	-	-	-	-	-	285	1,224	1,830	2,002	장기요양보험	
155	214	271	289	305	338	373	431	551	588	591	교통통신 감면	민간 복지 서비스
3,479	3,269	3,816	4,329	4,240	4,453	5,093	5,940	8,211	9,750	13,137	소계	기업 복지
2,599	2,330	2,863	3,266	3,182	3,330	3,663	3,959	5,082	4,925	5,344	법정퇴직금	
-	-	-	-	-	-	276	779	1,910	3,549	6,263	퇴직연금	
309	260	321	362	307	366	459	506	526	563	603	산전후 휴가급여	
571	679	633	701	751	757	695	697	694	714	927	유급질병 휴가급여	시장
835	817	972	963	1,031	1,119	1,117	1,116	1,192	1,235	1,223	자동차 책임보험금	

〈부표 13〉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	17.2	23.0	17.1	19.1	24.6	18.1	23.0	43.0	21.1	-9.0
공공 <sup>1)</sup> 부조	소계	-	8.1	9.5	17.0	-0.1	15.7	21.8	23.0	26.7	53.1	16.2
	기초생활보장	-	8.1	9.5	17.0	-0.1	15.7	21.8	23.0	26.7	53.1	16.2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사회 보상	소계	-	36.6	8.0	5.9	11.9	14.5	11.1	8.7	12.7	1.2	7.2
	국가보훈	-	47.3	12.7	3.8	13.6	9.7	12.3	12.0	6.3	1.0	12.1
	재해구호	-	-47.5	-95.2	1,100.0	-66.7	725.0	-12.1	-75.9	785.7	4.8	-70.8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	-	600.0
	사할린동포	-	-	-	-	-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의사상차예우	-	-	-	-	-	-	-	-	-	-	-
	긴급지원	-	-	-	-	-	-	-	-	-	-	-
사회 복지 서비스	소계	-	16.2	22.0	13.8	30.5	27.9	27.8	31.0	43.9	43.2	-8.6
	시설보호	-	28.2	22.0	-21.3	412.5	18.3	19.6	42.8	-16.5	8.0	21.7
	재가복지	-	23.1	35.9	37.4	24.3	42.8	36.8	37.4	5.4	8.9	25.9
	근로복지 <sup>2)</sup>	-	-13.7	134.1	39.8	-20.8	45.6	2.4	69.7	341.1	109.3	-32.6
	보건의료	-	17.0	8.9	5.5	14.6	16.2	31.9	17.0	8.7	21.1	-2.9
	주택보급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	-8.6	21.9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16.3	35.1	35.8	23.5	36.5
	이동발달계좌 문화, 여행, 체육마우처	-	-	-	-	-	-	-	-	-	-	-
사회 보험	소계	-	16.5	26.7	17.2	18.4	26.1	17.2	17.2	37.7	28.8	-18.9
	공적연금	-	27.3	36.3	30.1	24.0	29.8	5.5	16.6	62.3	46.0	-41.4
	건강보험	-	6.7	18.2	15.9	14.4	25.3	27.9	16.1	13.3	15.5	13.0
	산업재해 보상보험	-	30.2	32.8	-8.4	14.7	15.8	19.5	14.8	-6.8	-12.2	14.3
	고용보험 <sup>3)</sup>	-	-	-	-	-	-	1,100.0	523.3	671.9	33.3	-35.7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민간 복지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	41.6	51.9	44.8	35.1	93.9
기업 복지	소계	-	17.6	20.4	12.8	26.7	19.9	13.1	66.7	105.1	-31.9	30.6
	법정퇴직금	-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38.3	33.3
	퇴직연금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	10.6	63.2	38.7
	유급질병 휴가급여	-	16.7	14.3	7.9	7.3	6.8	23.0	18.7	15.7	13.6	12.2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	32.7	17.8	96.9	33.3	21.4	20.1	25.7	1.4	-3.4	38.7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 〈부표 13〉 계속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부제도	제도
13.3	6.4	12.5	19.9	11.0	19.2	10.5	14.7	19.9	6.0	7.6	합계	
48.3	3.5	10.5	26.2	25.3	18.2	7.7	35.2	19.3	12.0	8.8	소계	공공 <sup>1)</sup> 부조
48.3	3.5	10.5	26.2	25.3	18.2	7.7	3.2	6.0	10.0	10.8	기초생활보장	
-	-	-	-	-	-	-	-	52.1	12.1	-0.5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93.9	장애인연금	
-	-	-	-	-	-	-	-	32.8	17.7	10.8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4.3	-7.5	근로장려금	
11.2	38.0	4.2	-3.1	7.7	21.2	2.2	4.8	9.8	13.3	4.8	소계	사회 보상
11.2	12.8	12.1	7.5	7.9	9.2	8.9	7.3	6.2	10.3	6.4	국가보훈	
-47.4	2,890.0	-33.1	-82.5	-20.0	500.0	-53.0	-86.4	284.7	304.4	-21.3	재해구호	
128.6	56.3	44.0	16.7	19.0	-14.0	20.9	26.6	-1.2	19.3	15.6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	-9.3	-25.2	-13.8	사할린동포	
-	-	-	-	-	100.0	-	8.1	-31.4	-8.4	-7.1	고엽제, 위안부보호	
-	14.2	6.2	-10.3	47.1	25.5	25.4	4.1	-16.5	-7.4	-10.0	의사상자예우	
-	-	-	-	-	-	-44.2	9.9	125.5	-32.4	1.2	긴급지원	
0.8	12.9	2.3	65.3	0.8	45.1	5.2	12.9	32.7	-12.8	-1.3	소계	사회 복지 서비스
31.2	-37.6	2.7	64.2	-78.6	687.4	-14.6	242.3	16.5	50.7	11.7	시설보호	
17.8	57.6	19.2	7.7	13.5	56.9	13.6	-16.2	4.2	-84.3	-18.0	재가복지	
-49.1	-5.8	-57.5	72.4	-9.1	-34.6	8.3	392.6	137.9	-21.7	-8.1	근로복지 <sup>2)</sup>	
21.4	12.6	6.4	2.3	23.9	25.3	17.7	-8.2	21.3	14.5	-7.9	보건의료	
-	-	-	-	-12.2	35.6	-16.1	-31.4	67.0	-12.5	-23.7	주택보급	
83.0	-5.3	12.3	17.2	21.9	48.5	21.2	5.0	5.0	-35.8	72.8	교육복지	
33.6	12.8	17.1	29.4	26.9	13.4	16.0	6.1	2.7	4.8	3.8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	-0.3	-0.0	15.5	아동발달계좌	
-	-	-	-	-	-	-	-	-	-	303.6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19.2	5.7	15.0	11.9	13.8	13.9	13.2	11.7	14.3	9.9	6.5	소계	사회 보험
-12.3	9.1	21.6	15.7	17.5	10.2	13.3	15.1	7.3	12.1	9.3	공적연금	
41.9	3.4	9.8	9.4	11.6	16.1	13.9	7.4	13.2	12.5	6.3	건강보험	
19.9	15.8	23.1	15.3	5.9	4.8	2.9	4.8	1.4	1.6	2.8	산업재해 보상보험	
37.6	-1.3	22.3	11.0	25.6	27.3	19.7	27.2	38.4	-12.7	-1.9	고용보험 <sup>3)</sup>	
-	-	-	-	-	-	-	-	328.9	49.6	9.4	장기요양보험	
21.6	38.3	26.5	6.9	5.4	10.9	10.3	15.6	27.7	6.8	0.5	교통통신 감면	민간 복지 서비스
-17.0	-6.0	16.7	13.4	-2.1	5.0	14.4	16.6	38.2	18.7	34.7	소계	기업 복지
-25.2	-10.3	22.8	14.1	-2.6	4.6	10.0	8.1	28.4	-3.1	8.5	법정퇴직금	
-	-	-	-	-	-	-	182.2	145.3	85.8	76.5	퇴직연금	
45.7	-15.8	23.2	12.7	-15.1	19.4	25.3	10.3	3.9	7.0	7.2	산전후 휴가급여	
12.9	18.8	-6.8	10.8	7.1	0.9	-8.2	0.3	-0.5	2.9	29.9	유급질병 휴가급여	
-7.7	-2.1	18.9	-0.9	7.1	8.6	-0.3	-0.0	6.8	3.6	-0.9	자동차 책임보험금	시장

〈부표 1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sup>1)</sup> 부조	소계	8.5	7.9	7.0	7.0	5.9	5.5	5.6	5.6	5.0	6.3	8.0
	기초생활보장	8.5	7.9	7.0	7.0	5.9	5.5	5.6	5.6	5.0	6.3	8.0
	기초노령연금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사회 보상	소계	5.9	6.9	6.1	5.5	5.2	4.7	4.5	3.9	3.1	2.6	3.1
	국가보훈	5.3	6.6	6.1	5.4	5.1	4.5	4.3	3.9	2.9	2.4	3.0
	재해구호	0.7	0.3	0.0	0.1	0.0	0.2	0.2	0.0	0.2	0.2	0.1
	복합이탈 주민지원	-	-	-	-	-	0.0	0.0	0.0	0.0	0.0	0.0
	사할린동포	-	-	-	-	-	-	-	-	-	-	-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	-	-	-	-
	의사상자예우	-	-	-	-	-	-	-	-	-	-	-
	긴급지원	-	-	-	-	-	-	-	-	-	-	-
사회 복지 서비스	소계	10.6	10.5	10.4	10.1	11.1	11.4	12.4	13.2	13.2	15.7	15.7
	시설보호	0.7	0.7	0.7	0.5	2.0	1.9	2.0	2.3	1.3	1.2	1.6
	제기복지	1.7	1.8	2.0	2.4	2.5	2.8	3.3	3.7	2.7	2.4	3.4
	근로복지 <sup>2)</sup>	0.9	0.6	1.2	1.4	0.9	1.1	1.0	1.3	4.1	7.1	5.2
	보건의료	7.4	7.4	6.5	5.9	5.7	5.3	5.9	5.6	4.3	4.3	4.5
	주택보급	-	-	-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0.6	0.4	0.6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0.3	0.3	0.3	0.3	0.3	0.4
	아동발달계좌	-	-	-	-	-	-	-	-	-	-	-
	문화, 여행, 체육마우처	-	-	-	-	-	-	-	-	-	-	-
사회 보험	소계	65.1	64.6	66.6	66.7	66.4	67.2	66.7	63.5	61.2	65.0	57.9
	공적연금	20.6	22.3	24.8	27.5	28.7	29.9	26.7	25.3	28.7	34.6	22.3
	건강보험	35.5	32.3	31.0	30.7	29.5	29.7	32.2	30.4	24.1	22.9	28.5
	산업재해 보상보험	9.0	10.0	10.8	8.5	8.2	7.6	7.7	7.2	4.7	3.4	4.3
	고용보험 <sup>3)</sup>	-	-	-	-	-	0.0	0.1	0.7	3.7	4.1	2.9
	장기요양보험	-	-	-	-	-	-	-	-	-	-	-
민간 복지 서비스	교통통신 감면	-	-	-	-	-	0.1	0.1	0.2	0.2	0.2	0.4
기업 복지	소계	8.4	8.4	8.2	7.9	8.5	8.1	7.8	10.6	15.2	8.5	12.2
	법정퇴직금	6.0	6.0	6.0	5.9	6.6	6.6	6.2	8.6	13.6	6.9	10.1
	퇴직연금	-	-	-	-	-	-	-	-	-	-	-
	산전후 휴가급여	-	-	-	-	-	-	-	0.4	0.3	0.4	0.6
	유급질병 휴가급여	2.4	2.4	2.2	2.0	1.8	1.6	1.6	1.6	1.3	1.2	1.5
시장	자동차 책임보험금	1.5	1.7	1.6	2.7	3.0	2.9	3.0	3.1	2.2	1.7	2.6

주: 1) 의료급여 등 포함  
 2) ALMP 금액에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공제한 금액  
 3)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포함

## 〈부표 14〉 계속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부제도	제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10.5	10.2	10.1	10.6	12.0	11.8	11.6	13.6	13.5	14.3	14.5	소계	공공 <sup>1)</sup> 부조
10.5	10.2	10.1	10.6	12.0	11.8	11.5	10.4	9.2	9.5	9.8	기초생활보장	
-	-	-	-	-	-	-	2.4	3.0	3.2	3.0	기초노령연금	
-	-	-	-	-	-	-	-	-	0.2	0.3	장애인연금	
-	-	-	-	-	-	-	0.8	0.9	1.0	1.0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	-	-	-	-	-	-	0.4	0.4	0.3	근로장려금	
3.0	3.9	3.6	2.9	2.8	2.9	2.7	2.4	2.2	2.4	2.3	소계	사회 보상
2.9	3.1	3.1	2.8	2.7	2.5	2.4	2.3	2.0	2.1	2.1	국가보훈	
0.0	0.7	0.4	0.1	0.0	0.2	0.1	0.0	0.0	0.1	0.1	재해구호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북한이탈 주민지원	
-	-	-	-	-	-	-	0.0	0.0	0.0	0.0	사할린동포	
-	-	-	-	0.0	0.0	0.0	0.0	0.0	0.0	0.0	고엽제 위안부보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의사상자예우	
-	-	-	-	-	0.1	0.1	0.1	0.1	0.1	0.1	긴급지원	
14.0	14.9	13.5	18.7	16.9	20.6	19.6	19.3	21.4	17.6	16.2	소계	사회 복지 서비스
1.8	1.1	1.0	1.3	0.3	1.7	1.3	4.0	3.9	5.5	5.7	시설보호	
3.5	5.2	5.5	4.9	5.0	6.6	6.8	5.0	4.3	0.6	0.5	재가복지	
2.3	2.1	0.8	1.1	0.9	0.5	0.5	2.1	4.2	3.1	2.7	근로복지 <sup>2)</sup>	
4.9	5.2	4.9	4.2	4.6	4.9	5.2	4.2	4.2	4.5	3.9	보건의료	
-	-	-	5.7	4.5	5.1	3.9	2.3	3.2	2.7	1.9	주택보급	
1.0	0.9	0.9	0.8	0.9	1.2	1.3	1.2	1.0	0.6	1.0	교육복지	
0.5	0.5	0.5	0.6	0.7	0.6	0.7	0.6	0.5	0.5	0.5	교통통신 등 감면	
-	-	-	-	-	-	-	0.0	0.0	0.0	0.0	이동발달계좌	
-	-	-	-	-	-	-	-	-	0.0	0.0	문화, 여행, 체육바우처	
61.0	60.6	61.9	57.8	59.3	56.6	58.1	56.6	53.9	55.9	55.3	소계	사회 보험
17.3	17.7	19.1	18.5	19.5	18.1	18.5	18.6	16.6	17.6	17.9	공적연금	
35.7	34.7	33.9	30.9	31.1	30.3	31.2	29.2	27.6	29.3	28.9	건강보험	
4.5	4.9	5.4	5.2	4.9	4.3	4.0	3.7	3.1	3.0	2.9	산업재해 보상보험	
3.5	3.2	3.5	3.3	3.7	4.0	4.3	4.7	5.5	4.5	4.1	고용보험 <sup>3)</sup>	
-	-	-	-	-	-	-	0.3	1.1	1.5	1.6	장기요양보험	
0.4	0.5	0.6	0.5	0.5	0.5	0.5	0.5	0.5	0.5	0.5	교통통신 감면	민간 복지 서비스
9.0	7.9	8.2	7.8	6.9	6.0	6.3	6.4	7.3	8.2	10.3	소계	기업 복지
6.7	5.6	6.2	5.9	5.1	4.5	4.5	4.2	4.5	4.1	4.2	법정퇴직금	
-	-	-	-	-	-	0.3	0.8	1.7	3.0	4.9	퇴직연금	
0.8	0.6	0.7	0.6	0.5	0.5	0.6	0.5	0.5	0.5	0.5	산전후 휴가급여	
1.5	1.6	1.4	1.3	1.2	1.0	0.9	0.7	0.6	0.6	0.7	유급질병 휴가급여	
2.1	2.0	2.1	1.7	1.7	1.5	1.4	1.2	1.1	1.0	1.0	자동차 책임보험금	시장

〈부표 15〉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사회복지지출	6,118	7,154	8,767	10,277	12,220	22,682	26,682	31,564
요소 GDP 대비%	3.58	3.44	3.71	3.83	3.91	6.21	6.52	7.05
총공공지출	5,398	6,312	7,783	9,029	10,649	13,307	15,769	18,770
총법정민간지출	591	708	850	1,075	1,380	1,676	1,932	2,999
총자발적민간지출	129 <sup>1)</sup>	134 <sup>1)</sup>	134 <sup>1)</sup>	172 <sup>1)</sup>	190 <sup>1)</sup>	7,699	8,981	9,795
조세부담(-)	-	-	-	-	-	870	1,031	1,342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44	43	66
간접세	-	-	-	-	-	826	988	1,275
조세혜택(+)	-	-	-	-	-	230	568	627
T1 <sup>2)</sup>	-	-	-	-	-	230	568	627
T2 <sup>3)</sup>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22,041	26,219	30,849
요소 GDP 대비%	-	-	-	-	-	6.03	6.41	6.89
요소GDP(1~3)	170,787.7	207,680.6	236,603.7	268,273.3	312,687.8	365,536.2	409,158.1	447,849.6
1.피용자보수	85,280.6	106,260.2	120,836.1	137,107.7	160,659.8	190,905.0	219,362.8	232,602.9
2.영업잉여	64,975.6	77,688.2	88,706.4	99,735.4	116,060.7	127,157.8	133,933.6	149,794.5
3.고정자본소모	20,531.5	23,732.2	27,061.2	31,430.2	35,967.3	47,473.4	55,861.7	65,452.2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2)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임.  
 3) 조세혜택제도(TBSPs)의 한 유형으로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임.

## 〈부표 15〉 계속

(단위: 십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구성항목
39,340	48,486	45,495	50,884	54,822	61,991	67,955	총사회복지지출
8.74	9.96	8.54	8.87	8.67	9.17	9.25	요소 GDP 대비%
25,679	33,771	29,084	34,398	37,036	41,442	50,156	총공공지출
5,441	3,929	5,225	4,469	4,301	5,058	5,581	총법정민간지출
8,220	10,786	11,185	12,018	13,485	15,491	12,218	총자발적민간지출
2,032	2,568	2,209	2,493	2,838	3,434	3,695	조세부담(-)
109	119	131	244	239	267	374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923	2,449	2,078	2,249	2,599	3,166	3,321	간접세
576	712	1,660	2,024	3,990	4,709	4,840	조세혜택(+)
576	712	1,660	2,024	3,990	4,709	4,840	T1
-	-	-	-	-	-	-	T2
37,884	46,630	44,945	50,416	55,975	63,267	69,099	순사회복지지출
8.42	9.58	8.44	8.79	8.85	9.36	9.41	요소 GDP 대비%
449,924.7	486,722.2	532,815.4	573,531.7	632,506.4	675,946.8	734,544.8	요소GDP(1~3)
222,179.7	235,922.0	258,943.6	284,226.4	312,680.2	340,921.5	369,205.3	1.피용자보수
153,377.0	171,486.3	190,695.2	201,102.6	226,755.0	235,294.5	258,345.4	2.영업잉여
74,368.0	79,313.9	83,176.6	88,202.7	93,071.2	99,730.8	106,994.1	3.고정자본소모

〈부표 15〉 계속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사회복지지출	75,614	89,829	99,451	108,989	128,437	134,839	146,857
요소 GDP 대비%	9.84	11.16	11.53	12.03	13.57	12.95	13.35
총공공지출	56,297	67,849	74,899	85,941	102,105	107,202	112,894
총법정민간지출	5,576	5,911	6,583	7,488	9,955	11,573	14,952
총자발적민간지출	13,741	16,068	17,969	15,560	16,377	16,064	19,011
조세부담(-)	4,014	4,300	4,976	6,029	6,494	7,451	7,68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392	449	548	622	667	810	1,008
간접세	3,621	3,851	4,428	5,408	5,827	6,641	6,680
조세혜택(+)	5,659	6,107	7,121	10,848	9,339	8,616	8,886
T1	5,659	6,107	7,121	10,848	9,339	8,616	8,886
T2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77,259	91,636	101,596	113,808	131,282	136,004	148,053
요소 GDP 대비%	10.06	11.39	11.78	12.56	13.87	13.06	13.46
요소GDP(1~3)	768,312.9	804,771.3	862,453.9	906,198.2	946,383.8	1,041,091.0	1,099,785.0
1.피용자보수	396,337.9	419,926.8	448,993.8	474,953.8	493,685.7	526,278.7	560,153.3
2.영업잉여	258,129.3	264,450.7	284,555.9	295,368.0	310,604.0	363,901.4	375,978.8
3.고정자본소모	113,845.7	120,393.8	128,904.2	135,876.4	142,094.1	150,910.9	163,652.9



〈부표 16〉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사회복지지출	-	16.93	22.54	17.23	18.91	85.62	17.63	18.30	24.63	23.25	-6.17
요소 GDP 대비%	-	-3.84	7.56	3.39	2.02	58.78	5.09	8.08	24.06	13.93	-14.29
총공공지출	-	16.93	23.29	16.02	17.94	24.96	18.50	19.03	36.81	31.51	-13.88
총법정 민간지출	-	19.87	19.99	26.53	28.40	21.43	15.24	55.24	81.43	-27.80	32.99
총자발적 민간지출	-	3.56	0.63	28.28	10.30	3,948.57	16.66	9.06	-16.08	31.22	3.70
조세부담(-)	-	-	-	-	-	-	18.46	30.12	51.45	26.38	-13.96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	-3.24	54.84	64.28	8.85	10.15
간접세	-	-	-	-	-	-	19.63	29.05	50.78	27.37	-15.13
조세혜택(+)	-	-	-	-	-	-	147.25	10.43	-8.10	23.56	133.16
T1	-	-	-	-	-	-	147.25	10.43	-8.10	23.56	133.16
T2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	18.95	17.66	22.80	23.09	-3.61
요소 GDP 대비 %	-	-	-	-	-	-	6.27	7.50	22.24	13.78	-11.95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 〈부표 16〉 계속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성항목
11.85	7.74	13.08	9.62	11.27	18.80	10.71	9.59	17.84	4.98	8.91	총사회복지지출
3.91	-2.31	5.81	0.87	6.38	13.42	3.31	4.30	12.84	-4.57	3.10	요소 GDP 대비%
18.27	7.67	11.89	21.03	12.24	20.52	10.39	14.74	18.81	4.99	5.31	총공공지출
-14.47	-3.76	17.61	10.34	-0.09	6.01	11.37	13.75	32.94	16.26	29.19	총법정 민간지출
7.44	12.21	14.88	-21.13	12.47	16.94	11.83	-13.41	5.25	-1.91	18.34	총자발적 민간지출
12.83	13.84	21.00	7.61	8.63	7.12	15.73	21.17	7.71	14.73	3.19	조세부담(-)
86.36	-1.94	11.81	39.95	4.92	14.40	21.95	13.53	7.33	21.37	24.54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8.20	15.55	21.85	4.88	9.04	6.33	15.01	22.11	7.76	13.97	0.59	간접세
21.97	97.10	18.02	2.77	16.93	7.91	16.61	52.35	-13.91	-7.74	3.13	조세혜택(+)
21.97	97.10	18.02	2.77	16.93	7.91	16.61	52.35	-13.91	-7.74	3.13	T1
-	-	-	-	-	-	-	-	-	-	-	T2
12.17	11.03	13.03	9.22	11.81	18.61	10.87	12.02	15.35	3.60	8.86	순사회복지지출
4.21	0.67	5.76	0.51	6.89	13.24	3.45	6.61	10.46	-5.83	3.05	요소 GDP 대비 %

〈부표 17〉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단위: %)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공공지출	88.2	88.2	88.8	87.9	87.1	58.7	59.1	59.5	65.3	69.7	63.9
총법정 민간지출	9.7	9.9	9.7	10.5	11.3	7.4	7.2	9.5	13.8	8.1	11.5
총자발적 민간지출	2.1	1.9	1.5	1.7	1.6	33.9	33.7	31.0	20.9	22.2	24.6
조세부담(-)	-	-	-	-	-	3.8	3.9	4.3	5.2	5.3	4.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0.2	0.2	0.2	0.3	0.2	0.3
간접세	-	-	-	-	-	3.6	3.7	4.0	4.9	5.1	4.6
조세혜택(+)	-	-	-	-	-	1.0	2.1	2.0	1.5	1.5	3.6
T1	-	-	-	-	-	1.0	2.1	2.0	1.5	1.5	3.6
T2	-	-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	-	-	-	-	97.2	98.3	97.7	96.3	96.2	98.8

주: 1) 민간단체의 기부금만 포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의 법정 외 복리후생비는 1995년 이후부터 포함

## 〈부표 17〉 계속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성항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사회복지지출
67.6	67.6	66.9	73.8	74.5	75.5	75.3	78.9	79.5	79.5	76.9	총공공지출
8.8	7.8	8.2	8.2	7.4	6.6	6.6	6.9	7.8	8.6	10.2	총법정민간지출
23.6	24.6	25.0	18.0	18.2	17.9	18.1	14.3	12.8	11.9	12.9	총자발적민간지출
4.9	5.2	5.5	5.4	5.3	4.8	5.0	5.5	5.1	5.5	5.2	조세부담(-)
0.5	0.4	0.4	0.6	0.5	0.5	0.6	0.6	0.5	0.6	0.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4.4	4.7	5.1	4.9	4.8	4.3	4.5	5.0	4.5	4.9	4.5	간접세
4.0	7.3	7.6	7.1	7.5	6.8	7.2	10.0	7.3	6.4	6.1	조세혜택(+)
4.0	7.3	7.6	7.1	7.5	6.8	7.2	10.0	7.3	6.4	6.1	T1
-	-	-	-	-	-	-	-	-	-	-	T2
99.1	102.1	102.1	101.7	102.2	102.0	102.2	104.4	102.2	100.9	100.8	순사회복지지출

〈부표 1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GDP 대비 %)

연도	GDP	사회복지지출액			경상 GDP 대비 비율		
		사회복지	공공	민간	사회복지	공공	민간
1990	191,383	5,989	5,398	591	3.13	2.82	0.31
1991	231,428	7,021	6,312	708	3.03	2.73	0.31
1992	263,993	8,632	7,783	850	3.27	2.95	0.32
1993	298,762	10,104	9,029	1,075	3.38	3.02	0.36
1994	349,973	12,030	10,649	1,380	3.44	3.04	0.39
1995	409,654	14,984	13,307	1,676	3.66	3.25	0.41
1996	460,953	17,701	15,769	1,932	3.84	3.42	0.42
1997	506,314	21,769	18,770	2,999	4.30	3.71	0.59
1998	501,027	31,120	25,679	5,441	6.21	5.13	1.09
1999	549,005	37,700	33,771	3,929	6.87	6.15	0.72
2000	603,236	34,309	29,084	5,225	5.69	4.82	0.87
2001	651,415	38,866	34,398	4,469	5.97	5.28	0.69
2002	720,539	41,337	37,036	4,301	5.74	5.14	0.60
2003	767,114	46,500	41,442	5,058	6.06	5.40	0.66
2004	826,893	55,737	50,156	5,581	6.74	6.07	0.67
2005	865,241	61,873	56,297	5,576	7.15	6.51	0.64
2006	908,744	73,760	67,849	5,911	8.12	7.47	0.65
2007	975,013	81,482	74,899	6,583	8.36	7.68	0.68
2008	1,026,452	93,429	85,941	7,488	9.10	8.37	0.73
2009	1,065,037	112,060	102,105	9,955	10.52	9.59	0.93
2010	1,173,275	118,775	107,202	11,573	10.12	9.14	0.99
2011	1,235,161	127,845	112,894	14,952	10.35	9.14	1.21

〈부표 19〉 OECD SOCX 분류에 따른 세제혜택 내역(국세부분)

분 류	해당부문	세부분문	조세지출 내역	조세지출액			비 고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전망	
1. 노령 (old Age)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노인/청소년	노인생활 안정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추정곤란 10년 신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3,830	3,438	4,362	
소 계			3,830	3,438	4,362		
2. 유족 (survivors)	4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소 계			0	0	0	
3. 근로 무능력 (incapacity)	산재보험 (요양급여제외)	산업재해 예방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	47	49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타)	장애인 재활지원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308	311	353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장애인 추가공제	3,327	2,814	3,613	
		장애인 고용증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9	11년 신설
	소 계			3,729	3,172	4,024	

주: 일몰종료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몰종료되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운용 중에 있는 것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부표 19〉 계속

분 류	해당부문	세부부문	조세지출 내역	조세지출액			비 고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전망	
4. 보건(health)	건강보험	기타	보험료 특별공제	20,268	18,259	22,402	
		건강보험 제도운영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5,563	6,224	7,681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교육세 면제	628	519	730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13	13	-	12년종료
		공공보건 의료확충	지방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50	11년 신설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추정곤란
		기타	의료비 특별공제	7,340	5,989	7,743	
	소 계			33,812	31,004	38,606	
	5. 가족(family)	보육	보육지원 강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보육지원 강화 (비망)			차녀양육비 추가공제	3,048	2,457	3,388	

## 〈부표 19〉 계속

분류	해당부문	세부부문	조세지출 내역	조세지출액			비고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전망	
5. 가족(family)	가족 및 여성	가족기능 강화	부녀자 추가공제	1,919	1,793	2,173	
		저출산대응 및인구정책 지원	출생입양에 대한 추가공제	750	637	861	
			교육비 특별공제	12,749	11,773	13,544	
			다자녀 추가공제	2,537	2,235	4,415	
	보훈(복지, 기타)						
소 계			21,003	18,895	24,381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고용보험(기타)						
	고용정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	3,904	11년 신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8	-	4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	추정공란 11년 신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	1	2	
	기타 노동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3	135	139	
		기타	고용증대세액공제	-	890	460	10년 신설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비망)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2,732	2,362	3,144	
소 계			2,854	3,388	7,653		

〈부표 19〉 계속

분 류	해당부문	세부부문	조세지출 내역	조세지출액			비 고
				2010 실적	2011 실적	2012 전망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 기반조성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734	156	1,019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비과세	1,662	3,284	2,308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6,080	8,421	6,380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7,958	8,758	8,551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401	390	310	00년종료 <sup>주)</sup>
	소 계			16,835	21,009	18,568	
총 합 계			82,063	80,906	97,594		

## 〈부표 20〉 연도별 평균간접세율

(단위: 십억원, %)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Minim[3/2]	11.05	11.45	11.56	10.84	11.44	11.38	11.99	11.96	12.27
Medium[5/2]	14.36	14.81	14.91	13.79	14.33	14.38	14.69	14.32	14.57
Maxim[5/1]	15.57	16.12	16.21	15.32	15.79	15.82	16.30	15.85	16.23
1. 민간최종 소비지출 (국민계정)	214,414.5	245,692.1	271,343.3	252,110.9	289,961.5	330,389.5	364,251.4	408,715.7	420,098.6
2.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임금	232,460.2	267,428.9	294,943.9	280,039.7	319,554.3	363,495.8	404,232.0	452,349.9	468,019.3
민간최종소비지출	214,414.5	245,692.1	271,343.3	252,110.9	289,961.5	330,389.5	364,251.4	408,715.7	420,098.6
정부최종소비지출	45,715.0	53,292.0	57,977.8	63,100.8	66,309.2	72,100.9	83,010.0	90,930.3	100,057.4
공무원임금	27,669.3	31,555.2	34,377.2	35,172.0	36,716.4	38,994.6	43,029.4	47,296.1	52,136.7
3. (5110+5121)	25,692	30,631	34,104	30,356	36,560	41,367	48,448	54,083	57,438
5110 General taxes	14,637	16,790	19,488	15,707	20,369	23,212	25,835	31,609	33,447
5121 Excises	11,055	13,841	14,616	14,650	16,191	18,155	22,613	22,474	23,991
5.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33,388	39,609	43,978	38,622	45,785	52,271	59,377	64,773	68,197

〈부표 20〉 계속

(단위: 십억원,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Minim[3/2]	12.11	11.67	11.27	11.43	11.23	10.86	11.63	10.55
Medium[5/2]	14.27	13.58	13.23	13.43	13.40	13.07	13.96	13.22
Maxim[5/1]	16.00	15.26	14.96	15.25	15.33	15.11	16.17	15.34
1. 민간최종 소비지출 (국민계정)	435,060.4	465,430.5	494,917.6	530,264.1	561,627.5	575,970.2	616,982.6	655,386.6
2. 민간소비 +정부소비 -공무원임금	487,830.5	522,951.2	559,799.0	602,100.5	642,356.4	665,748.5	714,726.3	760,646.2
민간최종소비지출	435,060.4	465,430.5	494,917.6	530,264.1	561,627.5	575,970.2	616,982.6	655,386.6
정부최종소비지출	110,127.7	120,010.1	131,900.7	143,262.2	156,944.1	170,324.7	178,396.1	189,551.6
공무원임금	57,357.6	62,489.4	67,019.3	71,425.8	76,215.2	80,546.4	80,652.4	84,292.0
3. (5110+5121)	59,082	61,006	63,076	68,822	72,164	72,333	83,140	80,269
5110 General taxes	34,572	36,118	38,093	40,942	43,820	46,992	51,800	54,868
5121 Excises	24,510	24,888	24,983	27,880	28,344	25,341	31,340	25,401
5.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69,618	71,041	74,041	80,861	86,096	87,043	99,769	100,551

## 부록 3.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승인(협의)번호  
제11777호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

(자발적민간부문 실질조사)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 인 사 말 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관련 통계들을 생산하여 국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OECD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을 파악하고자 모금기관 및 기부금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질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통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거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

고 경 환 배상

※ 본 조사표는 도착 후 7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통계연구실

홍영희, 김수연, 이진경, 배숙자, 임태순 연구원

- 전화: 02-380-8290, 02-380-8398, 02-380-8379, 02-380-8377, 02-380-8380

- 팩스: 02-382-4581, 02-354-483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관 주소 :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면) \_\_\_\_\_ 번지

※ 조사표 작성자 성명 : \_\_\_\_\_ (전화: \_\_\_\_\_ - \_\_\_\_\_ - \_\_\_\_\_)

※ 조사표는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시오.





14. 귀 법인/단체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중복체크 가능)

- ① 당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지출
- ② 당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속 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 문 14-1번으로)
- ③ 당 법인/단체와 관련 없는 타 기관 및 사업체에 지출
- ④ 기타(\_\_\_\_\_)

14-1. 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다면 모두 고르고, 시설명을 적어주세요.

구분	시설 유형		
1 노인복지	① 양로시설 <sup>☞</sup> ④ 노인요양시설 <sup>☞</sup>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 ⑥ 기타
2 아동복지	① 아동양육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⑧ 종합아동복지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⑥ 아동단기보호시설 ⑨ 기타
3 장애인복지	① 지체장애인시설 ④ 지적장애인시설 ⑦ 기타	② 시각장애인시설 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
4 청소년복지	① 청소년쉼터	② 기타	
5 여성·가족 복지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④ 모(부)자보호시설 ⑦ 공동생활가정	②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⑤ 모(부)자자립시설 ⑧ 일시보호시설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⑥ 미혼모(자)시설 ⑨ 기타
6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	① 부랑인시설	② 기타	
7 정신보건	① 정신요양시설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③ 기타
8 결핵·한센	① 결핵시설	② 한센시설	

주: '08.4.4일 이전 설치 신고되어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중 무료 및 실비 시설 포함

※ 시설명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Ⅱ. 수 입 조 사 표 (1.1~12.31)

재 원 유 형	예 시	수입액 (단위: 천원)
합 계	수입조사표(5쪽)와 지출조사표(6쪽)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정부 지원금	국비, 지방비, 복권기금 등에 의한 시설운영비 지원	
법인 전입금	법인, 예당, 교구, 종단 등 법인에서 유입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모금 및 후원금 내역	계	
	개 인	개인(일사)
	영리법인	기업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과 협회, 학회, 연구소, 재단, 센터, 법인단체 등 비공익법인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원단체, 민간단체 기타
	국가기관	입법, 사법, 행정기관(중앙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개 인 회 비	2회 이상 지속	
잡 수 익	- 불용품 매각대 - 기타 예금이자수입 등	
이 월 금	전년도이월금	

주: 1) 보조금은 그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법인유입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모금 및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한 내역을 작성함.

**Ⅲ 지출조사표**  
(1.1~12.31)

지출비목		예시	지출액 (단위: 천원)
총지출금			
운영비	직원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전기·수도 및 시설운영비 등	
	기타		
계			
사업비	노인	경로교실 운영사업, 노인결연후원사업, 무의탁 및 독거노인지원	
	유족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및 군무원의 유족지원	
	장애	지적장애인 긴급지원사업, 장애인행사지원	
	보건의료	소아암환우치료지원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	
	가족, 청소년, 아동, 한부모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 한부모 여성가장지원금, 청소년 방과후공부방지원	
	주거	주택개보수지원, 주택임차보증금지원사업비	
	해외	해외구호개발사업	
	복합	복합지원	
	기타	자립 자활사업, 부랑인지원, 긴급구호	
	타기관 후원(기부금 등)		
적립금			
이월금			
예비비			
기타			

- 감사합니다 -

## 부록 4. OECD SOCX 가이드라인 전문/번역문

### Part II. The SOCX Manual<sup>44)</sup>

#### II.1. Introduction

6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정책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대에 개발되었다(OECD, 1996). 원칙적으로 국민계정시스템(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이 사회지출과 재원에 대한 포괄적인 회계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SNA, 1993). 그러나 SNA에서 ‘사회적 이전(현금과 현물급여)’에 포함된 실제 데이터 총합의 속성은 공공 사회정책프로그램과 경향의 분석에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무국은 공공지출에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국민계정의 기능별 구분에서 어떤 항목이 정부로 기록되는 (하위)총합지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세우고자 했으나 실패했다(Varley, 1986; Oxley et al., 1990). 그 결과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가 199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의 자국 통화로 ‘사회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상세 수준에서 지출 항목을 기록함으로써 명료화 하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SOCX는 캐나다 50개, 네덜란드와 미국 65개, 프랑스 300개 등의 분리된 사회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SOCX에 포함된 지출 데이터의 구체적인 속성은 SOCX 지출 항목에서 부적절한 기록(이중 계산)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양질의 수준에서 명료성과 연관되는 질적 통제의 중요한 양식을 따른다.

64. SOCX에 포함된 사회지출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

---

44) 본 절은 Willem Adema, Pauline Fron, and Maxime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에 제시된 OECD SOCX Manual을 번역한 것임.

책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SOCX의 상세 수준은 OECD 경제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국가의 국가 내 심도 깊은 연구와 국가간 사회보장정책의 비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서로 다른 정의를 이용하거나 모든 장애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서 평가 관련 지출만 그룹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그룹의 지출이 이용자의 욕구와 부합하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한다. OECD 분석자들과 외부 연구자들은 광범위한 정보를 사용하여 SOCX 사회 지출 구성의 경향과 변화에 관한 연구한다. 예를 들어 Caminada and Goudszwarrd(2005), Castles(2004, 2008), Castles and Obringer(2007), Darby and Melitz(2007), Pearson and Martin(2005), Siegel(2005), Townsend(2007), Whiteford and Adema(2007), Kirkegaard(2009), Fishback(2010), Adema & Whiteford(2010), OECD(2011a) 등이 있다.

65. SOCX는 또한 총합의 공공과 민간 사회지출을 9개의 사회정책 영역에 따라 그룹화하여 제공하고 국내총생산(GDP), 총국민소득(GNI), 정부총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그리고 1인당 구매력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의 국제 비교를 촉진한다. SOCX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회지출 프로그램의 재원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66. OECD는 회원국의 사회정책에 헌신하는 서로 다른 자원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왔다. 순 총사회지출(net=after tax, total=public and private). 이러한 작업은 6개 국가들에 대한 순 공공사회지출의 최초 추정을 통해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Adema et al, 1996), 수년 동안 방법적인 분석들과 유용한 데이터가 27개국가를 포함하면서 확장되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 스페인, 터키, 영국과 미국. 이러한 작업은 OECD의 조세정책센터(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와 긴밀한 협동 작

업을 통해 수행되었고, 이러한 지표들은 이제 SOCX에 통합된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된다. 다음 협동 작업은 2011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6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는 국민계정시스템과 보건계정시스템(OECD, 2000b, and SNA, 1993)과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유럽의 사회보장통계시스템(Eurostat's European System of Social Protection Statistics-ESSPROS)과 ILO 사회보장통계(SSI)와도 광범위하게 연계된다(Box II. 1; Eurostat, 2008, and ILO, 2005). 사회지출과 사회적 지원의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광범위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지표의 일부로써 Asian Development Bank에 의해 수집된다(ADB, 2006 and 2008).

## Box II. 1: OECD와 Eurostat and ILO social accounting systems의 관계

SOCX와 비교하여 유럽사회보장통계시스템(EEPROS)<sup>45)</sup>인 Eurostat의 범위와 ILO의 사회보장조사(SSI)<sup>46)</sup>의 범위는 사회복지출의 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SOCX 보다 더 넓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가 OECD 조세통계(OECD, 2008b)와 일관되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자원별로 요구하는 것은 정책 분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성과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출 측면에서 OECD는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수단의 포괄적인 회계(comprehensive accounting)를 촉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논쟁적이지만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진다(아래 참조). 총지출 항목에서 SSI는 상대적으로 큰 범주를 가진다. 기초교육에 대한 자원 지출을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재에 대한 지출과 같은(SOCX는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각서항(memorandum item)으로 보고함). ESSPROS의 범위는 개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SOCX와 SSI보다 더 협소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지출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ILO와 OECD 모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OECD 정의는 실업자의 고용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까지 포함하는 등 가장 덜 엄격하다.

기능별 분류에서 ESSPROS(Eurostat, 2008)와 사회보장조사(ILO, 2005)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ESSPROS는 7개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SSI는 11개의 기능으로, SOCX는 현재 9개의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분한다.

45)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living\\_condition\\_and\\_social\\_protection/data/database](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living_condition_and_social_protection/data/database)

46) <http://www.ilo.org/dyn/ilossi/ssimain.home> 참조

## II.2. Defining the social domain

68. 사회지출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지출이 ‘사회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경계를 정하는 것이다. OECD는 사회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복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처한 개인과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기관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인 기여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와 재정적인 기여의 제공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지급이나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전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69. 사회지출의 정의에서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구간 이전은 사회적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70. 사회적 급여는 현금급여(예, 연금, 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사회부조급여), 사회서비스(예, 보육,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수단(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민간의료플랜에 대한 기여금의 조세취급)을 포함한다.

71.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지출 항목을 두 가지 주요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급여가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주장하는 의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급여의 제공을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a) 개인간 재분배 혹은 b) 의무적인 참여와 관련되어야 한다.

### II.2.1. Towards a social purpose

7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으로 그룹화한다:

- 노령-연금들(Box II. 2), 조기퇴직연금, 노인층에 대한 가사보조 및 생활보조 서비스
- 유족-연금과 장제비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돌봄서비스, 장애급여, 산업 재해 및 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피고용인 상병급여
- 보건 - 입원 및 외래 환자간호 지출, 의료상품, 예방
- 가족 - 아동 수당과 크레딧, 보육지원, 휴가기간동안의 소득보조, 한부모가족급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서비스, 훈련, 고용인센티브, 장애인 통합,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취업촉진(start-up) 인센티브
- 실업 - 실업보상, 노동시장 이유에 따른 조기 퇴직
- 주거 - 주택수당과 임대보조
- 기타 사회복지정책영역 - 범주 구분이 되지 않는 저소득 가구 대상 현금급여,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예를 들면 비OECD 회원국에 주로 나타나는 음식 보조 등

Box II. 2. Earnings and deferred wages; the treatment of pensions and severance payments in SOCX

사회지출의 정의에 따라서 근로에 대한 보수는 엄격하게 배제하므로 휴일수당, 교통비와 보너스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지출액에서 현재 노동에 대한 보수가 배제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과거 근로에 대한 보수나 후불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상 공공과 민간의 연금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의 중요한 부분(예, 고용주 기여로 재원이 조달되는)은 후불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다. 만약 사회지출이 그런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모든 연금 지급액은 SOCX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Eurostat, ILO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관습적

으로 연금(은퇴 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하는)은 과거 고용주 기여에 의해 공동으로 재원이 조달된 때 사회 지출의 일부로 고려된다.

만약 연금이 사회지출로 고려된다면 다른 유사한 지급액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보통 저축은 종종 은퇴를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케이스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유사하게 OECD 국가들에서 생명 보험 저축 수단은 동일한 이유로 사용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특히 은퇴를 위해 저축되는지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상세 데이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그런 자료는 SOCX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은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은퇴할 때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SOCX의 연금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은 은퇴 목적이 아닐 때 배제되어야 한다. 퇴직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 관계가 중지될 때 지급되는데 고용 관계의 중지는 자발적 퇴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다.

방법론적인 선택에 있어 SOCX는 은퇴에 대한 퇴직금을 연금과 유사한 은퇴 수당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은퇴 연령 미만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금은 분리된 지급액으로 고려하고 보수로 취급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OECD 노동시장정책 데이터베이스와 SOCX는 공적 재원으로 조달되고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에 의해 그들의 경제활동이 중지되거나 감원되어 해고당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일시해고수당(redundancy compensation)”은 포함한다. 이는 전체 “법정 퇴직금” 중 소수의 특정 그룹만을 실업 수당 항목 아래에 포함한다.<sup>47)</sup>

47) 한국에서 법정 퇴직금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SOCX no. 7(실업)에 포함되어왔음. 그러나 한국의 법정 퇴직금은 사실 공적으로 조성된 일시해고수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실업 항목에 더 이상 포함할 수 없음.

## Box II. 2. 계속

이론적으로 SOCX는 은퇴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법정 퇴직금은 지출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며, 그 나머지는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상세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을 지출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가별 사례에 기초해야 한다.

고용주 지급의 법정 퇴직금 중 소수(약 10%-최대 30%)만이 은퇴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SOCX는 의무적인 법정 민간 노령 지출아래에 법정 퇴직금의 20%만을 포함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이슈는 아래의 세 국가와 가장 연관이 깊다.

i) 이탈리아에서는 GDP 대비 1%가 퇴직금에 지출되는데, 이 중 공사영역 피고용인에게 지불된 금액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이전에) 공무원들에게 은퇴 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데이터는 유용한(INPDAP, 2008) 반면에 민간 영역의 피고용인에 대한 퇴직금에서 연령에 관한 통계는 없다. 그러므로 유럽통계(Eurostat)는 이탈리아의 퇴직금 중 “은퇴한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급여액의 총합 중 명확한 부분만...” 노령연금 기능에 분류시킨다.<sup>48)</sup> ii) 일본에서 2005년 자발적인 민간 퇴직금은 GDP 대비 2.2%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퇴직금/은퇴 소득에 관한 통계는 일본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국세 연보에서 출판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퇴직금 수급자의 대다수가 은퇴시에 이 급여액을 받는다고 말한다.<sup>49)</sup>

iii) 퇴직금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의무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직업을 퇴사할 때(해고 포함) 제공된다. 한국에서 법정 퇴직금은 기업연금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적이지 않다; 기업연금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다(Grubb et al., 2007)<sup>50)</sup>.

요약하면,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대부분의 지출은 은퇴시에 지급되므로 이는 SOCX에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법정 퇴직금에 대한 지출 중 일부만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그런 지출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령 지출 미만의 모든 법정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에러를 더 크게 할 것이다. SOCX의 에러를 더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할 때까지는 전체 법정 퇴직금 중 20%만을 포함시킨다.

73. 정책의 목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의 경계선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아동빈곤의 퇴치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 목적이고, 아동에 대한 지원(현금 급여와 서비스를 통해서든지, 혹은 조세시스템을 통해서든지)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임신상태에 대한 우호적인 조세 처치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 사회적인 지원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지원이 사회적 정책의 목적을 추구하는지 여부는 합의된 바가 없다(국가별로 과세에 적합한 근거인 기본적인 경제 단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다).

74. 실제로 데이터 이슈는 어떤 항목이 사회적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저축 프로그램이 은퇴 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배정되었을 때(혹은 기타 사회정책 영역에 포함되는 준비금), 그것은 ‘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48) 본 교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한 법정 퇴직금만 데이터가 유용하다고 했으므로, 일반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해서 퇴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만을 노령연금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됨.

49) 한국 역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연보에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조세 감면을 통해 지출을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낮은 종신고용제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보고서(OECD)에서 논의하듯이 노동 유연화가 높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화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금의 비율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음.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정년퇴직자 비율(2.5%)인데 비해 계약기간만료(16.1%),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54.4%)로 높아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50) 한국의 법정 퇴직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467,714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6,506,470명(2008)인 반면에 퇴직연금의 가입사업장 수는 50,462개소(2008)이고 가입자 수는 1,119,552명(2008)으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는 법정 퇴직금 가입장 수의 10%, 가입자 수는 17%에 불과함(자료는 노동부 임금복지과).

75. 임대보조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다른 인구집단에 대한 시설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된다(노령, 근로무능력 급여 등에 기록됨).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모기지정책은 그런 프로그램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어느 수준까지 혹은 자산 가치의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는 불명확하다. 관련한 임계값이 국가마다 다르고, 그러한 국가별 포괄적인 데이터도 유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건설에 대한 모기지 보조(mortgage relief)와 자본 보조(capital subsidies)는 여기서 고려되지 않는다.

76. 이러한 SOCX의 이슈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ECEC)서비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국의 통계와 Eurostat, 그리고 (OECD/Eurostat)에서 (미취학)교육에 대한 연간 자료수집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아동보육지원의 더 나은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의무취학연령에 관한 지표들이 국가간 차이 비교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북유럽)국가에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7세에 이루어지는 반면 미취학학교교육(pre-primary schooling)의 참석은 그 전년에 이루어진다. 비교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 수의 유용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출된 추정치(estimate)를 이용함). 유사하게 아이들이 5세에 학교에 들어가는(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미취학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primary school(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의 지출을 더함으로써 산정된다.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종종 보육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데이터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기록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종종 연방)에서는 국가간 보육에 대한 공적지원에 대한 견고한 견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는 캐나다처럼 꼬리표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정액교부금(non-earmarked block-grant)을 통해 지방정부가 아동보육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서로 다른 자금흐름(funding stream)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스위스처럼 지방정부가 보육에 지출하는 내역이 정부 당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연방 국가로 제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inhabitants)에 대해 아동보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반적인 정액교부금으로 재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소득보장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흐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부조신청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재정보조의 경우이다.

## II.2.2. Inter-personal redistribution or compulsion

78. 지출프로그램은 참여가 의무적일 때, 또한 수급권이 프로그램 참여자간 자원의 재분배와 연루될 때만 ‘사회적’으로 간주된다. 즉 수급권은 개인별 직접적인 시장 매매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의 개별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급(공적 정부 그리고/혹은 비정부조직에 의해)과 사회보험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실제로 가구간 재분배와 항상 관련 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조세 혹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인구집단간 혹은 인구집단내 자원의 재분배를 유도한다(예, 실업보험기금의 모든 구성원).

79. 민간 프로그램에서 개인간 재분배는 종종 정부의 규제나 조세 개입에 의해 도입된다. 정부는 개인들 그리고/혹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위험 프로파일이나 만연한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예를 들어 위험분산(예, 보험회사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을 통해)을 통해 공공정책은 아픈 사람들을 보조할 수 있고 가구간 재분배를 보장할 수 있다. 집합적인 혹은 개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공공 조세 개입은 또한 개별적인 위험 프로파일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세한 시장 가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같은 것은 집합적인 동의에 따라 파생된 혹은 집합적인 근거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수행된 사회적 급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민간 제도와 우호적인 조세를 제공하는 민간

플랜 사이에 상당히 높은 유사점이 있다.

80. 사회적 급여는 또한 이론적으로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에 반드시 연루되지 않는 몇몇 (공공과 민간) 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저축 체계를 정부가 강제로 관리한다(Ramesh, 2005). 이는 조세 경감의 제공과 함께 이러한 플랜의 의무 가입 범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 판단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 II.2.3. Public, private social and exclusively private expenditure

81.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의 구분은 관련 재정 흐름을 공공 기관 혹은 사적 기관 중 누가 컨트롤하는가에 달려있다. 공공 사회지출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해 일반 정부(각기 다른 정부수준과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통제되는 재정 흐름을 가지는 사회지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무가입에 따른 기여금의 사회보장 기금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상병급여는 관습적으로 공공으로 고려된다. SNA93에 따라 SOCX는 자율적인 기금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민간지출항목으로 포함한다(호주는 부분적으로,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영국). 일반 정부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급여는 ‘민간’으로 고려된다.

82. 민간부문의 사회적 급여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무적인 민간사회지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영역을 통해 작동되는 사회적 지원으로 예를 들어 공적으로 입법화된 이유로 고용주가 부재중인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상병급여나, 민간보험기금에 의무적인 기여금을 통해 누적된 급여
- 자발적인 민간사회지출: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와 관련되고 NGO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여 사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적된 급여

83. SOCX는 OECD 국가의 민간사회지출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재정 할당 정보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84. 사회적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개인보험의 가입은 관련된 사람에 관한 문제이고 개인의 선호와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합당한 민간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림짐작하면 가구간 재분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개인이 그 혹은 그녀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보상금을 제공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지출은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민간에서 배제’로 간주된다. 표 II.1은 그러한 지출이 사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반면에 박스 II.3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에 대한 이슈들을 보다 상세하게 제공한다.

표 II.1.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의 범주<sup>51)52)</sup>

	공공		민간	
	의무적인	자발적인	의무적인	자발적인
재분배	자산조사 급여, 사회보험급여	공공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자영자의 선택참여(opt in)	고용주 제공의 상병급여, 강제적인 기여로부터 누적된 급여, 예를 들어 연금 혹은 장애보험	조세이익 급여, 예를 들어 개인 은퇴계좌, 직업연금, 고용주 제공 의료플랜
재분배 없음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저축체계로부터 제공되는 급여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비 조세이익 연금 급여	민간에서 배제: 개인의 선호에 따른 시장 가격으로 야기된 보험 플랜에서 누적된 급여

51) 정의에 따라 개인간 이전은 사회적 속성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영역으로 고려되지 않음.

52) 어두운 부분은 사회적인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급여를 반영함.

85. 생명보험저축플랜은 생명보험급여의 일부가 사회적 목적을 따르더라도 포괄적인 정보가 유용하지 않아서 사회적인 영역 외로 분류된다. 사실상 생명보험급여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없다. 비록 재보험이 실제로 생명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갖기 어렵다고 해도 생명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생명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OECD, 2006b). 상당한 정도의 생명보험정책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 모기지 제도도 포함하지만, 사망, 장애, 의료개입과 은퇴 급여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가진 민간 생명보험급여는 중요할 수 있고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포함된다.

86. 국가별로 조세 시스템을 통해서 혹은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민간 급여의 역할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의 목적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시스템의 재분배적 속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적한다. 몇몇 민간 사회프로그램은 공공프로그램보다는 더 제한된 자원의 재분배를 야기하고, 민간 연금과 의료플랜에 대한 조세감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급여가 아닌 경향이 있다. 민간 고용 관련 사회적 급여는 (이전에) 고용된 인구집단 사이에 소득을 재할당하는 하는 동시에 재정상 유리한 개인 혹은 집단의 연금 플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재분배에서 국가간 차이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설계와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지출의 수준과도 연관이 없다. 덴마크와 같은 공공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재분배는 더 큰 경향이 있다. 민간 사회지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같은 국가이다(Förster and Mira d'Ecole, 2005, and Whiteford and Adema, 2007).

## II.3. Social expenditure programme data in SOCX

### II.3.1. Categorisation of programmes across policy areas

87.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를 9가지 정책 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정책영역으로 구분한다. 표 II.2 Panel A는 SOCX 데이터베이스의 공공과 의무적인 민간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주고, 표 II.2 Panel B는 정보의 질이 재정 할당만큼 높지 않고 프로그램별 상세한 지출은 포괄적인 기초에 유용하지 않지만 SOCX 데이터베이스의 자발적인 민간지출의 단순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88. 9개의 정책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프로그램의 예를 포함한다(보다 상세한 프로그램의 코드에 대해서는 부록 II. 2를 보라):

1. 노령(Old-age)은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일시금 포함)로 구성된다. 노령연금급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법정’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령연금 기여의 필수요건을 완수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러한 범주는 또한 조기은퇴연금을 포함한다. 조기은퇴 연금이란, 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분류되고 노령에서는 배제된다. 또한 부양자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 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노인서비스에 관한 지출은 포함한다. 기관에서 시설보호에 이용되는 지출역시 포함한다(예를 들면, 노인 그룹 홈 운영 경비). SNA93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SOCX는 자발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을 민간 지출로 기록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50.10.1.1.1.1 기초 체계: CNAV”는 프랑스의 "Régime général"이라고 부르는 공공기초연금체계임.
- “208.10.1.2.1.2 노인층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 보조”는 덴마크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임.
- “392.20.1.1.1.1 피고용인 연금 기금”은 일본의 의무적인 민간직업연금체계임.
- “826.30.1.0.0.2 전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영국의 전직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 급여프로그램임.

2. 유족(Survivors)은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급여(현금 혹은 현물)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출 프로그램이다. 유족연금급여에는 유족급여 수급자의 수당과 부양자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현금급여가 해당하는데, 유족현물급여에는 장제비와 기타 현물급여가 있다.

- “124.10.2.1.1.2 CPP and QPP: 생존한 배우자 연금”은 캐나다의 연금 플랜이고 퀘벡 연금 플랜 프로그램은 생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
- “348.10.2.2.1.1 장제비(자산조사)”는 헝가리의 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장제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다) 장애로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근로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 때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사고나 질병의 결과일 수도 있다. 유급질병휴가, 특별 수당과 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지급금 등 산업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지출은 유급질병휴가(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항목에 포함한다.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무능력으로 야기된 소득의 상실과 관련한 현금급여는 유급질병휴가(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s)에 포함한다. 부양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는 가족 현금 급여에서 기록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제외한다. 의학적인 보호에 대한 공적인 지급금은 보건영역에 포함한

다. 이 항목에는 또한 돌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기사보조서비스와 다른 현물 급여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56.10.3.1.1.1 장애연금: 질병보험(비자산조사)”는 스위스의 공적 비자산조사형 장애보험연금이다.
- “442.10.3.1.4.4 유급상병휴가”는 질환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질환 발생 첫째 날부터 3개월까지,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임금의 100%를 배상(상한선까지)하는 룩셈부르크의 공공 프로그램이다.
- “578.20.3.1.4.1 질환과 급여 대기 기간”은 노르웨이에서 질환의 발생시 첫 2주간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의무적인 급여에 대한 추정이다.
- “752.30.3.0.0.0 근로무능력-관련 급여”는 스웨덴의 자발적인 민간 계약 장애 연금에 포함된다.

4. 보건(Health)- 보건정책영역에서 사회지출통계는 OECD Health Data의 자료를 이용한다.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 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 투자 등이다. 보건 항목에는 입원환자요양서비스와 보조의료서비스와 제 약품에 관한 지출이 포함된다. 보건지출에서 공공기관의 용자 상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과 관련된 현금급여는 상병급여에 포함한다. 자발적 민간 보건지출은 재분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간의료플랜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만 추정(이러한 민간의료보험플랜은 주로 고용에 기반을 두거나 조세혜택이 있음)한다.

SOCX의 이번 그리고 이전의 자료에서 보건과 사회정책당국에 의해 보고되는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출의 이중계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최근 보건계정(System of Health Accounts)의 개선으로 투명성이 보다 확보되었으며, 이 영역의 기록이 개선되었다(OECD, 2010d, 2000b and [www.oecd.org/health/sha](http://www.oecd.org/health/sha)). 자세한 정보는 부록 II.1.2를 보라.

5. 가족(Family)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포함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과 다른 부양자의 지원과 관련된 비용과 연관된다. 현금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산전후와 육아휴직 관련 지출, 기타 현금 급여들이 포함된다. 현물급여에는 돌봄서비스와 가사보조서비스, 기타 현물급여들이 포함된다.

- “56.10.5.1.1.1 가족수당: 피고용인의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사무소 (national office)”는 벨기에에서 가족에게 아동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프로그램이다.
- “246.10.5.1.2.2 모성 및 부모수당”은 핀란드에서 자녀 출생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 “203.10.5.2.1.6 아동보육(취학전 교육)”은 체코공화국에서 아직 6세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시설보육(day-care)과 취학전 교육서비스(pre-school services)에 대한 공적 지출이다.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day-care, pre-school, 혹은 어떤 국가에서는 학교 환경에 속해있음)에 대한 지원을 더 잘 비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의무취학연령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몇몇 노르딕 국가에서 아동은 7세에 학교에 들어가는 반면 직전 해에 6세 아동은 pre-primary school에 참가한다. 비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들 6세 아동에 대한 지출은 배제된다(교육에 대한 지출과 6세 아동의 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도출된 추계치를 이용하여). 유사하게 아동이 5세에 학교에 입학(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하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취학전 지출(pre-school expenditure) 데이터는 초등학교에 등록된 5세 아동에 대한 지출을 추가함으로써 조정된다(이와 관련해서는 OECD Family database- PF3.1 -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참조).

6.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이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찾는 수급자의 가능성의 개선이나 그들의 소득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모든 사회지출(교육 이외)을 포함한다. 이 항목은 공공 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실업자와 기타 사람들(청소년과 장애인 제외)의 고용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보다 ALMP에 대한 지출의 분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부록 II.1.3을 보라. 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484.10.6.0.1.1 정부고용서비스(Servicio nacional de empleo, SNE)”는 멕시코의 항목임.
- “40.10.6.0.2.5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은 오스트리아의 항목임.
- “620.10.6.0.4.17 고용-훈련 직무순환 프로그램”은 포르투갈 항목임.
- “300.10.6.0.4.17 특별한 사회적 그룹의 고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은 그리스 항목임.
- “554.10.6.0.5.9 직업활동/지역 참여”는 뉴질랜드의 항목임.

7. 실업(Unemployment)은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 및 감축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 투입된 정리해고수당과 ‘법정’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실직이나 노동시장정책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적 자원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6.10.7.1.1.2 뉴스타트 수당”은 호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 등록된 실업자에게 주는 항목임.
- “380.10.7.1.2.1 노동시장 이유로 인한 조기 퇴직”은 이탈리아의 국가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것임.

8. 주거(Housing)는 이 영역에는 임대료 보조와 개인에게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른 급여들을 포함한다. 이는 임대주택에 배정된 사람들에 대해 주거비용 보조로 ‘꼬리표를 붙인’ 직접적인 공공 보조를 포함(노르웨이에서 주택 소유자가 그의 집에 살 때에만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현물급여로 분류되었던(SNA, 1993 - D. 6331을 보라) 꼬리표를 붙인 현금급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SOCX는 또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현물 주거 급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포함한다(1.2.1, 3.2.1, 그리고 9.2.2., 각각).

모기지론, 건설에 대한 자본 보조, 그리고 주거시설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 등 주거 지원의 다른 형태들은 특히 그러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때 사회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을 추계하는데 있어 방법론과 그러한 지원에 대한 적용과 측정방법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없어 현재는 그러한 주거 지원은 SOCX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이자비용과 기타 모기지 비용에 대한 우호적인 조세수단(favourable tax treatment)에 대한 예산 비용은 2006년에 대략 120억 EUR로 계산된다. 프라이빗 에퀴티(private equity)<sup>53)</sup>에 따른 과세 경감으로 주거(75억EUR)와 소득 및 취득세(5억EUR), 기초자치세율(22.5억EUR)이 계산되며, 네덜란드에서 민간 가구 소유자에게 제공한 순 예산보조는 2006년에 GDP 대비 약 2.3%인 것으로 나타났다(Koning et al., 2006). SOCX는 또한 주거 지원의 건설비에 대한 (자본-)보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

53) 증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이 아닌, 기업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지분을 인수한 후 3~5년에 걸쳐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자금을 말한다. 어려운 회사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거친 뒤 비싼 값에 되판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벌처펀드(vulture fund) 같기도 하고 워렌 버핏식 ‘가치투자’ 같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 또 헤지펀드(hedge fund)들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편이다.

서 2003년에 저소득가구 투자에 대한 CREDIT이 GDP 대비 0.06%인 6.2십억 미국달러에 달했다(OMB, 2009). SOCX는 또한 주거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보조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민간 임대 영역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설보다는 더 적게 받는 공공 주거비용은 대략 500만 가구이다(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et de l'Aménagement durables de la France, 2007). 가구당 암묵적인 지원의 가치(예를 들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거주시설에 대해 낮은 임대료를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시장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의 차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인 주거 보조의 총 가치에 대한 추계는 유용하지 않다.

9. 기타 사회정책(Other social policy areas)은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을 포함한다. 이민자와 탈북자, 토착민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지출 역시 이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다.
- “276.10.9.1.1.1 소득지원(사회부조)”은 독일의 항목임.
  - “840.10.9.1.1.1 근로소득세제지원: 환급가능한 부분(EITC)”은 미국의 항목임.

표 11.2. SOCX 공공부문과 의무적인 민간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Panel A: 사회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

<p>1. 노령(OLD 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li> <li>조기퇴직연금</li> <li>기타 현금 급여들</li> </ul> </li> <li>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li> <li>기타 현물 급여들</li> </ul> </li> </ul> <p>2. 유족(SURVIVO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li> <li>기타 현금 급여들</li> </ul> </li> <li>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제비</li> <li>기타 현물 급여들</li> </ul> </li> </ul> <p>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연금</li> <li>연금(산업재해)</li> <li>유급상병휴가(산업재해)</li> <li>유급상병휴가(기타 상병수당)</li> <li>기타 현금 급여들</li> </ul> </li> <li>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시설/재가보조서비스</li> <li>직업재활서비스</li> <li>기타 현물 급여들</li> </ul> </li> </ul> <p>4. 보건(HEAL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물급여</li> </ul>	<p>5. 가족(FAMIL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수당</li> <li>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li> <li>기타 현금 급여들</li> </ul> </li> <li>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재가서비스</li> <li>기타 현물 급여들</li> </ul> </li> </ul> <p>6. 적극노동시장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서비스와 행정</li> <li>노동시장훈련</li> <li>청년에 대한 지원</li> <li>고용보호지원</li> <li>장애인 고용 지원</li> </ul> <p>7. 실업(UNEMPLOY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보상/해고수당</li> <li>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한 조기퇴직</li> </ul> </li> <li>현물급여</li> </ul> <p>8. 주거(HOUS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보조</li> <li>기타 현물급여들</li> </ul> </li> </ul> <p>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보조</li> <li>기타 현금급여들</li> </ul> </li> <li>현물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부조</li> <li>기타 현물급여들</li> </ul> </li> </ul>
---	---

---

주: 통계항목 수는 매뉴얼을 기준하면 58개, OECD 홈페이지 iLibrary에는 62개를 제시하고 있어 4개의 항목 차이 발생(Category No.4의 현금급여, Category No. 6의 2개, Category No. 8의 현금급여).

Panel B: 자발적 민간 지출의 범주

---

<p>1. 노령(OLD 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 민간영역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연금</li> <li>이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li> </ul> <p>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p> <p>4. 보건(HEALTH)</p> <p>9.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p>
--

---

### II.3.2. Accounting conventions and practices

#### Reference, fiscal and tax years

89.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기록기간은 국가마다 같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역년(calendar year, 1월 1일-12월31일)에 따라 데이터를 기록하지만,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 등 예외적인 국가는 역년(calendar year)과 다른 회계연도(financial year)가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데이터가 보고된다. 국가회계에 따른 동일한 관습을 적용하고자 할 때 “n” year는 그것이 1월 1일이든, 4월 1일이든, 6월 1일이든, 10월 1일이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회계연도가 역년(calendar year)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기간은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할 때 prorata temporis 기초에서 수행된다.

- 캐나다, 일본, 영국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회계연도(n)는 4월 1일(n)부터 3월 31일까지(n+1) 이므로,  $GDP(n)=0.75*GDP(n)+0.25*GDP(n+1)$ 에 대해 조정된다.
- 미국은 회계연도(n)가 10월 1일(n-1) 부터 9월 30일까지(n) 이므로,  $GDP(n)=0.25*GDP(n-1)+0.75*GDP(n)$ 으로 조정된다.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참조연도는 역년에 따르지 않고 6월부터 7월로 정의되지만, GDP 에 대한 계산 기간은 역년을 따른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6월 1일과 함께 시작한다.

#### SOCX does not include administrative costs

90. SOCX는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을 배제한다. 예를 들면, 급여를 제공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출은 수급자에게 직접 가지는 않는다. 행정 비용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간접비(overheads)에 대한 지출만 포함된다. 수급자 등록,

급여 행정, 기여의 수집, 통제(컨트롤), 조사, 평가, 재보험

91. 그러나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와 아동보육서비스, 보건에 대한 공공 지출과 같은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는 행정비용이 합계에 포함된다. 이들 데이터 소스에는 자체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지는 OECD Education database와 the OECD Labor Market Policy database, 그리고 OECD Health Data를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지출에서 의료직원, 고용서비스 직원과 보육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행정 비용의 포함은 수급자-예를 들어 구직자에 대한 응대 및 카운슬링,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 환자에 대한 응대와 병원서비스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통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SOCX includes capital transfers and records transactions on an accrual basis**

92. SNA 93과 비슷하게 자본투자(예, 건설비용)는 자연증가에 기초하여(accruals basis) 포함된다. 즉 장기요양기관(혹은 병원)에 대한 건설비용이 1백만 미국달러(이자를 포함하여)라고 할 때, 건설된 지 4년 이상이라면 연간 배상비용은 25만 미국달러가 투자 지출로 매년 포함되어야 한다.

**SOCX generally excludes loans**

93.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정의는 개입은 동시적인 상호간 배열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수급자가 교환적으로 등가의 가치에 대한 어떤 것을 동시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가지는 개입은 사회보장의 범위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구에 제공되는 이자가 붙는 대출은 사회보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입자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일시불 지급을 갚는 것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출이 무이자거나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현재의 시장 비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면 이자금액의 포기는 사회적 급여로 자격을 갖는다.”(Eurostat, 2008)

### II.3.3 Data sources

94. SOCX 데이터 프로세스의 속성은 하나의 총 망라된 조사표에서 모든 데이터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간단하지 않고, 각기 다른 출처로부터 각기 다른 포맷으로 추출된다.

-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에 관한 데이터가 OECD Health Data와 OECD database on Labour Market Programmes에서 각각 제공된다(OECD, 2010d, 그리고 2011b, Statistica Annex). 3,4,5세(ISCED 0)의 교육에 대한 데이터는 OECD Educational database의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지출의 시리즈에서 제공된다.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업보상(현금 이전)에 관한 데이터는 EU에 속해있지 않고 EU국가들에 대한 ESSPROS로부터 제공되는 ALMP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된다.
- 10개 비유럽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SOCX 조사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고용, 노동,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대표의 서비스를 통해 생산된다.
- 24개 유럽국가들(EU 21개국, 노르웨이와 스위스)에 대해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데이터는 ESSPROS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근거하여 EUROSTAT에 의해 제공된다(EUROSTAT, 2010).

95.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유럽 OECD 국가들에서 데이터 생산자와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은 거의 없다. 시작부터 OECD 회원국이면서 EU에 속한 국가들은 몇 개의 사회복지지출 조사표를 취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ROSTAT를 통해 OECD에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이해할 만하지만, a) 단지 EUROSTAT로부터 받은 정보가

개별 국가에 대한 ‘입증된 데이터이며, b) ESSPROS 형태에서 받은 데이터가 비유럽 OECD 국가들과 정보를 양립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야 한다. 게다가 ESSPROS 데이터는 보건과/혹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모든 공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파일은 필연적으로 다른 자원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96. 모든 OECD 국가들에 대한 지출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EUROSTAT 데이터의 제출이 설명되어야 하고, 모든 OECD국가에서 자발적인 민간 사회지출 항목이 공공 지출 데이터와 비교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른 자원에서 가져온 지출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다 일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부록 II. 1은 데이터의 자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포함한다.

97. SOCX에 사용된 다른 일련의 참조들은 OECD(2011e)에서 있다:

- Gross Domestic Product (GDP)
- Deflator for GDP
- Gross Domestic Product at 2000 prices (GDPV)
- Gross National Income (GNI)
- Net National Income (NNI)
-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GOV)
- Purchase Power Parities (PPP)
- Exchange rate (EXC)
- Population (POP)

## II.4. 순(세후)사회복지지출

98. 공공예산 등에 기록되는 총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는 조세제도가 공공과 민간의 사회보호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세제도는 영향력이 크고 그 정도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의 국가 간 비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99. 일반적인 세입은 공공사회지출 자금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세입흐름(사회보장 기여금)이 그 목적에 대해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OECD, 2010a). 하지만, 조세제도 또한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sup>54</sup>):

1. 급여소득의 직접과세: 정부는 수급자의 현금이전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한다. 총 사회복지지출 지표가 보여주는 만큼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급여소득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서 지급된다. 간접세는 주어진 급여소득 이상으로 하는 소비를 억제한다.
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정부는 또한 사회정책목적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이용한다. 사회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재정조치에는 현금급여(아동세제혜택(child tax allowances))를 대체하거나 민간부문의 급여(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공을 장려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tax breaks for special purposes: TBSPs)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과 함께 가계에 도움을 주는 고용주나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된다(가계를 수급자로 하는 고용주 지급 급여에 대한 세제혜택, 민간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100. 의약품과 같은 서비스가 간접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혜택의 직접과세와 간접과세의 조정이 서비스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간접과세

54) 재정조정은 급여의 순가치에 대한 '1차효과(first round effects)'를 측정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병원이나 보육원 직원)의 소득에 대한 직접과세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지출 데이터와 세율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 II.4.1. 현금급여의 직접 과세

101.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급여가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급여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급여가 직접세를 때고 지급된다. 실업보험급여의 처리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표 II.3). 오스트리아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전에 평균소득에 가까운 소득을 벌고 배우자와 두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았다면 2007년에 15,812유로 정도를 받았고 이 중에서 669달러는 세금공제를 받았다.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스웨덴 사람은 연간 19,112유로를 소득지원 받지만 소득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5,147 유로를 지불해서 순급여소득은 13,966 유로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가정이 받는 총액은 훨씬 높아도 순소득은 오스트리아보다 낮다. 사회복지지출 총액으로 봤을 때 이전소득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이전소득의 상당부분을 국고 재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위한 순(세후)공공지출은 스웨덴 총액의 75% 수준이다.

102. 여러 유형의 급여가 과세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표 II.3). 일반적으로 실업보조금, 사회지원금, 주택급여, 가족급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공공 및 민간 퇴직, 장애인 연금은 과세되지만 세율은 낮다(OECD, 2011c). 또한 병가시에 받는 지속적인 임금은 소득으로 과세된다(OECD, 2011d).

표 II.3. 국가 간 다른 급여의 과세 방식

급여의 과세 및 사회보장 조치(2007)

	연금 이전 (노령, 장애인)	아동보조	실업	주택	사회지원
호주	T(경감)	N	T(n)S(n)	N	-
오스트리아	TS(경감)	N	*	N	N
벨기에	T(경감)S(경감)	N	T(n)	-	N
캐나다	T(경감)	-	T	-	N
체코	T(경감)	N	N	N	N
덴마크	T	N	TS(경감)	N	TS(경감)
핀란드	T(경감)S(경감)	N	TS(경감)	N	N
프랑스	TS(경감)	N	TS(경감)	N	N
독일	T(경감)S(경감)	tc	*	N	-
그리스	TS(경감)	N	N	N	-
헝가리	T	N	TS(경감)	N	N
아이슬란드	T	N	TS	N	TS
아일랜드	TS(경감)	N	T(n)	N	N
이탈리아	T(경감)	N	TS(경감)	-	-
일본	TS(경감)	N	N	-	N
한국	T(경감)	-	N	-	N
룩셈부르크	TS(경감)	N	TS(경감)	TS	TS
멕시코	T(n)	N	-	-	-
네덜란드	TS(경감)	N	TS	N	*
뉴질랜드	T	N	-	N	-
노르웨이	T(경감)S(경감)	N	TS	N	N
폴란드	TS(경감)	N	T	N	N
포르투갈	T	N	N	-	N
슬로바키아	T(경감)	N	N	-	N
스페인	T(경감)	N	TS(경감)	-	T(n)
스웨덴	T	N	TS	N	N
스위스	T	T	TS(경감)	-	N
터키	N	-	N	-	-
영국	T	N	T(n)S(n)	N	N
미국	T(경감)	N	T	N	N

주: T: 세금 부과 S: 사회보장기여금(SSC) 부과 N: 세금이나 SSC 둘 중 하나 부과 T(n) 혹은 S(n): (장기간) 수혜자는 보조 수준을 초월하는 범위를 공제, 세금공제 혹은 영세율로써 세금이나 SSC를 납부하지 않음 : 특별한 제도가 없거나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음 "(reduced)": 경감률은 수혜자를 위해 지불 \*: 보조가 세금 소득후의 비율(그러므로 과세할 수 없음), tc: 낭비할 수 없는 세액공제(환급형)

자료: OECD Tax-Benefit models database([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OECD(2011c), Pensions at a Glance.

#### II.4.1.1. 방법과 데이터 원천; 행정기록, 마이크로 시뮬레이션과 마이크로 데이터

103. 직접과세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총 지출항목(예컨대 실업보상이나 노령연금급여 지출 등) 조정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각국에서 특정 급여의 세율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로 세금당국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사회보험기금에서 나온 데이터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흔하지 않고 독일과 스페인의 급여수급자가 내는 사회보장 부담금 정보가 전부이다. 그 외 일부 국가에서는(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이태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현금급여에 대한 직접과세의 조정은 세금통계 등 행정기록을 통해 급여수급자가 지불한 세금 추정값을 이용해서 산정한다(부록 I.2 참조). 벨기에의 경우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은 각각 국가통계정보와 국민 계정에 기초했다.

104. 그 외 국가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제공한 ‘평균항목별세율 (average itemised tax rates: AITR)’ 추정값을 이용해 급여수급자가 낸 직접세의 규모를 산정했다. 이는 공공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육아휴직수당 등 특정지출항목에 대한 평균세율(사회보장 부담금 포함) 등이다. AITR은 세금에 관한 행정 데이터 등 각국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계산했다(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항목별 세율을 계산했다. 이러한 방식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직접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어서 이들 AITR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총 사회복지지출 항목에 적용했다.

105. 거의 모든 급여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AITR을 계산한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를 매우 세세하게 보고하고 다양한 이전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평균항목별세율을 다루고 있다. 덴마크는 21개의 이전항목에 대한 AITR을 다루고 있고, 스웨덴은 10건의 이전항목에

대해 이를 다루고 있다. 과세대상 급여가 적고 (그래서)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AITR 을 계산하는 국가들은 일부 세율만 보고했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AITR의 산정

106. AITR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적 급여(보조)에 부과되는 세금을 쉽게 파악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AITR은 특정 급여를 받은 사람이 낸 전체 세금을 해당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전체소득(소득원 무관)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AITR_i = \sum_{t=1}^n TI_i / \sum_{t=1}^n I_i$$

이 때  $I_i$ 는 과세대상인 “ $i$ ” 유형의 소득금액,  $TI_i$ 는 해당 소득금액에 대해 낸 세금, “ $i$ ”는 소득 유형 또는 카테고리, “ $t$ ”는 소득유형이 “ $i$ ”인 세금 단위, “ $n$ ”은 “ $i$ ” 유형의 소득 샘플의 세금단위의 수임. 광범위한 소득카테고리인 “ $i$ ”에는 노령연금급여, 실업보상금, 임금소득 등이 포함됨(표 Q3 참조).

107.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마이크로 데이터 셋에는 가계소득과 세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기술은 신뢰할만한 추정 값을 생산 하지만 계산과정에서 소득의 배분 방식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이동수당 처럼 급여가 비과세라고 가정하면 해당 AITR은 선형적으로 0과 같다. 이전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동 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사회보장 부담금 포함)을 이용해서 순 이전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의 직접세를 계산하는 것이 더 복잡해진다. 가령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았거나, 연간소득이 일정 소득과 실업급여로 구성되어 있거나, 여러 연금제도에서 지급 받은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득항목별로 납부한 세금을 배정해야 하고 각 소득유형의 가중치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소득별로 배분되

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급여가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이고 소득이 25%라면 소득세의 75%는 급여소득에 과세된 것으로 가정한다(과세대상 중 일부는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 소득항목과 세금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경우 세금공제는 해당 소득항목에 배정해야 한다).

108. 급여소득이 누진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다양한 소득의 총액에 적용 가능). 각기 다른 소득에 순서를 매기거나 어떤 소득을 가장 높은 세율 혹은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를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특정소득(또는 여러 소득)에 대해 가계가 내야 할 세율을 바탕으로 평균항목별세율을 계산한다. 각각의 다른 소득의 상대적인 가중치에 따라 소득세를 분배하고 (상기 설명 참조) 표본에 있는 가계에 대해 총계를 내서 AITR를 계산할 수 있다(Box II.4 참조).

## Box II. 4: 평균항목별세율 산정 사례

한군데에서만 소득이 발생한다면 급여소득에 관한 평균항목별세율(AITR) 계산은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1년에 100단위의 공공연금을 10%의 ‘표준’세율로 수령한다면 그의 순연간이전소득은 90단위이다. 여기에서 공공퇴직소득을 받는 모든 가계가 기타 소득이 없다면 공공연금소득에 대한 AITR은 10%이다. 그런데 퇴직자 중 일부가 비과세 이동보조금을 받는다면 이 소득은 이 가계의 소득세율 계산에서 무시되고 이동보조금에 대한 AITR은 0이다.

연금수령자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공연금을 50단위 받고 민간연금을 100단위를 받는 퇴직자가 있다고 하자. 누진세가 없다면 가계의 세율은 10%이고 순이전소득은 135단위이다. 그러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 중 일부 소득은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Table box 4.1 참조) 그렇게 되면 ‘평균’ 세율은 올라간다. 이 경우 100단위의 이전소득은 10%로 과세되고 50단위는 15%로 과세된다. 총소득세는 17.5단위이고 이는 전체 가계 소득에서 공공과 민간연금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치에 따라서 각각에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각각의 소득에 순서를 매겨서 어떤 소득을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어떤 소득을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를 임의로 결정하여 각각의 소득원을 다르게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다. AITR의 차이는 급여수급자가 속한 소득그룹과 관련이 있다.

표 II.4. 소득의 2가지 유형에 대한 AITR 계산

가 계	공공연금	민간연금	총가계소득	소득세율	납세액	연금소득요소별 세금	
						공공	민간
1	50	25	75	10%	7.5	5.0	2.5
2	75	50	125	15%	13.8	8.3	5.5
3	100	0	100	10%	10.0	10.0	0.0
4	50	100	150	15%	17.5	5.8	11.7
5	50	250	300	15%	40.0	6.7	33.3
총 계	325	425	750		88.8	35.8	53

주: AITR 공공연금소득=공공연금/총공공연금소득 을 넘어서는 과세액 11.1%

주: AITR 민간연금소득=민간연금/총민간연금소득 을 넘어서는 과세액 12.5%

가정: 소득이 100단위 미만이면 표준세율은 10%이고 100단위 이상일 때에는 소득의 15%

109.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급여소득이 비과세이면 해당 AITR은 선형적으로 0과 같다. 그러나 비과세 급여소득이 과세대상인 급여소득의 소득테스트에 고려되어 직접세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과세 급여를 수령한 가계는 기타 소득이 전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3개의 사회복지사업(소득보장보조금, (지방의) 사회복지원, 노동보상제도)이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의 과세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3개의 급여 모두 비과세이지만 해당 소득이 여타 급여의 소득 테스트에 고려되기 때문에 이들 수급자가 여타 급여제도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캐나다 당국은 평균(한계) 세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이 3개 사업을 소득원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세율을 3개의 사회이전금에 각각 적용하여 암묵세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3개 사업의 이전지출 금액으로 나누어 AITR을 계산했다(부록 I.2 참조).

#### II.4.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대한 간접과세

110. 소비세는 일정한 급여를 이용한 소비의 실질가치를 낮추고 (급여소득의 직접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또 다른 세금수입을 창출한다.<sup>55)</sup> 급여소득의 직접과세가 국가간 차이가 있듯이 직접세 역시 국가 간 차이가 있어서 복지국가지출의 직접적인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과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가(비유럽권 OECD 국가)에서는 간접세율이 높은 국가의 수급권자가 받는 순소득수준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 가령 급여수급자에게 100단위의 순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평균 간접세가 5%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106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평균직접세율이 25%인 덴마크에서는 133단위의 총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비유럽권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낮은 간접세

55) 이 방법은 수급자가 급여소득을 저축하지 않고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저축도 어느 시점에서는 소비가 될 것이고 급여소득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제한적이다.

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지출의 국가 간 비교의 질이 개선된다.

111.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세가 저소득층 가계(이 중 다수가 이전소득 수급자임)의 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 7월에 10%(식품 제외)의 재화 및 용역세를 도입하면서 사회복지 수급자를 위한 보상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캐나다도 저소득층 가계 지원을 위해서 재화 및 서비스 환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II.4.2.1. 방법과 데이터 원천: 국민 계정과 세입통계

112. 급여수급자의 소비에 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다. 가계 소비조사 결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의 소비패턴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국가별로 이러한 데이터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비조사에 따르면 간접세 납부는 적게 신고 되고 있다. 왜냐하면 세수총계가 실제 세수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Gho et al., (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동 매뉴얼에서는 OECD 세입통계와 OECD 국민 계정(OECD, 2010a, and 2010e)에 있는 전 회원국의 데이터 총계를 이용해서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구했다. 추정 값이긴 하지만 이 방식이 명확하고 투명하다.

113. 표 II.4에는 간접세가 3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3번째 줄에 제시된 것으로 일반소비세와 특정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합한 간접세 수입금액이다. 4번째 줄은 이 외에도 재정독점(fiscal monopolies)에 의한 수입과, 관세, 서비스세, 기타 minor tax가 포함된다. 5번째 줄에는 이 외에도 자동차 면허와 알코올 판매 등 재화의 사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간접세 산정에 이 3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표 II.4의 4번째와 5번째 줄에 제시된 간접세에는 가계가 내지 않는 간접세 항목이 3번째 줄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3번

째 줄의 간접세 항목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가계가 내지 않는 일부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3번째 줄에 제시된 간접세가 오차범위가 가장 적으므로 급여소득을 이용한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계산하는 데 가장 적당하다.

114. 국민계정에 있는 민간소비 데이터는 표 II.4의 1번째 줄에 나와 있다. 그러나 OECD 세입 통계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수한 세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부처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 간접세를 내야 한다(이는 다시 정부부문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소비지출이 민간소비지출에 더해지고 직원 봉급에 해당되는 정부소비는 여기에서 빠진다(2번째 줄). 이렇게 해서 일관된 간접세 과세기준 근사치를 마련했다.

115.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은 일반소비세에 특별소비세를 더한 세입과 민간소비와 정부 소비를 더한 것에 정부 직원 봉급을 뺀 소비세 과세기준 간의 비율이다(6번째 줄 참조). 2007년 평균 암묵적 간접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 (4.1%), 멕시코 (6.0%), 일본 (6.3%)이었고, 호주와 캐나다는 10%대였다. 독일, 한국, 이태리, 스페인은 12~14% 사이였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5%와 23.7% 사이였으며, 덴마크는 26%였다.

#### II.4.3.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116. 조세제도를 통한 지출, 또는 조세지출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exemption(소득이 과세기준에서 제외); allowances(총소득에서 금액 공제); credits(과세채무에서 금액 공제); 세금감면(노인 등 특정그룹을 위한 세율 인하); 그리고 세금 유예이다. 그러나 '조세지출'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OECD, 1996). 특히 조세지출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benchmark)'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없다. 각국이 조세지출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은 ('정상적인' 조세제도 구조) 매우 다르고, 조세지출의 측정이 어려워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조세지출’의 하위항목 간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 매뉴얼에서는 현금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부분과 조세제도를 통해서 급여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benchmark)’이 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언급이 따로 필요 없다.

117. 많은 OECD 국가들은 조세제도를 통해서 사회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크게 2가지 조치가 있다. 첫 번째는 가계의 특정소득원이나 소득유형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현금이전은 영세율이나 인하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감면은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과세와 유사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직접과세(앞의 내용 참조)에 대한 섹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나 세율인하는 급여소득에 징수되는 직접세 산정에 이미 반영했고(예를 들어 아동수당과 관련된 지출은 영세율이 적용됨) 여기에서는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Tax Break with a Social Purpose: TBSP) 항목으로 또다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부양아동을 위한 세금공제(이는 아동 수당의 비과세와는 다름)는 TBSP로 기록했다 (아래 참조).

118. 사회적 효과가 수반되는 세제조치의 2번째 유형은 사회적 목적의 세제 혜택(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TBSP)이다. TBSP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세금인하, 면제, 공제, 또는 유예로 a)사회복지지출로 분류되었을 이전수급과 동일한 정책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b)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9.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TBSP에는 부양아동에 대한 세금공제가 포함된다. 민간부문의 지출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진 TBSP에는 비영리 NGO에 대한 세금감면, 민간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그리고 민간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된다.

### II.4.3.1. 방법과 데이터 원천: 손실세입의 평가

120.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의 규모에 관한 정보는 각 나라의 당국에서 발간한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 정부(2009), 캐나다 재무부(2008), 아일랜드 정부(2008), 미국의 OMB(2009)가 발간한 보고서 등이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세제조치로 인해 손실된 세수, 즉 재정조치로 인해서 축소된 세입 금액의 추정값이 보고된다. 그리고 캐나다, 일본, 미국의 예에서처럼 중앙/연방정부에 의한 세제혜택은 다루지만 하위단계의 정부에 의한 세제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보고되지 않음). 국가별로 종합적인 정보가 (아직)없지만 캐나다의 경우 sub national TBSP의 규모는 GDP의 0.6%에 가까울 것이다.<sup>56)</sup>

121. 많은 국가가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의 비중을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의 총계를 낸다. 그러나 조세지출과 TBSP가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한 부모에 대한 세금공제와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예를 살펴보자. 이 2개의 재정조치는 보통은 따로 계산(보고)된다. 그러나 두개의 TBSP 중 하나를 빼면 일부 납세자는 더 높은 한계 세율 범주에 들어가게 되어 나머지 TBSP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세제혜택 수혜자가 이미 최대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한). 두 개 TBSP의 가치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각각의 조치를 따로 합하는 것보다 금액이 커진다. 각각의 TBSP는 서로가 유효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기 때문이다. 손실된 개별 세입 추정치는 TBSP의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반면(미래의) 납세액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추정치의 총계는 전체 비용을 과소평가한다.

56) 캐나다는 연방세와 지방세에서 지출되는 급여소득의 직접세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2000년대 중반에 지방세가 연방세의 50% 정도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2007년 현금급여와 유사한 TBSP의 실제가치는 연방 TBSP의 가치인 GDP의 1.3%가 아니고 요소비용 GDP의 2% 수준이었을 것이다. 동 보고서에는 사회적 목적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데이터가 일부 기록되었다(가족구성원 크기, 자녀의 유무, 부양가족 등).

122. TBSP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OECD, 1996). 위에서 기술한 ‘세수손실법’은 특정조치에 의해 손실된 세입 금액을 사후에 측정하는 방식이다. 표 II.5를 보면 측정방법에 따라서 세제혜택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연기연금 소득이나 미래의 급여에 대해 기납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 세수손실법보다 추정값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의 현재가치가 세수손실법에 다른 추정값보다 훨씬 낮지만 연금부담금을 제외하면 반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개인퇴직상품 가입자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해당 소득이전에 대해 미래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들은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래의 지불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치, 미국, 2007

(단위 : 100만 달러)

	계산 방법	
	세수손실 가치	현재 가치
연금부담금과 소득 제외 - 고용주 지원보험	52,470	74,120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부담금과 소득 제외	5,970	4,300
Keogh Plans(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과 소득 제외	10,670	8,600

주: 미 행정부는 지출등가의 추정치가 기본조세지출 추정치와 동일한 경우가 많고, 두 추정치가 다른 경우 이 개념을 적용하는 기준도 판단을 요하며, 모든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세금지출항목에 걸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 자료: US OMB (2009), Analytical Perspectives, 미국 예산, 회계연도 2009.

123. 사회복지지출과 TBSP 모두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로 계산할 수 있다. 현금주의는 정부의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발생주의는 특정 기간에 정부에 발생할 과세채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연금에 대한 TBSP를 제외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sup>57)</sup> 적립형 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현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래의 세금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

다. 예를 들어 2007년의 연금부담금으로 2007년의 임금과 미래시점의 해당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자, 자본이익 등)에 대한 세금납부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특정시점에 2007년의 연금부담금과 미수수익이 지급될 것이고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세입을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것이다.

124.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민간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금면제와 일시불연금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일종의 계약성 저축으로써 이에 대한 세금감면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세금감면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셋은 없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Tax Breaks for Pensions)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일부 국가의 추정 값은 동 보고서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memorandum item(비고항목)에만 포함시켰다(아래 참조).

#### II.4.3.2. 계산에 포함된 세제혜택과 포함되지 않은 세제혜택

125. 많은 OECD국가에서(독일과 프랑스 등)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세제도에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가 각국의 기본 세금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세지출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원은 분명 재정적·사회적인 지원이므로 TBSP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 대한 지원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사회적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재정조치는 TBSP로 간주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부양자녀가 있으면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만 혼인계약만으로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혼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그래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57)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현금주의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세입통계의 보고방식이 최근에 바뀌면서 발생주의로 추정된 TBSP를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가 기본조세제도의 일환인지 여부를 떠나서). 프랑스의 경우 ‘quotient familial(가족비율)’을 통한 아동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07년에 115억 유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up>58)</sup>

126.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에는 민간연금 부담금의 비과세 등 민간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연금급여가 미래에 발생하고 과세나 세금감면이 연금저축 기간 중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루기는 어렵다. 적립형연금의 세제혜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고용주나 직원이 연금부담금을 내고, 이는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다.
- 연금 납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부담금을 투자하는 기금은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 연금저축 기간이 끝난 후에 받는 연금(pension), 연금보험(annuity), 일괄 지불금은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

위의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계산과 국가마다 상이한 계산방식을 쓰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셋은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조세제도가 공공예산에 미치는 비용(현금주의)에 대한 데이터는 일부 있다. 이들 데이터는 현재의 조세제도가 미래의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보여준다.

58) 프랑스의 소득세 제도는 가계를 기본단위로 본다. 그래서 가계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사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세대상 가계소득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이 적용되는데, 이는 누진적 한계세율표에서 가계소득이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게 해준다. 가족계수는 전체 과세대상가계소득 ‘R’을 가구 구성원으로 결정되는 ‘N’이라는 인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N’은 가구구성원의 합이다. 부부는 각각 1개 단위이며, 첫 두 자녀는 각각 0.5 단위, 세번째 자녀부터는 한자녀 당 1개 단위로 계산된다.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부양가족을 둔 가정은 좀 더 유리한 규칙이 적용된다). 부부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가족계수는 3이 되고 3자녀를 둔 경우 4가 된다. 소득수준이 동일하면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계수는 낮아진다.

#### II.4.4. 순 사회복지지출의 기본틀: 개요

127. 사회복지지출지표를 국가 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총지출액과 사회정책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을 하나의 기본 틀에 통합해서 순 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표 II.6은 이러한 기본 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아래에 괄호 안의 숫자 글자는 이 표에서 해당되는 줄을 나타낸 것이다).

- 먼저 총 공공사회지출(1)에서 국고로 귀속된 직접세와 공공급여로 소비된 재화에 대한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공공사회지출(2)을 계산한다. 그리고 현금급여와 유사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연금 제외)의 가치(T1)가 소비에 사용되므로 이들 항목에 대한 간접세의 귀속가치를 빼서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4)를 도출한다. 현행 민간급여(T2)에 대한 TBSP의 가치를 더하면 순 현재 공공사회지출(6)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순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규모와 급여수급자에게 재분배되는 순 사회복지의 비중을 잘 반영해 준다.
- 정부통제 하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지원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 민간급여도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급여가 직접세와 간접세의 과세대상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순 정부통제 사회지출(net government controlled social expenditure)은 순 공공 법적사회지출 (net publicly mandated social expenditure) 이라는 제목 안에 제시했다(9). 마지막으로 총 자발적 민간급여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 직접 자발적 민간사회지출을 계산했다(11).
- 순 공공급여, 법적민간급여와 자발적급여를 합하면 순 총사회지출(13)지표가 나온다. 이 지표는 국내생산에서 사회급여수급자에게 할당된 비중을 정량화해 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행 민간사회급여(T3)에 대한 세제혜택은 민간사회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TBSP가 공공지출 항목이지만 민간급여에 재원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순 공공사회지출과 순 민간사회지출을 더하는 것은 가계에 지원되는 금액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순 총사회지출(13)은 순 현행 공공사회지출(6)과 순 직접 민간사회지출(12)을 더한 값에서 현행 민간사회급여(T2)를 마이너스한 값이다.<sup>59)</sup> 순 총사회지출은 한 경제의 국내생산 중에서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128. 마지막으로 순 사회지출 지표는 경제규모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시장가격 GDP가 아닌 요소비용 GDP로 표시했다. 이는 간접세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급여를 조정했기 때문에 분모인 GDP도 동일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소비용 GDP는 간접세나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간 비교에 가장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을 국가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부록 I.2에 시장가격 GDP 대비 순 지출지표를 포함시켰다. 동 부록에는 국민소득(국내소득이 아닌) 대비 순 지출지표도 포함시켰다.

---

59) 민간부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가치는 민간부문급여에 부과된 직접세와 간접세를 빼서 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러한 TBSP가 얼마만큼 민간급여의 가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표 II.6. 총 사회복지지출부터 순 사회복지지출까지: 간략한 개요

+/-	줄번호#	항목
	1.	총 직접 공공사회지출
-		공공 현금보조로 지불된 직접세와 사회적 기여금
	2.	순 현금 직접 공공사회지출
-		순 현금이전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3.	순 직접 공공사회지출
+	T1	현금급여를 반영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제혜택
-		현금급여와 유사한 세제혜택에 의해 재원마련 된 민간소비에 대한 간접세
	4	현금급여와 유사한 순TBSP
+	T2	현행 민간사회급여에 대한 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
	5	순 TBSP(연금 제외)
	6.	순 현행 공공 사회지출[3+5]
	7.	총 법적 민간 사회지출
-		직접세와 법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법적 민간현금으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8.	순 직접 법적 민간 사회지출
	9.	순 정부 법적 사회지출[6+8]
	10.	총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		직접세와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지불된 사회적 기여금
-		순 자발적 민간 현금보조로 구입된 소비에 대한 간접세
	11.	순 직접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12.	순 직접 민간 사회지출[8+11]
	13.1	순 총 사회지출[6+12-T2]

주: 1)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순 총 사회지출은 현행 민간보조를 향한 세금 우대조치를 감한 순 공공 그리고 순 민간 사회지출의 합으로 얻어진다.

2) 음영이 있는 줄은 세금이 조정됨.